

Knowledge Sharing Project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에 대한 지식공유사업
: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2005년 12월



재정경제부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한국개발연구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

서 문

최근 들어 더욱 커지고 있는 국가간의 지식격차는 결국 각국의 사회, 경제적 발전 정도의 차이를 가져오는 주 원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전통적인 산업사회를 지나 지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지식기반 사회가 되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선·후진국 간의 지식격차가 계속된다면 국가간 경제수준의 격차가 심화되어 지속적인 인류의 공동번영을 저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 및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개발협력사업을 통해 국가간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한국정부는 한국의 경제개발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개도국에 전파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로서 본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과의 지식공유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사업대상국으로는 향후 경제협력 잠재력과 한국의 개발경험에 관심이 큰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두 국가를 선정하였다.

본원은 재정경제부의 총괄아래 국별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조사활동, 연구보고서 작성 및 정책자문활동을 실시하였다. 수차례의 서면 및 방문조사로 대상국의 수요를 확인하고 실태조사를 거쳐서 완성된 이번 정책권고안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각 사업별로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위한 세미나를 통해 발표되었고 이를 통해 현지 카운터파트기관의 연구진 및 정책담당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다만, 본 국문 보고서는 각 국가별 영문 정책권고안의 요약본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같은 시기에 발간된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국별 영문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 자리를 빌어, 현지의 여러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동 사업을 헌신적으로 추진한 국별 연구진 여러분들과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어려울 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신 진념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여러 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또한 동 사업과 관련하여 논평과 자문에 응해 준 국내외 여러 전문가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하며, 헌신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KDI 국제정책대학원 국제교류협력실(IDEP) 직원들의 수고가 많았음을 밝힌다.

끝으로 본 보고서가 향후 국제협력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사업에 참여하였던 전문가들의 견해로서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5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현 정 택

< 사업 참여진 >

심의위원회

진 념(서강대 교수, 전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심의위원장)
신동규(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이경훈(서울대 교수, 우즈베키스탄 사업 단장)
최종찬(한양대 교수, 전 건교부 장관, 베트남 사업 단장)
허 승(전 외교통상부 대사)

베트남 연구진

송희연(인천대 교수, 연구책임자)
강신일(한성대 교수)
이재민(한양대 교수)
이종훈(명지대 교수)
백웅기(상명대 교수)
손승호(한국수출입은행 부부장)
안응호(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우즈베키스탄 연구진

이영기(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연구책임자)
고일동(KDI 선임연구위원)
김도훈(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원암(홍익대 교수)
유일호(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안덕근(서울대 교수)

사업 수행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국제교류협력실(IDEP)
김지홍(지식협력처장)
원길상(IDEP 실장)
정수경(IDEP 주임연구원)
정승우(IDEP 주임연구원)

현지 협력기관

베트남 개발전략연구소(Development Strategy Institute: DSI)
우즈베키스탄 경제정책센터(Center for Effective Economic Policy: CEEP)

목 차

요 약	1
1. 지식공유사업의 개요	1
2. 베트남의 개방경제체제하에서의 주요 정책과제	3
3. 우즈베키스탄의 제조업 육성 및 수출촉진 방안	21
4. 사업의 성과 및 시사점	40
제1부 지식공유사업의 개요와 진행과정	45
제1장 사업의 개요	47
1. 추진배경	47
2. 사업목적	47
3. 대상국 및 주요활동	48
4. 추진체계	49
5. 추진방향	50
제2장 사업 기획	52
1. 대상국 선정	52
2. 기초자료 조사	52
3. 서면조사 및 카운터파트 기관 선정	53
4. 현지 수요조사 실시	54
5. 국별 사업계획서 확정 및 MOU체결	55
제3장 연구 및 자문활동	58
1. 세부실태조사와 분야별 연구계획서 작성	58
2. 중간보고회 및 면담조사 실시	58
3. 최종보고회	59
4. 자문 활동	60
제4장 사업결과 공유 및 평가	62
1. 사업결과 공유	62

2. 베트남 지식공유사업의 시사점	63
3. 우즈베키스탄 지식공유 사업의 시사점	66
4. 경제협력을 위한 제언	67

제2부 베트남의 개방경제체제하에서의 주요정책과제와 대응방안71

제1장 베트남 경제현황과 주요 정책과제73

제2장 베트남 공기업 개혁과제79

1. 베트남 공기업 개혁의 진행과 과제	79
2. 민영화 정책의 논리와 한국 경험 사례	81
3.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와 한국경험사례	87
4. 한국채별정책과 베트남 대규모 공기업집단의 과제	88
5. 우리의 경험에 비춘 베트남 공기업 개혁 과제	92

제3장 세계 무역 체제로의 통합:WTO 가입을 위한 베트남의 준비 현황 및 현안 과제 ..97

1. 서론	97
2. 양자 협의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97
3. WTO 가입 이후 베트남 정부의 핵심 이행 사항	100
4. 주요 통상 이슈에 관한 한국의 경험 및 베트남 정부에 대한 제언 ...	104
5. 결론	112

제4장 베트남의 인적자원개발 전략114

1. 베트남 노동시장 현황 분석	114
2. 노동시장 개혁의 기본방향과 전략	117
3. 베트남의 직업훈련체제 개혁	122
4. 노동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혁	129

제5장 베트남의 거시경제안정화133

1. 서론	133
2. 베트남의 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	134
3. 베트남 거시경제변수의 추이	138
4. 한국의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138
5. 한국의 주요거시경제변수 추이	142
6. 한국의 거시경제안정화 정책	142
7. 한국의 거시경제정책	148
8. 베트남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제안	150

제6장 베트남의 외자조달 방안(외국인직접투자를 중심으로)	154
1. 서론	154
2. FDI 현황	158
3. FDI의 경제적 효과	162
4. 한국의 외자 조달 정책	167
5. 향후 과제	173
제7장 수출지원금융정책 및 베트남 수출입은행 설립방안	180
1. 서론	180
2. 베트남 수출현황	180
3. 수출진흥 금융정책	182
4. 베트남 수출입은행의 설립	188
5. 결론	201
제3부 우즈베키스탄의 제조업 육성과 수출 촉진 방안	203
제1장 우즈베키스탄의 개발모델과 한국의 개발경험	205
1. 서론	205
2. 우즈베키스탄의 체제전환 방식과 경제개발 전략	210
3. 한국의 개발경험과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시사점	228
4. 우즈베키스탄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	233
제2장 우즈베키스탄의 산업개발과 수출진흥 정책의 모색	245
1. 서론	245
2. 한국 산업발전의 개관	246
3. 한국의 산업발전 과정 : 1960년대	249
4. 한국의 산업발전 과정 : 1970년대	260
5.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	265
6. 한국 섬유산업의 발전	268
7. 정책 권고	271
제3장 우즈베키스탄 산업화 과정에서의 거시금융정책: 한국경험의 교훈	277
1. 서론	277
2. 우즈베키스탄 경제 발전의 현황	278
3. 성장과 투자목표 설정	282
4. 투자재원 조달	287

5. 금융정책	291
6. 산업화의 시장친화적 접근법	293
7. 정책제안 요약	297
제4장 한국의 사례로 분석한 우즈베키스탄의 재정 개혁	303
1. 서론	303
2. 한국의 재정	304
3. 우즈베키스탄 재정제도의 개관	319
4. 정책제안	324
5. 요약 및 결론	327
제5장 산업정책과 무역자유화정책의 조화전략	329
1. 한국정부의 경험 및 정책적 영향	329
2. 제도적 개선	355
3. 통상정책 시행단계에서의 검토사항	363

표 목 차

<표 1-1-1> 우즈베키스탄의 GDP 성장률	22
<표 2-1-1> 베트남 주요경제지표	74
<표 2-2-1> 베트남의 주요 산업별 공기업	80
<표 2-2-2> 소유구조에 따른 GDP 기여도	80
<표 2-2-3> 민영화 계획 대비 추진실적	82
<표 2-2-4> 공기업 현황 (1995, 2001년도)	84
<표 2-2-5> 경영평가제도의 변천	88
<표 2-2-6> 국가별 기업통제 비용차이	92
<표 2-4-1> skill의 유형	123
<표 2-5-1> 한국의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	139
<표 2-5-2> 한국의 CPI, PPI, GDP 및 GNI 증가율	144
<표 2-5-3> 한국의 국제수지	145
<표 2-6-1> 국가별 FDI 현황	160
<표 2-6-2> 부문별 FDI 현황	161
<표 2-6-3> FDI의 GDP 및 수출에 미친 효과	163
<표 2-6-4> 지역별 FDI 유치 현황	167
<표 2-6-5> 한국의 외자 도입액 추이	169
<표 2-6-6> 동남아 8개 도시 투자 관련 비용 비교	174
<표 2-7-1> 베트남 주요 수출품 수출 추이	181
<표 2-7-2> ASEAN 회원국의 대 GDP 수출비중	182
<표 2-7-3> DAF의 단기수출금융 지원현황 (2001~2004년)	184
<표 2-7-4> ECA 모델	191
<표 3-1-1>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경제지표	214
<표 3-1-2>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수급	215
<표 3-1-3> 민간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CIS 국가)	216
<표 3-1-4> 사유화 수입의 연도별 누적액	217
<표 3-1-5> 우즈베키스탄의 재정수지	219
<표 3-1-6> CIS 국가들의 재정수지	219
<표 3-1-7> 보건 및 교육에 대한 지정지출	221
<표 3-1-8> 정부소유 은행의 자산비중	222
<표 3-1-9> 통화공급	222

<표 3-1-10>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의 환율비교	223
<표 3-1-11> 무역 및 외환(우즈베키스탄)	224
<표 3-2-1> 한국의 1960년과 2004년의 산업 경쟁력 비교	246
<표 3-2-2> 수출의 GDP 점유율 추이	247
<표 3-2-3> 한국 수출구조의 변화 (1961-71)	255
<표 3-2-4> 총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258
<표 3-2-5> 한국 수출구조의 새로운 변화 (1971-81)	261
<표 3-2-6> 한국의 자동차 생산 추이	265
<표 3-2-7> 조립시대의 국제협력 현황	266
<표 3-2-8> 한국 자동차 산업의 국산화율	266
<표 3-2-9> 10대 수출상품의 추이	269
<표 3-2-10> 의류산업의 중요성	269
<표 3-4-1> 일반정부지출의 대 GNP 비중	307
<표 3-4-2> 재정수지 추이	308
<표 3-4-3> 정부지출의 기능적 분류 (중앙정부)	309
<표 3-4-4> 조세부담률 추이	311
<표 3-4-5> 우즈베키스탄의 일반정부 지출 추이	319
<표 3-4-6> 우즈베키스탄 정부지출구조	321
<표 3-4-7> 교육지출의 비교 (우즈베키스탄과 OECD 평균)	322
<표 3-4-8> 우즈베키스탄의 교육지출 추이	322
<표 3-4-9> 우즈베키스탄 소득 세율 구조	323
<표 3-4-10> 우즈베키스탄 세입구조	323
<표 3-5-1> 수입선다변화제도 해당 품목 수	333
<표 3-5-2> IMF 프로그램에 의한 수입선다변화제도 자율화 이행계획	334
<표 3-5-3>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337
<표 3-5-4> 한국이 피제소국인 WTO 분쟁사례	339
<표 3-5-5> 한국이 제소국인 WTO 분쟁사례	345
<표 3-5-6> 2005년 6월 현재 FTA 협상 진행현황	353

그림 목차

<그림 1-1-1> 사업결과 공유체계도	48
<그림 1-1-2> 사업추진체계도	50
<그림 2-2-1> 리더십과 소유분산	91
<그림 2-5-1> 한국의 GDP, 잠재 GDP, GDP 갭률	143
<그림 2-5-2> 한국의 대미원화환율	147
<그림 2-6-1> 대베트남 FDI 유입 추이	159
<그림 2-6-2> 투자주체별 구성 추이	163
<그림 2-6-3> 부문별 산업 생산액 추이	164
<그림 2-6-4> FDI의 부문별 고용 창출	165
<그림 2-7-1> 주요 수출품 수출 비중 추이	181
<그림 2-7-2> 수출입은행의 공급자 신용 흐름	192
<그림 2-7-3> 한국수출입은행의 직접대출 흐름	193
<그림 3-1-1> 구소련 연방공화국들의 GDP 변화	214
<그림 3-4-1> 재정적자, 1996-2003	320
<그림 3-5-1> 한국의 국제수지 동향	331
<그림 3-5-2> 한국 수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1960 ~ 1994)	336
<그림 3-5-3> 한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	352
<그림 3-5-4> 한국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352

요약

1. 지식공유사업의 개요

본 사업은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정책자문을 실시하여, ①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② 국제협력사업 간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며, ③ 특화되고 통합적인 경제개발 컨설팅사업의 모형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업대상국으로는 향후 경제협력 잠재력이 크고 특히, 한국의 개발경험에 관심이 매우 큰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양국이 선정되어 2004년 8월 27일에서 2005년 12월 20일까지 실시되었다. 주요활동으로는 ① 서면조사 및 카운터 파트기관 선정, 현지 수요조사 등의 기획단계, ② 세부실태조사, 중간 및 최종 보고서 등의 연구조사활동, ③ 정책실무자연수, 정책대화(policy dialogue), 사업결과 전파세미나 등의 정책자문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추진체계는 사업발주기관인 재정경제부의 총괄아래 한국개발연구원이 사업을 주관하였으며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심의위원회와 국별 정책자문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수출입은행과 외교통상부의 협조 하에 이루어졌다.

전체사업의 방향은 ① 통합적 접근방법(integrated approach)의 활용, ② 종합적 프로그램(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의 구성, ③ 정부 및 민간기업 global management와의 연계, ④ 수원국 수요중심에서의 사업기획과 운영, ⑤ 학계, 관계, 업계 전문가의 종합적인 활용, ⑥ 연구결과 활용도 등 사후관리 강화의 견지에서 추진되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외교채널을 통한 서면조사실시와 대상국의 카운터파트기관을 선정하였으며, 고위인사 면담 및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현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2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에 대한 지식공유사업

수요조사에서 수원국이 요청한 베트남의 주요 과제로는 ① 베트남의 WTO가입 등 세계화의 영향과 대비책, ② 직업훈련, 인적자원 활용방안, 교육재원 확보 등 인적자원개발전략, ③ 발전전략 수립과 성공 및 실패 경험, ④ 한국 재벌정책의 경험, ⑤ 베트남 경제구조의 분석과 개편방안, ⑥ 총공사화, 민영화 등 공기업 개혁, ⑦ 경제관련 법령체제 정비(기업법, 경영법 등), ⑧ 한국 정부의 분권화정책 경험 등이었다. 특히 전반적 정책연구보다는 한국의 구체적 사례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더불어 베트남 재무부에서는 설립예정인 수출입은행의 운영전반에 대한 정책제안과 연수를 희망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과제로는 2005년 초 대통령이 국회에서 제시한 ① 경제자유화 및 시장경제체제 전환과 국민소득 향상, ② 국가재산 사유화 문제, ③ 중소기업활동 활성화(농업에서 산업으로), ④ 은행제도 개혁 문제, ⑤ 조세제도 개혁(세금축소방안 등) 등의 연구와 ⑥현재 진행 중인 WTO가입 후의 영향 및 효과 등이었다. 이와 더불어 카운터파트 기관인 경제정책센터(CEEP)는 한국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경험 전수 및 자문과 연구기관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희망하였다.

상기 조사를 기초로 우리의 투입역량과 정책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국별 과제를 확정하고 카운터파트기관과 MOU를 체결하였다.

베트남은 한국, 국제기구 등과 다양한 지식교류사업을 수행해 온 바, 현지 수요에 따른 우리 개발경험의 구체적 사례 제시에 초점을 두고 개방경제체제하에서의 주요 정책과제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였는데, 분야별 연구과제는 ① WTO가입 준비 및 대응, ② 공기업 민영화 및 운영효율화를 핵심으로 하고 상기 국제경쟁력 제고정책을 뒷받침하는 기초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③ 거시경제 안정화, ④ 인적자원개발전략, ⑤ 국내외 재원조달 정책, ⑥ 수출금융 정책으로 구성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은 제조업 육성 및 수출촉진 방안에 대한 정책방안 연구와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전파를 위한 자문사업을 요청하였다. 이에 다양한 관심사항 중 정책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① 효과적인 체제전환 전략을 모색하며, ② 제조업 발전과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정책 및, ③ 산업활성화와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시 및 금융정책과 ④ 재정 및 조세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⑤ 아울러 산업정책과 통상진흥 및 시장개방정책의

조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핵심 연구과제로 선정하였다.

주요 활동은 세부실태조사(pilot study), 면담조사 및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의 정책연구활동 부분과 정책실무자연수, 정책대화(policy dialogue) 및 사업결과 전파세미나로 구성된 정책자문활동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분야별 연구진들은 현지 세부실태의 조사와 현지 전문가를 확정하고 지원을 받아 정책권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중간보고회에서는 정책실무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조장하여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의 특성 상 정확한 정책정보 및 통계 입수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회를 가졌다.

현지의 요청과 우리의 개발경험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두 번의 정책실무자연수를 실시하였다. 현지의 구체적 요청에 따라 베트남의 1차, 2차 연수는 수출입은행 설립 및 운영에 대해, 우즈베키스탄 1차 연수는 한국의 개발경험과 연구기관의 운영 및 역량강화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베트남 3차 연수는 공기업 민영화 및 WTO 가입문제와 한국의 개발 경험에 대한 내용으로 실시되었고, 우즈베키스탄 2차 연수는 산업 전략 및 수출 진흥 전략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정책연구를 지원한 현지 연구진과 중간보고회에 참여한 관련 전문가를 서울로 초청하였으며, 사업결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한 많은 대상에게 전파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대화, 사업결과전파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설문지 조사 등을 통해 현지 정부 및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고, 본 사업의 성과를 국내기관과 공유하여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지 진출 및 투자 희망업체와도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영문 최종보고서와 별도로 국문 및 현지어 보고서를 준비하였다.

2. 베트남의 개방경제체제하에서의 주요 정책과제

베트남경제는 1986년 대외개방 및 대외개혁정책인 도이모이(Doi Moi)정책이래 아시아 금융위기였던 1998년을 제외하고는 6-7%의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반면, 물가는 비교적 안정되었고 국제수지적자 규모도 GDP의 4%를

4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에 대한 지식공유사업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속되고 있다. 총 대외부채는 2004년 현재 GDP의 36.4%로 크게 줄어들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대외 지불준비금은 2개월간의 수입액을 보유하고 있으나 적어도 3개월분이 바람직하다. 재정적자는 GDP의 4%선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베트남정부는 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하여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의 개발, 인적 자본의 질적 향상, WTO 가입, 복지의 향상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발전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첫째, 성장의 질이 좋지 않다. 전통산업의 성장은 주로 저급기술과 생산요소의 투입에 의존하고 있다. 거시경제정책의 불안정으로 공업제품, 농산물 및 서비스 생산비는 여전히 높다. 또한 노동생산성이 낮고 노동의 질이 아직은 저수준이다. 둘째, 경제의 구조조정이 계획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구조조정은 산업화, 현대화를 위한 필수 수단이다. 정책의 방향은 분명하나 추진 수단이 빈약하다. 셋째, 자원의 사용이 비효율적이다. 즉, 국가자산, 재정 및 기업재무가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넷째, 수출구조의 고도화를 필요로 한다. 중간재 수출비중이 높음으로 수출가격 전망이 좋지 않다. 다섯째, 교육 및 훈련의 질이 낮고 과학기술수준이 아주 낮은 수준이다. 끝으로 부패와 사회악이 여전히 난무하고 지방주민의 생활여건이 열악하여 도시와의 소득격차가 심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화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야기되는 각종 정책과제들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한국경제발전예 실무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자문단을 구성하여 ① WTO가입을 위한 준비, ② 공기업의 개혁방안 ③ 거시경제정책의 개선 ④ 인적자원개발 ⑤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⑥ 수출금융과 수출은행 설립 등의 6가지 과제에 대해 정책대안을 제안하였다.

가. 베트남 공기업 개혁과제 및 방안

2005년 현재 대부분의 베트남 기업은 공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 공기업은 고정자본 형성에 75%를 차지하고 국내투자의 20%, 국가 재정에 40%를 기여하고 있다. 베트남 공기업의 자국 내 비율은 2003년도 GDP중 제조업

의 39.7%, 서비스 부분의 38.5%를 차지한다. 높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 기술개발 저조, 낮은 생산성 등이 다른 나라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공기업에도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기, 항공, 통신 등 주요한 네트워크 산업에서 공기업의 시장점유율이 80%를 넘는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도 과점체제이다.

1990년도에 베트남 공기업은 12,300개였으나 2005년 현재 민영화 및 구조조정을 통해 1,931개 정도 남아 있다. 베트남 공기업 민영화는 일부 매각을 하는 부분적 민영화이며 이들은 이를 *equitization*이라 한다. 현재까지 민영화된 2242개 공기업을 보면 산업별로는 제조업(65.5%), 서비스업(28.7%), 농업·광공업(5.8%) 순으로 제조업 민영화가 가장 많았다. 민영화 기업들의 자본규모로 보면 50억 VND 미만(59.2%), 50억에서 100억VND(22.3%), 100억 VND이상(18.5%)로 대기업 보다는 대부분 중소기업을 민영화하였다. 민영화 종류로는 일부매각방식이며 전체매각(*full privatization*)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 민영화된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여전히 정부, 지방정부, 또는 대규모 공기업집단(*General Corporation*)이 50% 이상을 소유하는 주요 대주주이다.

정부는 전략적인 이유로 사기업이 영위하지 못하는 업종과 규모의 경제가 있는 부문은 공기업으로 유지하고 그 이외의 공기업에 대해서는 부분적 민영화(*equitization*)를 1986년 개방정책 이후 20년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선택에 대한 논쟁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규제, 민영화 판매지분의 선택에서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의 실패부분에서만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시장경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로부터의 보호이탈에 대한 우려가 크고 관주도 경제에 익숙해 있는 상태이다.

우리의 경험사례에 비추어 베트남 공기업의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 3가지 중요한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로 정부는 부분민영화가 완전 민영화의 전 단계로 중국에는 완전 민영화를 한다는 인식과 민영화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믿음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전파하여야 한다. 후속조치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매각방식은 산업별 특성과 경제환경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것을 고르면 된다. 둘째로 공기업으로 남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영평가제를 실시하여 효과적

6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에 대한 지식공유사업

인 공기업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대규모 기업집단(state corporation)의 경쟁 유도를 위해 반독점 금지법의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대규모 공기업 집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공기업체제로 남는 SOE의 지배·통치구조 연구 필요하다.

민영화정책에 있어 베트남의 과제로서는 첫째로 민영화 대상 기업의 선정에서 개인 기업이 담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가진 산업은 배제하여야 하며 민영화 이후 규제산업의 경우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둘째로 매각대상의 선정에서도 인위적으로 어떤 특정계층을 제외하는 것은 오히려 계층 간 격차의 심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가령 중소기업의 배제 또는 대규모 기업의 배제의 경우이다. 국민주 등을 이용한 대규모 매각방식은 신중해야 한다. 종업의 인수규모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영화시 외국인 투자의 참여를 강력히 권고한다. 매각의 수월성과 장기투자의 지연간의 tradeoff를 고려해야 한다.

경영 평가제도의 베트남의 적용 측면을 보면 베트남의 공기업개혁법(2004년)에 의한 공기업의 내부 경영감시제도는 상품시장과 자본시장이 경쟁적이고 효율적이면 정상적으로 가동하나 그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제도로는 경영자와 근로자간의 정보비대칭성, 불확실성, 그리고 도덕적 해이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기업에 대한 강한 평가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중요한 것은 유인제도의 완비이다. 일단 SOE의 경영평가를 위한 주무부처 및 기관의 설정이 급선무이다. 주식 관리하는 베트남 공사(state corporation), SCRED(Steering Committee for Enterprise Reform and Development), 재무부, MPI 등이 구성되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 이 위원회에서 개별 SOE의 목표치와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평가교수단의 구성이 필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센티브제도의 운용이다. 소위 incentive compatible 계약을 어떻게 만드는가가 중요하다. player 간의 위험을 적절히 부담시키는 계약을 만들어야 한다.

베트남의 대규모 공기업 집단에 대한 정책적 제언으로서는 첫째로 GC(General Corporation)는 반드시 민영화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시일이 지날수록 대규모 공기업은 점차 확대되고 정부만이 제어가 가능한바 때로는

정부 관료도 관련 대규모 공기업집단에 포획이 되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로 한국의 경우처럼 1997년에 시행된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재벌 구조조정정책의 시행보다는 이러한 구조정책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경제 및 시장 환경의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직접적 규제보다는 시장 유인적 규제의 시도가 바람직하다. 셋째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만드는데 정부 또는 민간 대주주의 소유지분의 양의 결정이 중요하다. 소유지분과 소유분산의 결정을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나라의 자본시장 구조, 기업문화, 법, 기업의 리더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중한 소유지분결정이 요구된다. 베트남의 경우 정부의 강한 리더십은 오히려 소유 집중을 유발하므로 보다 더 많은 지분을 매각하고자 한다면 정부의 강한 리더십을 시장 리더십으로 변화해야 한다. 넷째로 소액주주의 보호제도 및 사외이사제도 등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연구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소유구조, 기업 내부지배구조, 기업외부지배구조, 시장경쟁 등이 흔히 이야기되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들이다. 정부가 100% 또는 50% 이상을 소유하는 공기업의 경우 시장이 독점이고 자본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기업 내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해이, 불완전 계약 등에 대한 치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 세계 무역 체제로의 통합 : WTO 가입을 위한 베트남의 준비 현황 및 현안 과제

현재 베트남의 WTO 가입이 상당 부분 가시화 되고 있다. WTO 가입을 전후로 베트남 사회, 경제, 금융, 정치 등 전 부문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베트남의 경제 및 통상 제도는 커다란 변혁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WTO는 각 회원국에 대하여 국내 경제 및 무역 정책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발생할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WTO 가입과 관련,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주요 교역국과의 양자협약에 있어 非市場經濟 (Non Market Economy: "NME") 문제와 市場攪亂 制度 (Market Disruption: "MD" rule)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핵심적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NME 문제와 관련, WTO 가입 초기에 NME 지정을 받는

8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에 대한 지식공유사업

다고 하더라도 향후 동 문제를 재심의할 수 있는 합리적 메카니즘의 마련이 중요하다. WTO 가입 이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베트남 내에 “WTO 전문가” 풀을 조직하고 발전시키는 일이다. WTO 회원국으로서 요구되는 다양한 법적 의무의 이행을 위해서는 베트남 내 제반 관련 분야에서의 WTO 전문가 양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산재한 많은 작업들 중 가장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이슈부터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 내에 WTO Task Force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 당국 (Investigating Authority)의 신설 및 운영, 통상법 교육과정의 신설, 영어교육의 강화, 관련 국내법령의 지속적 정비, 사법제도의 개혁 등도 WTO 가입 이후 시급한 과제이다.

통상분야에서 베트남의 주요 관심 사항에 관한 보다 현실적 제언을 위해서는 그간 한국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경험은 베트남에 대하여 다음의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급증하는 해외 반덤핑 제소 대응과 관련, 전반적으로 반덤핑 조사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접근(practical approach)’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재의 반덤핑 조사는 특정 기업의 반덤핑 행위에 대한 penalty라기 보다는 오히려 국제 통상 체제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불가피한 “사업비용(business cost)”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 및 기업은 반덤핑 제소에 대해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는 것을 자제하고 베트남 수출상품의 해외 진출이 늘수록 당연히 수반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합리적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보조금 및 상계관세 문제는 베트남이 NME의 지위로 남아있는 한 베트남에 대해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NME 국가는 보조금 및 상계관세 조사에서 면제되는 것이 각국의 일반적 관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베트남이 WTO에 가입할 경우, 베트남의 시장경제 체제 인정은 시간의 문제일 뿐인 것으로 보이는 바, 그 경우 보조금 및 상계관세 문제는 베트남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구성할 것이다. 따라서 WTO 가입과 동시에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산업 및 기업들과의 관계를 단계적으로 약화 및 단절하여 나가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베트남 경제의 특성상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의 기계적 단절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

나 최소한 장기적 계획을 통한 단계적 실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WTO 분쟁해결제도 참여와 관련, 한국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편으로는 외국 변호사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아울러 존재한다. 한국의 경험은 베트남에 대해 통상법 분야 전문가의 장기적 육성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WTO 가입 초기 단계에서는 외국 변호사 및 전문가에 대한 아웃소싱이 불가피할 것이나, 점차적으로 외국 변호사의 역할을 줄여나가고 반대로 베트남 변호사 및 전문가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

넷째, WTO 협정에 따라 한국은 외국 수출 기업의 한국 시장 내에서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 당국' 설립 및 운영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1987년 산업자원부 산하에 한국무역위원회 (Korea Trade Commission: "KTC")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WTO 체제와 FTA 체결의 확산에 따른 자유무역의 확대에 외국 수입품의 한국 내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국내 시장 보호의 중요성을 점차 자각하게 된다. 그 결과, 한국 정부는 2004년 이래 KTC의 역할과 기능을 증대시키고자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역시 일단 수출주도형 국가이나, '불공정한' 외국 수입품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메커니즘을 설립하는 것이 절실하다. 특히 WTO 가입과 동시에 베트남은 조사당국 설립 의무를 부담하는 바, 그러한 상황이라면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사 당국" 설립이 적절할 것이다. 특히 베트남 국내 시장에서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당국의 철저한 단속 및 법집행은 해외에서 베트남 수출업체가 외국 조사당국에 의한 부당한 반덤핑 및 보조금 조사의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을 줄이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금번 베트남의 WTO 가입은 베트남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turning point를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WTO 가입에 따른 다양한 여파 즉, WTO 가입이 베트남의 경제 및 무역 부분에 미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이에 기초한 충분한 사전 준비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 베트남의 인적자원개발 전략

경제개혁(Doi Moi)이 시작된 이후 약 20년이 흘렀지만, 농촌부문에는 불완전 고용, 공공부문에서는 과잉고용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빈곤 노동력의 9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빠른 산업화를 통해 민간부문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하는 것이 경제발전 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첫째, '산업화를 통한 고도성장'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도시 비공식 부문 중심의 고용이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연구개발, 비용(가격)우위 확보 등을 위한 규모의 경제 실현을 추구하기 위해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민영화 이후 공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 동시에 기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시장경쟁의 원리가 잘 작동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경쟁력이 없는 기업을 퇴출시키거나 경쟁력 있는 기업에 M&A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만 경쟁력 있는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고 규모가 커질 수 있다. 현재 민영화된 기업들의 대부분에서 여전히 대주주가 국가이므로,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만 있으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럴 경우, 퇴출, M&A, 감량경영 등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원조정의 대상범위도 확대되고 그 규모도 민영화 과정에서 예상했던 수준 이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는 실직자에 대한 보상 재원을 미리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젊은 노동력이 풍부한 양적인 부분에서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고, 직능과 노동규율이 부족한 질적인 부분에서의 약점을 잘 보완하는 노동정책이 요구된다. 현재의 정부가 직접 사업주체로 나서는 공공훈련이 주도하는 모델은 일시적·제한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산업수요의 변화를 쫓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의 경험과 최근 다른 선진국의 개혁을 벤치마킹하여, 장기적으로는 기업주도 훈련 시스템의 모델 구축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국내 대기업 및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직업훈련분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체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또 산업정책, 지역정책과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연계하여, 업종·지역별 훈련사업을 추진하되,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에서는 '업종별 공동훈련'의 방식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의 베트남 진출 시 사내 기술대학 설립을 유도한다.

근로자, 특히 농촌출신 근로자의 노동규율 부족과 산업부문에 대한 충성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교육과 적절한 인적자원관리 방식의 도입이 요구된다. 첫째, 장기적으로는 베트남 교육기관에서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이 종업원에 대한 직업훈련과 별도로 정신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근무기강이 양호한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을 보상에서 철저히 차별화하는 인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산업부문에서 오래 머물러 하지 않고 쉽게 농촌으로 회귀하려는 의식적 경향은 아직도 산업부문이나 도시부문에서의 매력도가 그곳에 장기 정착할 유인을 가질 정도로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식의 “기업=평생직장”의 비전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민영화된 기업들이 경영효율성을 갖춘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주도할 R&D 인력, 충분한 자본주의 마인드를 갖고 효율적인 기업경영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최고-중간 경영자들의 양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이테크 인력의 양성은 고등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대학교육의 수월성(excellence) 확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교수 인사관리 개혁을 통한 교수자원의 질적 수준 제고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대학에서 부족한 기술교육을 보완·대행해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관인 외국인기업을 교육주체로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기업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및 공학교육 기관을 설립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전략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brain drain 문제를 방지하여 양성된 하이테크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베트남 내에 그들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가 직접 고용주로 나섰던 한국의 경험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의 노동보호 규제가 압도적 다수의 노동력이 종사하는 농촌부문, 도시 비공식부문, 소영세기업 부문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제한적인 보호라는 점, 실제 노동시장 상황과 괴리되어 있는 과보호 성격의 규제인 경우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어 법의 실효성이 제한적인 점, 그리고 근로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설사 감독을 통해 적발하더라도 사업주가 뇌물로 해결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한국도 과거에 이러한 경험을 하였다는 사실 등의 한계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실효성 없는 노동보호 규제가 자본투자 의욕만 저하시키고 노동시장의 경직성만 증가시켜서 결국에는 노동자 대중 전체에게 불리한 결과만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불 필요가 있다. 특히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문제이며, 제한된 지역에서 먼저 규제완화를 실험한 이후에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 베트남의 거시경제 안정화

본 연구는 베트남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거시경제 안정화정책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한국의 성장과 안정화 경험을 토대로 베트남이 앞으로 취해야 할 거시경제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한국정부는 시장지향적 경제시스템의 재구축, 효율적인 생산 및 금융 시스템 개발, 보다 개선된 기업지배구조 정착 등 일련의 개혁조치를 단행하였다. 한국이 이와 같은 개혁조치들을 외환위기 이전에 시행했더라면 위기를 맞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1960년대의 개발초기부터 최근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베트남의 경제안정화정책을 위한 방향제시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베트남의 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발전과 성과, 베트남의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추이, 한국의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의 진행과 성과, 한국의 주요 거시경제변수 추이, 한국의 거시경제 불균형 점검, 한국의 각종 거시경제정책, 베트남의 거시경제안정화를 위한 정책제안 등이 있다.

지난 5년간의 베트남 사회경제개발계획에서 드러난 특징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둘째, 산업화와 현대화를 향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효율적으로 재조정되어 경제발전예 기여하였다. 셋째, 거시경제의 안정화가 향상되었다. 저축과 지출의 균형이 개선되었으며 물가도 그 이전에 비해서는 크게 안정되었다. 넷째, 대외경제활동이 개선되었다. 최근에는 거센 시장경쟁, 투자자본 유입 둔화 등으로 베트남이 복잡한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국내 정치·사회의 안정과 정비된 정치적 조치의 시행으로 계획된 목표들 비교적 잘 달성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회경제개발계획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성장의 질이 좋지 않으며 경쟁의 강도가 낮다. 또한 노동생산성이 낮고 노동의 질이 좋지 않다. 둘째, 경제의 구조조정이 계획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경제정책의 방향은 분명하지만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 셋째, 자원의 사용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금융자원의 동원이 부족했으며 자원이 사회경제개발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했다. 재정지출은 경제성장 속도에 맞추어 빠르게 증가했고 재정의 직접적인 보조가 빠르게 증가했다. 넷째, 대외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수출의 경쟁강도가 약하고 저부가가치 원자재 비중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훈련의 질이 낮고 과학기술활동이 충분치 못하였다.

베트남 경제는 과거의 높은 통화증가율에도 불구하고 물가 압력은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통화수량설의 입장에서 보면 유통속도가 대폭 하락했어야 하는데, 유통속도의 하락만으로는 베트남의 통화증가율과 명목소득의 관계를 전부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으로써 통화팽창에 따른 물가압력을 해소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베트남 통계에 오류가 없다면 팽창된 통화와 신용의 증가는 시차를 두고 가까운 장래에 인플레이션으로 발현될 것이다. 이와 같은 판단에서 향후 베트남 거시경제의 안정화를 위한 경제정책의 운용은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베트남 정부는 거시경제정책 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것을 권한다.

1) 재정정책 : 재정적자를 GDP의 5%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베트남은 재정수입이 지나치게 작기 때문에 계획된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재정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입을 증가시키거나 지출을 억제해야 한다. 지출을 줄인다면 자본지출보다는 경상지출을 줄여야 하며, 비효율적 공공투자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인 투자계획의 선별을 위해서 공공투자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 경제규모의 성장에 따라 조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며, 정부가 효율적 투자계획을 선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투자계획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통화정책 : 베트남의 효율적인 통화관리를 위해 M2가 과연 통화목표로 신뢰할만한지 점검해보아야 한다. M2 증가율과 인플레이션 간에 안정적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달러화” 영향을 고려하여 다른 통화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M2와 CPI 간에 안정적 관계가 사라진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높은 통화증가율이 계속되면 가까운 장래에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통화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기본 자료인 M2와 CPI를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급 측면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사상한 코어 인플레이션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3) 물가정책: 물가정책은 베트남 정부가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오래 전부터 사용해 온 정책이다. 1992년 이전에는 정부가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을 책정했으나 그 이후는 수요-공급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의 간접적 개입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2002년 이후에는 더 이상 정부가 가격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기 위해서 통화당국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물가정책보다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정책조합이 인플레이션 조정에 훨씬 유효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간접적으로 조절하고 선제적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물가예측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4) 환율정책: 베트남에서 환율정책은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책으로 활용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실질실효환율은 대외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다. 외환당국이 실질실효환율을 적정선에서 유지한다면 대외불균형 문제는 훨씬 완화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도록 변동환율제를 운용해야 한다. 한편 환율상승에 따라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통화당국과의 협조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경제구조의 선진화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i) 유지가능한 고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많이 동원하는 것보다 생산성을 개선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베트남의 자본동원율은 이미 36%를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본동원은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를 심화시킴으로써 극심한 대내외 불균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ii) 시장경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잘 작동하는 경제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다. 한편 시장경제 실천을 위한 제도와 기구를 보장함으로써 경제계획을 책임지고 추진해나가야 한다. (iii) 사회경제개발계획의 목표치에만 지나치게 매달리다 보면 거시경제의 운영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계획기간 중이라도 필요하다면

목표를 수정해야 하며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부 내 조직 설립이 필요하다. (iv) 경제개발을 고정계획이 아닌 연동계획으로 바꿈으로써 중장기계획의 유연성을 제고해야하며 유도계획의 성격을 부과하여 정부가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정책목표에 순응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 베트남의 외자조달 방안: 외국인직접투자를 중심으로

베트남은 1986년 제6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대외개방정책인 도이모이(Doi Moi) 정책을 채택한 이후 외국인투자법 제정, 재정금융개혁 등의 개혁정책을 추진한 결과 물가안정, 재정적자 축소, 외국인투자 증대 등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 연평균 7%가 넘는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등 베트남 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200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53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베트남이 이러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자본이 필요하였는데 국내 투자자본이 부족한 베트남으로서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통한 투자 재원 조달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한 투자자본 조달이 총투자의 30.5%까지 이르는 등 성장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외국으로부터 필요한 자본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은 원조, 차관 그리고 FDI 등이 있는데 아시아 주요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경제여건에 따라 상이한 외자 조달 방안을 추구해 왔다. 한국의 경우에는 1950년대까지는 전후 복구를 위해 대부분 외국 원조에 의존하였으며 1960년대 이후 적극적인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주로 차관 형식의 외자도입을 도모하게 되었다. 반면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은 FDI가 주도적 외자 도입방안으로 활용되었다. 베트남도 자국 경제개발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으로 FDI 유치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FDI가 베트남 경제의 GDP, 산업생산, 수출, 재정수입, 고용, 기술이전 등에 미친 실질적 영향을 보면 기대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FDI가 베트남의 지속적 경제개발을 위한 주요한 재원조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베트남의 FDI 유입 현황과 베트남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부문별로 살펴보고 FDI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요인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향후 과제들을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한국의 외자 도입 정책에 대한 소개를 통해 베트남 FDI 정책에 대한 시사점도 도출해 보고자 한다.

FDI 통계가 파악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1994년까지의 FDI는 주로 석유 및 가스 부문에 집중되었다. 1994년 이후에는 FDI가 부동산, 제조업 등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1997~1998년 기간중의 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이전까지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저임금을 찾아 해외투자를 크게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1998년 이후에는 대베트남 FDI 유입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아시아의 외환위기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베트남 투자가 급감하였으며 특히 부동산 부문에의 투자 감소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이후 외국인투자 유입이 지속적으로 부진함에 따라 베트남은 2001년의 제9차 공산당 전당대회를 통해 신회사법 채택, 외국인투자 관련법 개정, 국영기업 민영화 등의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FDI 유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베트남 FDI는 베트남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우선 총투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주요 투자 재원조달 역할을 하여 개방정책 실시 이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수출 증대를 통해 세계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베트남에 유입된 FDI의 GDP 기여율은 1995년의 6.3%에서 2000년에는 두 배 이상 증가한 13.3%를 기록하였고 수출기여율도 23.2%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FDI가 GDP 증대, 수출 등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기준 FDI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는 베트남 전체 노동 가능인구의 2%에 불과하다. FDI 기업에 의한 고용창출 효과는 FDI가 주로 자본집약적인 부문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제한적이었으며 기술이전 효과도 FDI 기업에 대한 베트남 국내 제품 의무 사용비율 부여에도 불구하고 크지 않았다.

이는 주로 베트남 내 기업들이 FDI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제반 기술, 관리 능력 등을 전수 받을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FDI 기업들이 과거 사회주의 체제하에 형성된 베트남 기업들에게 새로운 개념 및 생산기술의 도입과 기술 및 노하우의 발전을 이루도록 하였다. 또한 FDI의 74%가 베트남 전체 인구의 15%만이 거주하고 있는 5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인구의 85%가 거주하는 여타 56개 지역에 대한 FDI는 26%에 불과한 실정이다. FDI가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것은 자원개발이나 관광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FDI기업들이 투자 대상 지역으로 대규모 시장이 존재하고 제반 사회간접자본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대도시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1950년대까지는 해방 초기 및 전쟁기의 혼란과 전후 복구를 위하여 엄청난 규모의 외국원조에 의존하였으나 1960년대에 이르러 외국원조가 점차 소멸되기 시작하였고 반면 적극적인 경제개발 추진을 위해 주로 차관형식의 외자 도입을 도모하게 된다. 외자도입은 국제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되고 조달 비용이 저렴하던 1970년대 중반까지 국내저축을 보전하는데 유효하였으나, 1970년대 말 세계경제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1980년대 초에는 급속한 교역조건 악화와 지급이자의 급증으로 외채부담이 가중되어 경제 정책 운용에 큰 제약 요건이 되었다.

지난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외자도입정책을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외자도입정책의 일관성과 장기 계획이 결여되어 있어 항상 사후 조정조치를 취해 왔다는 것이다. 장기계획에 대한 조정계획으로서 Rolling Plan 작성 시 전체 경제의 동향이나 경기 상태를 고려하여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방적이기 보다 사후적 조치에 급급하였다. 둘째는 외자도입정책이나 외자도입 관련 법규의 기본 취지가 잘 이행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행정관료나 기업가들이 실정법규를 위반하였다는 의미와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조건이 나쁜 상업차관에 대해서는 도입 억제 방침이 수립되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를 규제하지 못해 결국 외자 도입 기업의 부실이 확대되었다. 셋째, 1960~1970년대까지의 개발과정에는 외자도입 자체에 급급했던 나머지 외자의 조건이나 외자도입의 결과에 대해 충분한 검토나 평가를 하지 못하였고 이를 위한 제도의 보완도 미비하였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외자를 도입하는 경우 정부는 도입되는 외자의 조건이나 원리금 상환능력, 국제수지 효과, 고용효과, 기술이전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었지만 실제 국제금융시장의 여건이나 국제수지가 악화되었을 때에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

한편 한국의 FDI 유치 정책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맞기 전까지 크게 3단계에 걸쳐 변화해 왔다. 경제개발을 추구하던 산업화 초기에는 외국인투자를 규제하다가 어느 정도 산업화가 달성되고 개도국의 외채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대두된 1980년대 초부터 차관의존도를 줄이고 FDI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말 한국 외환위기 이후의 FDI 정책은 적극적인 투자 유치로 전환 되면서 제 4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FDI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외환과 금융부분을 대폭 자유화하였

다. 한국 정부의 FDI 정책 목표는 첫째, FDI가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투자환경의 정비 둘째, FDI 정책을 국내 산업정책의 목표와 긴밀하게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것 등이다. 한국정부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지배를 우려하여 외자조달 수단으로 FDI 보다는 차관을 주로 선호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산업의 보호라는 목적은 상당부분 달성하였으나 외채비율의 과다로 인한 외채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해외의 개방 압력으로 급속하게 시장을 개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베트남은 외자 조달 수단으로 FDI 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성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베트남 경제의 성장에 따라 투자재원을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점차 차관을 통한 외자 조달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향후 베트남이 FDI 활성화를 통한 경제개발과 사회개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반 경제, 사회적인 여건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FDI시 합작기업 및 100% 단독투자법인의 법정자본금이 총투자금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한 것과 합작투자의 경우 FDI 비율을 30% 이상으로 한 것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재산권 관련 법령들을 포함하여 시장경제체제가 잘 운영될 수 있는 법률체계와 함께 건전한 금융제도가 준비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국영기업의 민영화 실적을 보면 국영기업의 수는 개혁 초기에 비해 38%로 크게 축소되었으나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국영기업의 8%에 그치는 등 크게 부진한 실정이다.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기업경쟁력 강화, 구조조정, 금융 개혁, 민간부문 확대, 자본시장 활성화 등 제반 경제 개혁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더 적극적인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넷째, 베트남 투자환경의 가장 큰 애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정부패 척결에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이 베트남이 시장경제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영기업 개혁, 부정부패 척결 등의 개혁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바. 수출지원금융정책 및 베트남 수출입은행 설립방안

베트남은 인구 82.6백만명이고 면적은 33만 km²로서 최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한 국가 중 하나이다. 2001년부터 4년간 베트남경제는 7.2%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같은 기간 동안 더 높은 성장을 보인 국가는 8.2% 성장한 중국뿐이다. 베트남이 이렇듯 높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1986년의 도이모이(쇄신)와 1989년의 무역과 해외투자를 통한 경제개방, 수출 확대에 인해서이다. 그러나 무역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는 무역금융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수출신용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황이다. 그러나 WTO 가입을 앞두고 있는 현재, 베트남은 시행하고 있는 수출보조금 제도를 폐지되는 대신 허용보조금이라 할 수 있는 수출신용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한국의 수출지원 금융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자.

수출지원제도: 한국은 2004년까지 지난 40년간 연평균 7%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1996년에는 세계 11대 경제국이자 12대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것은 동기간 연평균 21%의 성장률을 기록한 수출이다. 한국은 성장동력으로서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정책 추진 초기에 다양한 수출지원정책을 실시하였다. 수출우대금융, 수출소득에 대한 직접세 감면, 수출우대환율, 수출-수입연계제도, 주요 수출산업의 고정자산에 대한 가속감가상각제도 등을 통하여 수출을 지원하였으나 1967년 GATT 체제 도입과 1994년의 WTO체제에 따라 이러한 직접적인 수출지원책은 모두 폐지되었다. 그 대신 현재 한국은 WTO체제하에서 인정하는 수출보험 및 연불신용을 비롯하여 원활한 수출관련 무역금융의 제공 등, 간접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무역금융제도: 무역금융이란 수출업체 및 국내수출물품 생산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여 수출물품 선적 전후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수출자금지급을 지원하는 무역관련 금융 및 지급보증을 의미한다. 선적전 금융은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제도에 근거하여 주로 지원되며, 선적후 금융에는 무역어음 할인과 국제팩토링/포이팅이 있다.

수출신용: 수출신용은 WTO체제하에서 인정되는 공적지원으로서, 많은 선진국들과 개도국이 수출신용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수출자는 수출신용을 통해 국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수출신용에는 보험, 보증, 대출이 있다. 금융조건이 프로젝트의 가격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대규모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수출신용의 공여가능성 여부가 입찰에서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 보

증 그리고 이차보전제도를 제공하며,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수출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베트남 수출금융 제도를 위한 제안

WTO체제와 보조금: 베트남은 현재 DAF의 단기수출금융제도 이외에는 수출지원금융제도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제도는 WTO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출보조금이기 때문에 WTO가입과 함께 폐지되어야 한다.

무역금융: 베트남에는 적절한 상업은행을 통한 무역금융제도가 없다. 따라서 모든 수출기업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역금융제도를 도입하고, 늘어나고 있는 무신용장방식의 거래에 있어 지급불능 등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수출보험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수출신용: 베트남의 현 경제개발단계에서 중장기 수출신용의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신용위험과 비상위험을 커버하는 수출보험제도의 도입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수출보험을 제공하고, 필요한 수출금융을 제공하며, 무역관련 전문가의 집합체 또는 정보센터 역할을 하는 공적 수출신용기관(ECA, 수출입은행)의 설립이 필요하다.

수출입은행의 설립을 위한 제안

수출입은행의 형태: 새로이 수출입은행을 설립할 것인가 또는 기존의 DAF와 같은 기관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이라는 독립된 기관을 갖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초기에는 기존의 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수출보험업무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직접금융제공이 보험이나 보증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베트남은 직접금융을 제공하는 수출입은행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출보험과 대출업무는 두 업무의 성격의 차이로 두 기관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공되는 금융서비스의 종류: 공적 수출신용기관으로서 수출지원을 위한 수출보험과 같은 공적 수출신용 업무를 제공한다. 또한 신용보증 뿐 아니라, 프로젝트관련 보증을 제공, 베트남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단기적으로 베트남에서 플랜트 기계류 수출에 따른 중장기 대출수요는 별로 없을 것으

로 보인다. 다만 프로그램을 유지, 향후에 대처토록 한다. 또한 수출입은행은 무역관련 전담기관으로서 단기무역금융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무역금융과 무역어음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정책기관으로서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특별한 대출프로그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기타 수출지원을 위하여 베트남기업의 해외전시 참여 및 시장조사를 지원한다. 또한 무역관련 연구를 강화, 수출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기타 제안: 수출입은행은 새로운 조직으로서 운영위원회, 이사회, 그리고 집행부서가 필요하며, 집행부서로는 총무부(인사·서무포함), 수출신용부서(수출보험, 중장기 신용, 단기무역금융 제공), 국별조사부, 리스크관리부, 자금부, 법규부, 감사실이 필요하다. 또한 초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정부출연을 주요재원으로 한다. 그러나 향후에는 정부로부터의 차입과 국내외 금융시장으로부터의 차입도 확대한다. 수출금융 전문화를 통하여 베트남 수출입은행은 대외무역 및 무역금융관련 전문가 인력센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수출입은행이 전문가 인력센터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 및 수출금융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고, 해외동향 등 정보수집에 노력하여야 하며, 해외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에도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에는 수출신용 본연의 기능 뿐 아니라 무역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수출입은행의 설립이 필요하다. 새로이 설립되는 수출입은행이 반드시 독립기관일 필요는 없다. 수출보험을 통합형으로서 수출입은행에 모두 맡길 것인지, 독립된 수출보험회사를 설립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일단 초기에는 새로운 사업인 만큼 기존 국영상업보험회사에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겠다. 새로이 설립되는 베트남 수출입은행은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3. 우즈베키스탄의 제조업 육성 및 수출촉진 방안

가. 우즈베크 경제현황과 정책 개관

우즈베키스탄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비교적 많은 인구와 육상교통로를 가지고 인접국가들과의 교역에서 핵심적 역

할을 하였다.

1991년 구 소련연방에서 독립된 이래 우즈베키스탄은 소위 “Uzbek Model”을 택하여 점진적인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도모해 왔으며 산업화 촉진을 위해 정부가 경제운용에 폭넓게 개입해 왔다.¹⁾

[경제현황]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환율조정이나 주요 상품에 대한 가격 및 물량을 통제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을 하였다. 이로 인해 다른 체제전환 CIS국가와 달리 급격한 체제전환의 충격을 방지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체제로의 전환이 지연되어 민간부문의 활력부족과 외국인 투자 기피 등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크게 훼손되어 여타 CIS 국가에 비해 중기성장전망이 저조한 상황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일인당 FDI는 CIS 국가중 최하이며 2000년의 일인당 GDP는 \$2360로 마지막 세 번째로 낮다.²⁾ 그러나 2002년 이후 금과 면화 등 주력 수출상품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인해 2004년에는 7.7%의 실질성장률과 1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또 면화, 금, 자동차 및 기타 천연자원 수출이 30% 증가하였다³⁾.

<표 1-1-1> 우즈베키스탄의 GDP 성장률

2001	2002	2002	2003	2004
3.8	4.2	4.0	4.4	7.7

자료 : Uzbekistan Economy, CEEP, 2005. 6,

1) "Uzbekistan Living Standard Assessment", World Bank Report No. 25923, May 2003, p. 4 and "Republic of Uzbekistan: Country Financial Accountability Assessment", World Bank, December, 2004.

2) World Bank(2004), p. 1

3) "Statement by IMF Staff Mission to the Republic of Uzbekistan, IMF, March 2005.

[시장경제로의 개혁]

우즈베키스탄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금융, 외환, 교역, 민영화 등 각 분야에서 규제완화와 자유화를 추진해 왔다.⁴⁾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이러한 노력은 아직 크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며 World Bank, IMF, EBRD 등 국제기구는 투자환경개선을 위해 보다 전반적인 개혁조치를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⁵⁾

2005년 1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경제자유화와 민간부분 경제 촉진을 위한 개혁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민간기업의 권리를 제고하여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민영화를 가속화하며 금융부문과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 개혁을 포함하는 것이다.

[위험요인과 제약]

그동안의 개혁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 경험부족과 관료계층 및 기득권 세력의 저항 등, 정치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체제전환이 지연되고 있어 우즈베키스탄 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가 제약된다.

뿐만 아니라 2004년에 7.7%의 경제성장률에 기여한 금, 면화, 등 주력 수출상품의 저부가가치 특성으로 인해 주로 이들의 생산과 수출에 의존한 지속적인 성장과 소득증대는 한계가 있다. 또 이들 원자재의 국제가격 급등락에 따른 리스크도 우즈베키스탄 경제의 불안요소로 작용한다.⁶⁾

[경제발전 목표와 전략]

이러한 환경에서 우즈베크 정부는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육성하고 수출산업을 확대하여 산업생산과 고용을 확대하고, 소득수준 향상시키며 이를 통해 지속

4) *ibid*, p143

5) For example, 참고자료 # 23, IMF WP, p30

6) "Analysis of Recent Growth in Low-Income CIS Countries", IMF working Paper, WP/40/151, August, 2004.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립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잡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지금까지 저가수출되던 농산물이나 광물자원 등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현대적 생산 구조를 발전시키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산업화 여건]

우즈베키스탄은 상업화 촉진을 위해 다음의 강점과 제약요인을 가지고 있다.

1) 강점

가) 제조업 기반

경제발전 초기의 한국에 비해 우즈베키스탄은 산업화에 필요한 풍부한 천연 자원과 잘 교육된 인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동차, 항공, 기계(농기계 등), 화학산업 부문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화학제품이나 농기계는 구 소련 시절 주력 수출상품이었으며 항공관련 기계부품은 우즈베크이 소련방내의 주요 생산기지 역할을 하였다. 현재 우즈-대우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러시아 등에 활발히 수출되고 있다.⁷⁾

나) 풍부한 천연자원

우즈베키스탄은 금, 천연가스, 석유, 우라늄, 기타 광물질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고 대량의 면화를 생산한다⁸⁾. 지금까지 우즈베키스탄은 이들 천연자원을 수출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낮아 소득향상에 한계가 있었다.

한국이 수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였던 것이 비해 우즈베키스탄은 이러한 풍부한 원자재를 가공하여 수출한다면 국제시장

7) 우즈베크의 주요 산업은 섬유, 자동차, 식품가공, 기계, 금속, 천연가스, 석유화학 등이다.

8)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2위의 면화 수출국가이며, 세계 4위의 금 매장량을 가지고 7위의 생산 국가이다. 또 세계 10위의 구리 매장량, 7위의 우라늄 매장량, 중앙아시아 2위의 석탄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

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 풍부한 인적 자원

우즈베키스탄은 2천7백만의 인구의 평균 연령이 24세로 매우 젊으며 문맹률이 0.4%에 불과하며 인구의 50%가 근로가능 인구이다. 매우 근면 성실하며 잘 규율된 노동인력은 우즈베키스탄 노동집약적 산업의 잠재력을 높이는 자원이 될 것이다. 현재는 경제침체로 인해 국내 고용기회가 없어 매년 대규모 인력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

우즈베크은 경제체제의 개혁을 통해 풍부한 자원과 인력 및 산업화의 경험을 효율적으로 결합할 수 있을 때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소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2) 약점

그러나 노후생산시설 개체와 신규시설투자에 필요한 소요자본과 더불어 생산기술이 크게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우즈베키스탄은 시장경제에 부응하는 기업가 정신, 경영 노하우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 시장경제에 적합한 금융, 조세, 사유재산 제도와 시스템과 더불어 도로, 통신, 산업공단 등의 사회간접자본 확충도 절실히 필요하다.

우즈베키스탄이 사면이 육지로 둘러싸인 소위 "double land-lock" 지리적 위치에 있다. 따라서 높은 수송비용으로 인해 수출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은 중국, 인도, 러시아, 인접 CIS 및 유럽국가 등 거대 잠재시장이 육상 교통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실크로드 확장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인접국가간의 수송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UN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⁹⁾

이 사업들이 완성되면 우즈베키스탄은 인접한 거대시장과 육상교통망 연결이 대폭 확장될 것이며 이것은 우즈베키스탄의 "double land-locked"가 향후

9) Uzbekistan on the Threshold of Twenty-first Century by Islam Karimov, Korean version, 1999, p186~188

국제무역을 확장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조업과 수출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대판 Silk Road 재건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의 완성이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제 달성을 위한 정책권고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KSP-Uzbek 사업의 연구수행을 위해 World Bank, IMF, IBRD, ADB 등 국제기구의 보고서 및 통계정보와 우즈벡 정부나 CEEP가 발간하는 경제사회 정책 보고서 및 통계자료를 참고하였다.

그 외에 우즈벡의 경제정책 담당자와 CEEP 연구진 및 국제기구 경제 전문가, 현지의 국내외 기업가들과의 면담과 산업시찰, 시장조사 등을 통해 들과의 인터뷰 및 자료조사를 통해 우즈벡의 경제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짧은 조사기간과 통계자료의 제약에 따른 한계로 인해 우즈벡 경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의 개발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즈벡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여기서 논의된 우즈벡 경제에 대한 시각이나 정책제안은 국외자의 관점(outsider's view)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에서 제안된 정책수단은 우즈벡 현실에 적합하도록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우즈베키스탄의 제조업 육성전략의 제안

[산업화의 기본 전략방안]

우즈베키스탄이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제조업 육성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이에 부응하는 정책 전략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1) 개방적인 시장경제의 육성
- 2) 민간부문의 활성화

- 3) 시장경제에 부응하는 제도정비
- 4)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 5) 중소기업 육성

다음은 본 보고서에 제시된 우즈베키스탄의 산업화 및 수출촉진 정책방안을 요약한 것이다.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발전전략과, 제조업 육성과 수출촉진 정책, 산업화를 위한 거시 금융, 조세 및 재정정책 방안을 논의하였고 마지막으로는 국제통상 정책 및 WTO 가입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과거 한국의 산업화와 수출촉진 경험을 여건이 다른 우즈베키스탄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따라서 적절한 보완과 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1) 한국의 경험에서 본 우즈베키스탄의 발전전략 개관

1991년 독립이후 점진적인 경제체제 전환을 도모한 소위 “우즈벡 모델”을 택한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는 다른 CIS 국가들에 비해 체제전환에 따른 국민 소득 하락폭이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즈벡의 접근방식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 하였다. 예를 들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입대체산업 전략은 중소기업의 발전과 농촌부문의 발전을 지연시켰다.

무엇보다도 최근까지의 미온적인 개혁과 광범위한 정부개입으로 인해 시장의 활성화와 민간기업가의 출현을 저해하였고 나아가 외국인 투자가 매우 부진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은 지속적인 높은 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시장 지향적 개혁을 통해 이러한 상황이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국유산업의 민영화와 사유재산권 보호,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법적, 제도적 개편과 행정관행의 확립이 절실하다. 또 금융, 조세, 재정 등 각 분야의 개혁과 사회안전망의 구축도 필요하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경쟁적인 기업환경과 금융시장이 착실하게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개혁의 추진을 위해 국제금융기구나 우방국가의 지지와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중소기업 육성 경험에서 보면 유능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강화하고 한계중소기업을 보조하기보다 경쟁력 있는 분야로의 업종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하도록 규제的基本방향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분야의 기술과 인력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되 기업의 리스크를 정부가 부담함에 따라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과거 한국은 민간기업의 국제 경쟁력 열세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택한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출현할 수 있도록 과거 사회주의체제에서 벗어나 시장 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정책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우즈베키스탄은 산업화에 있어서 한국에 비해 월등히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이들 생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 double land-locked의 약점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산업화를 달성할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우즈베크의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서 중소기업 육성과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자유지역 내지 중소기업 전용공단 등 산업공단의 설립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집중된 산업공단을 통해 투자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생산효율성을 제고하여 우즈베크의 제조업 육성과 수출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공단 입주기업들에게 공장부지, 철도 및 도로, 공항 등 수송시설, 전력과 수자원, 환경처리시설, 통신시설을 장기간 저가에 제공하여 이들 기업이 규모 및 범위의 경제와 산업연관 효과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비용 절감과 국제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산업공단에는 정부주도의 인허가나 수출입 대행 기관, 해외시장 및 기술 정보 제공기관, 금융지원기관, 직업훈련시설이나 취업소개 시설, 생산기술 연구시설, 물류센터, 산재병원, 근로자 주거시설, 복지시설을 설립하여 기업과 근로자의 편의를 증대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적 규범에 준하여 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내지 폐지하여 사업인허가, 투자, 금융, 조세, 수출입업무, 외환업무 등에서의 경영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외국기업의 공단 입주를 활성화하여 외국의 자본과 기술과 경영 노하우가 국내 기업에 신속하게 이전 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초기에는 소수의 특화 공단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이들이 우즈벡 산업화의 구심점으로 성장 발전하도록 하고, 차후 다양한 지역에 공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WTO 규범에서는 국내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조치가 크게 제약을 받는다. WTO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우즈벡은 무역 및 통상정책의 국제규범과의 정합성을 위해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규제완화와 자율화를 위한 우즈벡의 이러한 노력은 WTO 가입을 위해서 만이 아니라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 미성숙한 국내 제조업기반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우즈벡은 WTO 가입에 있어서 다른 CIS 국가들과의 보조를 맞추어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제반의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국내산업 육성전략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다.

2) 제조업 육성 및 수출촉진 전략

(1) 제조업 현황

다른 CIS 국가들에 비해 우즈베키스탄은 GDP에 대한 제조업 비중이 17%로 낮고 수출도 저조하다.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여러 이유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제조업 부문에 대한 생산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 수출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며, 투자자본과 기술 및 산업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이 제조업과 수출산업 부진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에 관련된 직간접 비용이 과다하고 높은 규제로 인해 기업 투자수익성이 훼손되고 있다.

그러나 풍부한 지하자원과 양질의 노동력과 아울러 기계, 화학,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의 산업화 경험을 잘 활용하고, 특히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확립을 통해 이들 생산요소가 효율적으로 결합될 수 있을 때 우즈베키스탄의 제조업 발전 잠재력은 매우 높을 것이다.

(2) 산업화를 위한 정책 제안

한국의 산업화 경험에서 보면 우즈베키스탄이 특정산업 육성전략(industrial targeting) 보다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이 자연발생적으로 출현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단순하지만 잘 정비된 지원전략을 통해 제조업과 수출부문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제도금융권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
- 세제 및 관세지원
- 도로, 통신, 수자원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 국가적인 R&D 기반 강화
- 중소기업 전용 산업공단과 수출자유지역의 설립

우즈베키스탄은 풍부하고 잘 교육된 저임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노동집약적인 수출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화학 분야 등의 고도산업화의 기반을 조성한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산업단지나 수출공단 등을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산하여 설립하기보다 생산, 수송, 원자재 및 노동력 확보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입지를 전략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민간의 기업가 정신이 최대한 조장되어야 할 것이며, 또 국내 기업과 외국기업, 혹은 정부간의 기술, 자본, 경영기법의 제휴를 통해 국내산업의 활성화가 더욱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해외 기술과 시장정보수집 및 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KOTRA나 종합상사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WTO 가입을 준비하는 우즈베키스탄은 WTO 규범 내에서 기업에 대한 지급보증, 우대금융, 세제혜택 등의 금융 조세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민간의 R&D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비차별적이어야 할 것이다. 또 산업공단지 설립이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은 WTO 규범에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다.

3) 거시경제운용과 금융정책

[중기 경제개발계획의 운용]

우즈베키스탄은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은 종합적이고 일관된 중기개발계획을 수립, 집행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계획에는 목표 성장률을 기준한 소요 투자자본과 국내저축과 경상수지, 자금조달계획, 조세 및 재정운용계획을 포괄한 거시경제운용 방안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체로 향한 제반의 개혁 조치도 중기계획의 틀에서 계획하고 시행하며 평가, 보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개혁을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정책]

경제성장과 투자목표의 설정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시장실패가 심각하여 투자를 저해하고 정부투자의 외부효과가 클 때 필요해 진다. 따라서 우즈베크의 경우 산업단지나 교통 및 통신 하부구조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정부투자가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건전하고 안정적인 거시운용]

건전한 통화 및 재정정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거시운용은 저축증대, 투자 활성화 및 저인플레이를 유도하여 고성장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산업촉진을 위한 경기확장적 정책과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 간에는 항상 상충이 생긴다. 개발경제의 정책 담당자들에게는 이들 두 과제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종합적인 중기 경제운용계획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것이 종합적인 경제운용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금융개혁 정책]

은행계좌로부터 강제적인 세금납부나 예금인출 제한 등은 우즈베키스탄의 금융중개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자금중개기능의 제고를 위해 금융시스템의 개혁과 아울러 민영화 촉진과 자본시장 육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의 경험에서 보면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클수록 금융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업의 과다부채 의존과 도덕적 해이의 조장 등 부작용이 심각해 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4) 조세 및 재정정책

한국은 경제개발 초기에 조세 및 재정정책을 활용하여 산업을 지원하였다. 한국의 경험을 우즈베키스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지만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훈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균형재정의 확보
- 재정규모 비중과 조세부담률의 동결
- SOC 투자확대를 위한 재정지출구조의 개선
-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의 개선
- 신중하고 적극적인 조세유인을 통한 FDI 및 중소기업 육성

[재정지출 구조의 개편]

우즈베키스탄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SOC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정부는 경제성장에 따라 확대된 재정규모 증가분을 주로 SOC 투자에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재정균형을 유지하면서 SOC 지출비중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세제개혁]

과다한 조세부담은 민간부문의 활력을 저해하여 경제발전을 지연시킨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조세부담률을 최소한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세유인제도]

한국은 다양한 조세유인 제도를 활용하여 산업발전과 수출 촉진을 도모하였다. 우즈베키스탄도 현재 여러 가지 조세 유인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조세유인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조세유인에 의해 자원배분이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유인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WTO 가입에 대비하여 조세유인제도가 국제규범에 부응하면서 중소기업이나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활용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5) 산업정책과 무역자유화정책의 조화

우즈베키스탄은 과거의 한국의 상황보다 훨씬 복잡한 규범의 국제무역질서 환경에 있다. 따라서 과거 한국의 산업육성 정책 수단을 우즈베크에 적용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산업개발정책의 이행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및 법적 제도를 갖추어야 하는 동시에 WTO 가입을 위한 효과적인 시장자유

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수입대체정책의 평가]

일반적으로 많은 국가들의 경우 특히 경제개발의 초기단계에서는 수출진흥보다는 수입대체를 지원하는 통상정책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수입대체정책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장벽을 수립함으로써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을 유도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수출진흥정책의 주요 효과는 국내시장으로 유입되는 수입경쟁을 차단하는 대신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맞도록 국내경제의 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더욱이 수출진흥정책은 불필요한 무역장벽의 제거를 통해 제도적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시스템의 구조조정 등 다양한 무역원활화 수단이 동원된다. 따라서 통상정책의 제 1차적 목표는 중장기 경제개발을 위해서라도 수입대체가 아닌 수출진흥이어야 한다.

[법제도의 개선]

제도적 개선은 국내 산업개발사업의 지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WTO가입을 통해 시장자유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제도적 개선은 다음의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 법제도의 구축 및 개선, 2) 통상정책 이행을 위한 조직의 구조조정 등이다.

통상정책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역구제제도 (trade remedy systems)의 강화를 통해 WTO 원칙에 맞게 수입시장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무역구제제도의 법규정이 광범위하게 제정될 뿐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지침 및 규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무역구제조사를 담당하는 특화된 조직이 조기에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무역구제절차의 관리 및 이행이 상당한 전문성과 경험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우즈베키스탄은 무역원활화를 위해 세관절차의 원활화, 수출입 절차의 간소

화, 세관행정 및 국경절차의 비용절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3국의 수출 우회를 통해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상황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다른 CIS 국가와의 여러 경제협력관계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원산지규정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

[WTO 가입과 산업촉진정책의 조화]

WTO 가입과 관련하여 국제수지(BOP) 예외조항이나 비시장경제(non-market economy) 지위의 활용, 과도기경제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혜택, 무역조정지원(TAA)제도 등 다양한 특례혜택을 검토하여 국제통상규범 내에서 우대조치를 얻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수출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수출금융지원제도를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출신용과 수출금융보증을 제공하는 업무를 행함에 있어 수출입은행은 가장 널리 활용되는 메커니즘이다.

특히 많은 중소기업체와 초기단계 기업을 위한 수출지원을 통해 수출입은행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 및 기타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WTO 보조금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 의무사항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생산비용 절감을 통해 국내제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세금면제조치는 또 다른 전형적인 통상정책수단이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수출진흥을 위한 방안으로 세금감면 또는 면세조치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면세조치를 이행하기에 앞서 WTO 보조금협정의 법적 의무사항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리한 대외상황과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모여 있는 기업들이 위치해 있는 수출자유지역은 수출진흥을 위한 경제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정책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정책은 보조금협정의 어떠한 조항이나 의무규정을 위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WTO 원칙에도 준수하는 방안이다.

또한 관련 기업들 간의 경쟁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당 정부의 보조금 정책의 임의적 이행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다. 한국의 산업화 경험에서 본 기타의 교훈

[개방적 시장경제 체제의 확립]

흔히 한국의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인해 한국이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전적인 통제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적 기적은 다른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된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나라들은 개방적이며 경쟁적인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해외의 시장과 자본, 기술 및 경영기법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러한 개방경제체제는 기업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쟁력을 배양하고 수익성을 제고하는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의 정부주도형 개발도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와 민간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한 것이었다. 정부가 경제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필요한 정책수단과 자원배분을 주도 하였지만 구체적인 생산, 투자, 고용, 또는 원자재의 조달 등 핵심 경영의사결정은 민간의 재량에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큰 차이는 한국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 과거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잔존이 강하고 시장경제 기반과 민간부문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은 시장경제환경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의 창의와 활력을 최대한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면서 경쟁적이고 개방적

인 시장을 조성하고 건전한 거시경제 운용과 규제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기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한국의 HCI정책의 교훈]

과거 한국의 중화학 공업(HCI) 육성정책은 자주국방 외에, 산업구조 고도화와 수출품목 다변화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HCI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다면적이다.

HCI 육성전략의 결과 고도성장을 이루고 오늘날 한국이 기계, 조선, 전자, 자동차, 화학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산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혹은 지역간 불균형 성장을 초래하였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HCI 투자확대에 따른 인플레이 유발, 경제력 집중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한국정부는 1980년대 초부터 시장경제 기능 확대를 위한 경제자유화와 개방화를 적극 도모하였다. 금융 및 외환시장 자유화, 무역자유화와 더불어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과 개입을 중단하였다.

이처럼 한국의 industrial targeting 전략과 같은 정부 주도의 주요 투자 프로젝트의 수행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었지만 중화학 공업화가 심각한 부작용도 초래하였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시장개입에 따른 폐해]

시장이 불완전할 때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일정부분 정당화 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은 기업과 정부와 정치권 간의 야합으로 변질되고 경제운용에 있어서 경제적 합리성 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되고 부정과 부패가 확산되며,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산업촉진을 위한 지원 등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에도 경쟁을 통해 우월한 기업이 보상될 수 있는 제도와 관행을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어

야 할 것이다.

[한계기업의 퇴출]

한국의 경우 정부주도의 경제개발과정에서 정부가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경쟁력 없거나 과도한 부채의존에 따라 부실한 기업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들 부실기업을 정치적 이유나 실업발생우려 등으로 인한 정부의 구제조치는 결국 기업으로 하여 소위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의 신화를 조장하여 기업의 무모한 투자나 과도한 차입경영을 조장하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들 경쟁력 없고 부실한 기업에 막대한 금융 및 인적자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됨에 따라 국가적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막대하였다. 나아가 1997년 말에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거대 부실기업들의 연쇄도산과 이에 따른 금융위기가 초래 된 것이었다.

우즈벡의 경우도 경쟁력 없는 기업이나 부실기업이 쉽게 구조조정하고 퇴출(exit)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금융 및 인적 자원이 보다 효율성 높은 기업으로 배분 되도록 함으로써 경제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구제를 기대하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으로써 방만한 기업경영에 따른 부실화를 최소화 내지 방지할 수 있다.

[새마을 운동]

한국의 새마을 운동은 근면과 자조,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운동으로 시작하였다. 그 후 농어촌 새마을 운동은 공장 새마을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새마을 운동은 한국전쟁 후 좌절과 패배의식에 젖어 있던 국민들의 생활의식을 개혁하고, '잘 살아 보세'라는 희망과 '하면 된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신감을 심어주어 국민정신과 행동양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었으며 이것

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Think Tank"의 역할 강화]

한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정책 입안 경제성과의 평가에 있어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과 비중이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이 구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데 정부 think tank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한국의 경험에서 볼 때 최고 정책 결정자가 정부 think tank를 잘 활용함으로써 국가의 중장기 경제발전 비전과 목표를 정립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과 전략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은 연구기관이 정부와는 독립된 조직을 설립함으로써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였으며, 이들 연구기관들이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KDI 등 한국의 think tank들은 연구역량의 강화를 위해 해외의 저명 대학이나 연구기관, 세계은행, IMF 등 국제기구의 전문인력과의 교류를 활성화 하였다. 경제정책 선택에 있어서 외국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견해는 국내의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유도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경제 통계정보의 공급확대]

우즈베키스탄은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서 비롯된 경제통계체도로 인해 통계 생산이 제한되어 있거나 공개되지 않는 것이 많다. 또 공개되는 경제통계도 시장에서의 활용가치가 적은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거시경제나 금융 및 기업활동 관련 통계들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그 내용과 형식이 시장경제권에서 사용되는 통계와는 매우 상이하여 통계로서의 활용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기업과 개인 등 경제주체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시장경제체제의 하부구조로서 경제정보와 통계를 생산, 공급하는 것이 우즈베크 정부의 핵심과제의 하나이다.

4. 사업의 성과 및 시사점

가. 베트남 지식공유사업의 성과

이번 연구를 통해 연구진은 베트남 현실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이는 양국의 지식 갭을 좁혀 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 중요한 사항은 이번 지식공유사업에 대하여 수원국인 베트남정부의 실무 정책입안자들은 물론 정부 고위지도자들까지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 WTO가입과 관련하여 가입전의 준비사항과 가입 후의 대책방안을 한국의 경험과 중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상세히 제시해줌으로써 통상에 경험이 부족한 베트남 정부 관계관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WTO가입 후에도 한국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도움을 필요로 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기업 개혁방안 역시 한국의 구체적인 민영화 사례와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를 소개하여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 거시경제 운영에 있어서 성장일변도의 성과도 크지만 대내외 불균형성장 즉 물가불안과 국제수지 악화와 방만한 경제운영이 외환위기를 초래했다는 경험은 베트남 거시경제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며, 베트남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는 고용창출을 통한 빈곤 감소에 역점을 둠으로써 도농 간의 소득격차를 줄여 가는데 한국의 사례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베트남 경제개발에 있어 외국인직접투자는 여전히 기술이전 효과가 크지 못하여 고용효과 역시 미미하다. 그 이유는 FDI 대상인 대형공기업들이 선진기술의 수용태세가 미흡했고 자본집약 제조업 위주였기 때문이다. 대형공기업의 경영합리화와 고급두뇌 인력의 양성과 영입으로 FDI를 통한 선진 경영 및 생산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이 시급하다. 특히, 수출주도 성장전략을 택하고 있는 베트남의 수출지원 금융제도가 아주 취약하며 수출보험제도 역시 빈약하다. 수출신용기관(ECA)에 의한 수출신용, 수출보험, 대출 등의 공적지원 제도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지식공유사업이 요망된다.

베트남 지식공유사업은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수원국의 요청에 따라 지식공유사업을 1년 더 연장한다면 실천가능한 대안과 실천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마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수혜국인 베트남 모든 참여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지식공유사업을 수혜국인 베트남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 공여국인 한국의 주요 지식인들이 베트남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또한 베트남의 지식인들과의 우호와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양국 간의 협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밝혀 둔다.

나. 우즈베키스탄 지식공유사업의 성과

이번 연구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이 시장경제를 활성화 하고 제조업 육성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1) 개방적인 시장경제를 육성하고 2) 민간부문을 활성화 3) 이러한 시장경제에 부응하는 제도를 어떻게 정비하느냐 4)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5) 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한 정책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통제와 열악한 사업 환경 등의 우즈베키스탄의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여 단기간의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풍부한 자원과 우수인력, 국내외 잠재시장의 확대 등 발전 잠재력을 고려할 때 양국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한국을 중요 협력국가로 인식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점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섬유, 의복, 자동차 및 기계부품 산업, 그 외에 다양한 경공업 제품에 대한 국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 분야에 대한 한국의 기본기술, 자본 및 경영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상호 도움이 되는 협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자 파견 및 노후 기계설비의 이전, 경영 노하우 전수 등에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5개년 계획은 경제발전 정책 수립이나 중소기업 전용 산업공단의 설립, 정부의 Think Tank 육성 방안 지원, 시장경제 교육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개발전략이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우즈베키스탄 공무원이나 일반인을 한국에 초청하여 중장기

교육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약간의 물자를 지원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전반적인 경제발전단계가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이 당장 큰 이익을 내기는 어렵겠지만 우즈베크의 주된 생산품인 면화와 주력 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은 한국의 섬유 및 자동차 산업에 장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인다. 더구나 현재 정부는 WTO가입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잠재시장 중의 하나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우즈베크에 진출한 외국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금융의 불투명성 및 비효율이므로 수출입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의 노하우를 전수하여 그로인해 금융 및 외국인 투자에 관한 체제가 개선된다면 향후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지식공유사업을 통해 한국이 얻을 수 있었던 부수적인 소득은 체제전환국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북한 다음으로 폐쇄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른 CIS 국가보다 사회주의 체제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을 통해 얻은 경험은 앞으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가시화되고 북한의 체제전환을 지원할 수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정보와 지식이 될 것이다.

다. 시사점

현재 대폭적인 ODA 확대의 어려움, 개방화의 심화,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 등 쉽지 않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개발원조정책을 체계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번 지식공유사업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동 사업이 우리 무상원조의 주요과제에 시사하는 점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우리의 개발협력사업이 계획의 단기성, 구체적인 추진전략의 미비 측면이다. 현재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수원국의 소화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권고를 실시하고 있어 동 사업에서는 약 5개월간의 경제종합연구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통합적 접근(integrated approach)을 수행하여 적절한 정책권고서 마

련에 중점을 두어 특화한 바 있다. 두 번째로는 수요자 및 성과중심적 사업 기획의 측면이 부족한 측면이다. 특히 정책제안과 이의 수용여부 및 정도가 핵심인 동 사업에서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동원, 현지인의 참여를 통한 실천의지를 제고를 위해 다양한 대상과 방식의 정책자문 수단 들을 동원하여 종합적인 프로그램(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 구성하였다.

종합적, 통합적 기술협력사업으로서 동 사업의 기타성과와 우리 개발협력사업의 성과 및 체계화 제고를 위한 제언을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과거 개발협력사업들의 체계화가 미비한 바, 동 사업에서는 사업결의 공유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정부 차원에서도 산재되고 업데이트가 미비한 국내 대외협력사업, 지역연구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서만 개발협력사업간 시너지효과를 제고함은 물론 후속 과제와 수행기관의 선정, 과제의 활용수단이 선순환 되는 전략적인 개발협력사업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는 우리 민간의 활용을 소홀히 한 측면으로 동 사업에서는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대상국 경제정책과제를 파악하고, 정책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요조사 및 세부실태조사 등에서 우리 진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들과 관련 정책들을 파악한 바 있으며 이는 대상국의 실질적인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동 사업은 약 1년에 걸쳐 현지 정책담당자 뿐 아니라 고위직, 지식인 다수를 대상으로 동 사업의 목적 및 정책제안에 대한 우리의 고민과 노력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장기적인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였다. 향후에도 본 사업의 결과로 구축된 네트워크와 무한한 확대가능성 및 부가가치를 지닌 경제개발건설사업의 경험을 활용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및 인사, 전문가들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동참이 필수적일 것이다.

44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에 대한 지식공유사업

제1부

지식공유사업의 개요와 진행과정

제1장 사업의 개요	47
제2장 사업 기획	52
제3장 연구 및 자문활동	58
제4장 사업결과 공유 및 평가	62

제1장 사업의 개요

1. 추진배경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제 막 진입단계에 들어선 한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강화를 위하여 그에 맞는 역할 강화가 요구되며, 특히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자원부국이나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들과의 전략적이며 장기적인 안목의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정부 및 공공부문이 추진해 온 기존의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 지원사업은 단편적이고 미시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상호 유기성이 부족하며, 수원국의 경제 환경이나 정책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기술협력사업(technical assistance)과 정부의 경제원조 사업들 상호간에도 연계가 미비하고 우리의 국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한국의 축적된 개발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할 수 있는 유능한 민관전문가들의 활용 정도가 낮았다. 따라서 개도국의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내기관들의 협력사업간 유기성을 강화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제고하며, 우리의 국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대개도국 경제개발 컨설팅사업의 모색이 필요하다.

2. 사업목적

본 사업의 목적은 민관전문가들의 참여하에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정책자문을 실시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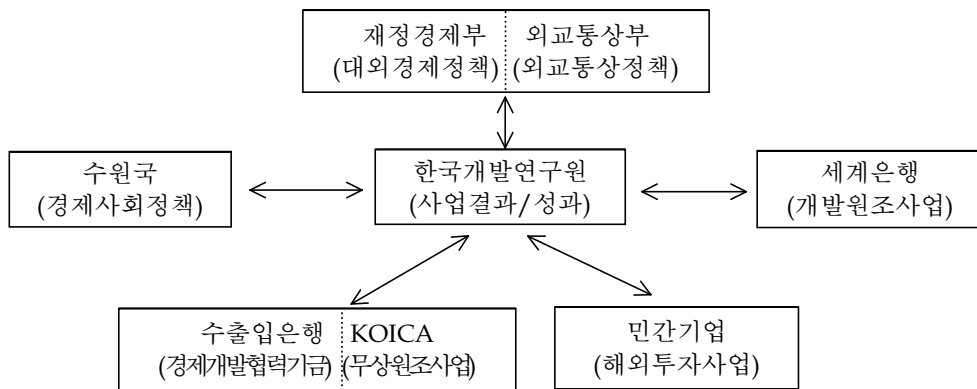
첫째, 개도국 경제정책의 개발, 집행 및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지원하고, 특히 사업 결과를 우리의 경제개발협력기금, 정부의 기술협력사업 등과 연계시킴으로써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둘째, 정부·기업의 세계화전략 및 국내기관들의 국제협력사업과 연계시켜서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고 나아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며, 셋째, 지식공유라는 국제적인 흐름에 부응하고 한국의 특화된 지식 및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경제개발 컨설팅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3. 대상국 및 주요활동

사업기간은 2004년 8월 27일부터 2005년 12월 20일¹⁰⁾까지였으며 대상국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2개국이다.

주요활동으로는 첫째, 사업의 기획단계로서 서면조사 및 카운터 파트기관 선정, 현지 수요조사, MOU 체결을 통해 국별 사업계획서를 확정하고, 둘째, 연구조사활동으로 종합적인 경제현황 분석 및 연구,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세부실태조사, 정책권고서 작성을 위한 중간 및 최종 보고회 등을 수행한 후, 셋째, 정책자문활동으로 관료나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실무자연수, 중간 및 고위 관료를 대상으로 정책대화(policy dialogue), 현지의 관료 등 각계인사들을 대상으로 최종 정책권고서의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사업결과전파세미나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대상국의 관련 인사 및 사업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조사, 인터뷰 등을 실시하고 수혜국 및 우리말 최종보고서를 배포하여 사업결과의 공유 및 활용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그림 1-1-1> 사업결과 공유체계도



10) 사업기간을 당초 2005년 8월 26일에서 외교공관, 현지 정부와 서면조사 등 사업협의로 인해 기획단계에서 사업기간을 2005년 12월 20일로 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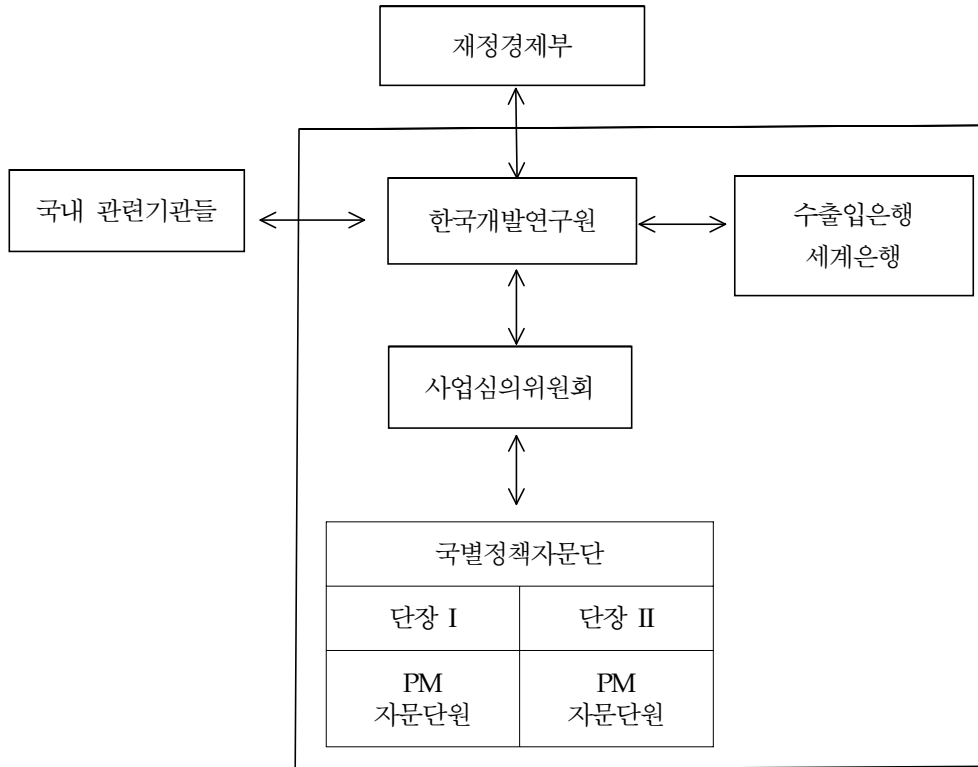
4. 추진체계

사업발주기관인 재정경제부의 총괄아래 한국개발연구원이 사업을 주관하였으며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심의위원회¹¹⁾와 국별 정책자문단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심의위원회는 대개도국 지원사업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민관분야 고위인사 5인으로 구성되고 의사결정기구에 준하는 사업심의위원회에서는 보고서의 검토 뿐 아니라 사업 활동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며 사업활동을 평가하였다. 국별 정책자문단은 정책자문단장, 실무책임자(PM), 정책자문단원으로 구성되며 국별 사업과 관련된 세부실태조사(pilot study), 종합적인 대상국경제 연구 및 정책권고서 작성, 자문활동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변 기관들과의 역량을 활용하여, 수출입은행의 참여를 통해 국별 경제현황에 대한 기초조사, 현지주재소를 통한 현지 활동의 지원을 확보하며,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주재소를 활용하여 현지의 객관적 정보를 확보함은 물론 최종세미나 참여를 유도하고 연구결과의 객관성 확보뿐 만 아니라 차별성을 부각하고,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 공관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현지 활동을 수행하고 기술협력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 민간기관(민간기업, 민간경제단체, NGOs)들이 실시하거나 계획 중인 사업과의 연계를 검토하고 해외에 진출한 민간기업과도 협력하여 추진하였다.

11) 금번 사업의 심의위원으로는 위원장인 진 념 서강대 교수,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이경훈 서울대 교수, 허 승 전 주재네마 대사, 신동규 수출입은행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최종찬 위원과 이경훈 위원은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의 국별단장을 겸임함. 2004년 9월 13일 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 방향과 예산의 운영에 대해, 2004년 9월 17일 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대상국 선정과 수요조사에 대해, 2005년 4월 19일 3차 심의위원회에서는 국별사업계획서에 대해 심의하였다.

<그림 1-1-2> 사업추진체계도



5. 추진방향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의 경제개발 정책과제가 지닌 복잡성과 여타 정책과제들과의 긴밀한 연관관계로 인해 보다 효과적인 사업성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석과 관련 정책 간 연계성의 강화를 기초로 통합적인 접근방법(integrated approach)에서 추진하였다.

수원국 정치·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기획, 집행, 사후관리까지 지원하고 패키지화된, 종합적 프로그램(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으로 구성하고, 정부 및 민간기업의 global management와 연계하였다.

중전의 공급자 중심적 지원으로부터의 탈피하여 수원국의 수요중심에서 사

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학계, 관계, 업계의 전문가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함은 물론 사업결과의 전파·공유 확대 및 활용도를 제고하여 연구활동 종료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제2장 사업 기획

1. 대상국 선정

대상국 선정에는 양국간 교역, 해외투자, 외교정책 등 우리의 국익과, 대상국의 수요, 사업의 기대효과 등이 고려되었으며 특히, 한국의 개발경험에 관심이 많고 향후 경제협력 잠재력이 큰 후보국을 선별하여 결정하였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의 대상후보국을 선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 관계기관들의 경험 또는 개발협력 대상국 선정 시 고려사항을 조사¹²⁾하였고 이에 따라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주요 후보국으로 선정하고 주한 대상국 대사관의 관계자 면담을 통해 수원국의 관심사항을 파악하고 특히 주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의 한국대사관과도 현지의 수요뿐 아니라 안전문제를 협의하였다.

2. 기초자료 조사

국별 사업 활동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등에 대한 정책자료 및 연구보고서 목록의 정리, 대상국과의 ODA실적 조사뿐 아니라 수출입은행의 해외경제연구소와 협력하여 대상국의 일반현황과 경제현황을 조사·작성하였다. 또한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의 대상국별 한국전문가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소개와 함께 정치·경제현황, 주요 현안 과제, 민간 및 공공부문의 對한 관계 등을 논의¹³⁾하였다.

12) 재정경제부는 교역규모 등 경제협력관계가 증진과 우리기업의 시장진출 규모와 시장개척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함. 수출입은행은 아시아지역 대상국 고려사항으로 소액, 다국의 원칙으로 적절히 배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동구 CIS 국가들 중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우선시 하며 외교통상부는 OECD와 세계은행에서 구분한 지정된 최빈개도국 등으로 대상이 변화되고 있으나 외교적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히 지역별, 국별 배분을 고려하여 대상국을 선정하였다. KOICA는 다방면으로 한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ASEAN 소속 국가와 특히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3) 2004년 10월 6일 개최된 베트남 간담회에는 최종찬 단장, 송희연 인천대 교수, 이재민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소장, 손승호 수출입은행 부부장, 권 울 대외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구성렬 연세대학교 교수, 도의관 KOTRA 처장, 임기택 증권거래소 부장, 박정운 한세실업 전무 등이 참여함. 우즈베키

3. 서면조사 및 카운터파트 기관 선정¹⁴⁾

KDI에서 마련한 사업소개자료와 서면조사를 위한 질문서를 재정경제부가 외교통상부의 협조를 통해 현지 정부에 전달하여 대상국의 관심사항과 정책자문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현지 수요조사의 내실화를 기하며 특히, 사업 전반의 협조 및 지원, 연구 활동의 참여를 주관할 현지 카운터파트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베트남의 카운터파트기관으로는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PI) 산하 개발전략연구소(Development Strategy Institute: DSI)¹⁵⁾가 선정되었으며 경제사회개발 정책역량 제고 하에 아래의 분야와 사업 형태를 희망하였다. 구체적 수요로는 ① 정부와 기업부문 발전전략 수립 및 집행, ② 공공행정개혁 및 한국의 개발경험, ③ 산업, 농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 ④ 완전고용을 위한 노동시장 개발, ⑤ 교육을 포함한 인적자원개발, ⑥ 금융·산업·무역정책 등이었고, 사업형태로는 분야별 정책연구와 연구결과의 공유를 위한 워크숍 및 세미나이며, 사업결과를 활용하여 주요 정책을 베트남 정부 및 의회에 제출하고 공무원과 연구원 훈련 교재에 활용하기를 희망하였다.

우즈베크의 카운터파트기관으로는 경제부 산하 경제정책센터(Center for Effective Economic Policy: CEEP)¹⁶⁾로 선정되었으며 구조개혁과 경제성장이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을 요청하였다. 구체적 수요로는 ① 거시

답회는 2004년 10월 5일 개최되었으며 이경훈 서울대 교수(단장), 허 승 前 주 제네바 대사, 고식기 수출입은행 국별조사실장, 차 실 수출입은행 차장, 정여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유임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최경석 대우증권 국제본부 팀장, 이성운 (주) 대우팩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14) 재정경제부는 KDI의 조사자료인 사업소개자료와 demand survey form를 활용하여 외교통상부 협조 하에 현지 정부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카운터파트기관을 선정하였다.

15) 1994년 설립된 DSI는 국가·정부부서가 주도하는 국가 경제사회 개발전략 및 계획의 수립 등 각종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과학자문위원회 및 8개의 연구부서와 교수 2명, 과학박사 1명, 박사 23명, 석사 6명 등 총 90명으로 구성되었음. KDI는 1994~6년간 DSI를 대상으로 연구기관 운영과 역량 강화에 대한 자문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

16) 경제정책센터(Center for Effective Economic Policy: CEEP)는 1966년 국가경제연구소에서 출발하여 우즈베크의 경제과학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우즈베크 경제부 산하에 소속되어 다양한 경제개혁 과제를 연구하여 정부에 조언하며 경제상황 파악과 예측을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작성함. 조직 구성으로 총 13개의 부서에 약 60명이 근무하며 박사급 5명, 준박사급 15명, 그 외 연구원으로 구성된다.

경제정책, ② 산업구조 및 제도개혁, ③ 투자활성화, ④ 대외경제활성화, ⑤ 고용 및 사회개발정책, ⑥ 지역종합개발 등이며 사업형태로는 공동연구와 더불어 초청연수, 세미나 등의 정책자문을 요청하였으며 동 사업을 통해 경제개혁 및 경제안정화를 위한 중기 경제정책개발에 활용하기를 희망하였다.

4. 현지 수요조사 실시

대상국의 경제전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각 국가들이 처한 특수한 경제상황을 파악하고 요청 과제들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교환함으로써, 국별 특성과 대상국의 수요에 부합하는 과제를 발굴·추진하여 사업효과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베트남 수요조사¹⁷⁾에서 파악된 주요과제로는 다음과 같다.

① 베트남의 WTO가입 등 세계화의 영향과 대비책, ② 직업훈련, 인적자원 활용방안, 교육재원 확보 등 인적자원개발전략, ③ 발전전략 수립과 성공 및 실패 경험, ④ 한국 재벌정책의 경험, ⑤ 베트남 경제구조의 분석과 개편방안, ⑥ 총공사화, 민영화 등 공기업 개혁, ⑦ 경제관련 법령체제 정비(기업법, 경영법 등), ⑧ 한국정부의 분권화정책 경험 등이었다.

특히 전반적 경제정책에 대한 연구나 자문 보다는 한국의 구체적 사례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더불어 베트남 재무부에서는 설립예정인 수출입은행의 운영전반에 대한 정책제안과 연수를 요청하였다.

우즈벱의 수요조사¹⁸⁾를 통해 파악된 주요과제로는 다음과 같다.

17) 3월 6일에서 12일간 수행된 베트남 수요조사단은 최종찬 단장, 송희연 인천대 교수(PM), 재정경제부·수출입은행·KDI 실무자로 구성되었으며 Nguyen Bich Dat 투자기획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PI) 차관, Ngo Doan Vinh 개발전략연구소(Development Strategy Institute: DSI) 원장과 연구진, 재무부 차관, Dinh Van An 중앙경제연구소(Central Institute for Economic Management: CIEM) 원장, Le Danh Vinh 무역부 차관, 유태현 주베트남 한국 대사, Do Hoai Nam 사회과학원 원장 등과 면담하였다.

18) 3월 11일에서 16일까지 수행된 우즈벱 수요조사에는 이경훈 서울대 교수(단장), 이영기 KDI School 교수(PM), 허 승 前 주 제네바 대사, 정경제부·수출입은행·KDI 실무자가 참여하였으며 사마르칸트주 경제부지사, 문하영 주 우즈벱 한국대사, 현지 진출기업인, Mr. Ahmedov 경제정책센터(CEEP) 소장 및 연구진, World Bank 및 EBRD 주재소장, Mrs.

2005년 초 대통령이 국회에서 제시한 ① 경제자유화 및 시장경제체제 전환과 국민소득 향상, ② 국가재산 사유화 문제, ③ 중소기업활동 활성화(농업에서 산업으로), ④ 은행제도 개혁 문제, ⑤ 조세제도 개혁(세금축소방안 등) 등의 연구와 ⑥현재 진행 중인 WTO가입 후의 영향 및 효과 등에 대한 연구로 요약된다. 이와 더불어 CEEP는 한국개발경험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과 연구기관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요청하였다.

5. 국별 사업계획서 확정¹⁹⁾ 및 MOU체결

가. 과제선정의 기준

국별 사업과제는 수요조사에 나타난 대상국의 정책우선순위(priority list)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의 명료성, 사업기대효과, 전문가 확보 가능성, 가용예산, 장단기 과제간의 조화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었다.

사업과제 선정은 수요조사의 결과 이외에도 ① 정상회담 등에서 정부간 합의된 사항, ② 교역·해외투자 증대 등 대외협력 잠재력이 높은 부문, ③ 대상국 종합개발계획 기여도 등을 감안한 경제정책 전반 자문사업, ④ 기타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높고 기대효과가 큰 사업 등의 측면을 고려하였다.

나. 베트남 사업의 주제와 주요활동

베트남은 한국, 국제기구 등과 다양한 지식교류사업을 수행해 온 바, 현지 수요에 따른 우리 개발경험의 구체적 사례 제시에 초점을 두고 개방경제체제하에서의 주요 정책과제와 대응방안²⁰⁾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였다.

분야별 연구과제로는 ① WTO가입 준비 및 대응, ② 공기업 민영화 및 운영

Saidova 경제부 제1차관, Mr. Najimov 대외경제부 장관과 면담하였다.

19) 2005. 4. 19 제3차 사업심의회위원회를 통해 수요조사 결과의 보고와 사업추진계획을 확정한다. 바 있다.

20) 영문명은 Major Policy Agenda and Policy Responses toward a Globalized Market Economy이다.

효율화를 핵심으로 하고 상기 국제경쟁력 제고정책을 뒷받침하는 기초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③ 거시경제 안정화, ④ 인적자원개발전략, ⑤ 국내외 재원조달 정책, ⑥ 수출금융 정책으로 구성하여 약 5개월간의 정책연구를 수행²¹⁾하였다.

주요 활동으로는 세부실태조사(pilot study), 면담조사 및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의 정책연구활동과 더불어 두차례의 연수, 정책대화(policy dialogue) 및 사업결과전파세미나로 구성된 정책자문 사업을 수행하였다.

다. 우즈베키스탄 사업의 주제와 주요활동

우즈베크 측은 다양한 관심사항 중 정책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우즈베크의 제조업 육성 및 수출촉진 방안에 대한 정책방안 연구²²⁾와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전파를 위한 자문사업을 요청하였다. 이에 한국측은 ① 제조업 발전을 촉진하고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② 통상진흥 및 시장개방 정책에 부합하는 ③ 조세정책, ④ 금융정책과 거시경제 운용과 ④ 효과적인 체제전환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핵심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약 5개월간의 정책연구를 수행²³⁾하였다.

주요활동으로는 세부실태조사(pilot study), 면담조사 및 중간보고회, 1차 정책실무자연수, 최종보고회 및 2차 정책실무자연수, 사업결과전파세미나, 정책대화(policy dialogue)로 구성되었다.

라. MOU체결

21) Project Manager인 송희연 인천대학교 교수 아래 분야별 연구진으로 WTO 가입분야는 이재민 한양대학교 교수, 공기업 분야는 강신일 한성대학교 교수, 거시경제 분야는 백용기 상명대학교 교수, 인적자원개발 분야는 이종훈 명지대학교 교수, 재원조달 분야는 손승호 수출입은행 부부장, 수출금융정책 분야는 안응호 수출입은행 부장이 각각 담당하였다.

22) 영문명은 Strategy of Developing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Export Promotion Policy of Uzbekistan이다.

23) Project Manager인 이영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아래 분야별 연구진으로 체제전환전략은 고일동 KDI 선임연구위원, 산업정책은 김도훈 KIET 선임연구위원, 조세·재정 정책은 유일호 KDI School 교수, 거시·금융 정책은 박원암 홍익대 교수, WTO 가입·통상 정책은 안덕근 KDI School교수가 각각 담당하였다.

현지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현지 기관 및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성과를 제고하고자 KDI와 대상국 카운터파트기관인 베트남 개발전략연구소, 우즈베크 경제정책센터 간 협력합의서를 체결하고²⁴⁾ 주요내용으로는 사업기간, 사업주제 및 분야, 추진 계획, 현지 활동 수행에 대한 KDI와 카운트파트기관간의 역할분담, 현지 연구진들의 참여와 역할, 의견조정절차 등을 담았다.

24) 2건의 MOU 모두 2005년 5월 12일 체결하였으며, 특히 우즈베키스탄 CEEP와의 MOU는 2005년 5월 12일~14일간 노무현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방문 기간 중 체결되어 동 방문시 체결된 양국간 주요 협정목록에 포함되었다.

제3장 연구 및 자문활동

1. 세부실태조사와 분야별 연구계획서 작성

선정된 분야별 연구진들이 세부실태조사(pilot study)를 통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경제현황 및 정책자료 파악, 정책우선순위, 주요 이슈, 주변정책과의 연계성, 사업의 파급효과, 장애요인 등을 분석하고 현지전문가를 확정하였다.

베트남²⁵⁾ 및 우즈베키스탄²⁶⁾ 국별 연구진들은 연구과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정하기 위해 현지 정부 및 관련기관, 카운터파트기관, 연구기관 등의 경제전문가를 면담하여 각 분야별 정책현황을 조사하고 개발정책과제를 파악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각 연구진들은 중간보고서 초안의 성격인 분야별 사업활동계획서(action plan)를 작성하고 중간보고회의 발표 자료를 준비하였다.

2. 중간보고회 및 면담조사 실시²⁷⁾

현지 카운터파트 연구진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여 보다 정확한 정책과제를 파악하고 반영하는 기회를 마련하였

25) 베트남은 2005년 5월 4일에서 6월 9일에 걸쳐 각 연구진들이 개별적으로 총 4회의 조사를 수행했으며 재무부, MPI, CIEM, 통계국, 개발협력기금, State Bank, 노동부, 직업훈련부, 농업부,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ies, 법무부 등을 방문 조사하였다.

26) 2005년 5월 13일~21일간 수행된 우즈베키스탄 세부실태조사는 PM이하 연구진들과 KDI 실무자로 구성되었으며, 우즈대우 및 대우텍스타일, 경제정책센터(CEEP), Agency for Foreign Economic Relations, Ministry of Economy, State Tax Committee, State Customs Committee, Ministry of Finance, Central Bank of Uzbekistan, National Bank of Foreign Economic Activity, IBRD 및 ADB 주재소, Association of Cotton Industry, Chamber of Commerce, State Statistics Committee, Uzbekinvest Insure Company 등을 방문 조사하였다.

27) 베트남 중간보고회는 2005년 6월 30일에서 7월 1일간 현지에서 개최되었으며 단장 및 PM 이하 연구진 등 총 10명과 현지 전문가 52인이 참여하였으며 우즈베크 현지 중간보고회는 2005년 7월 2일~3일간 개최되었고 PM이하 연구진 등 총 7명과 현지 전문가 27인이 참여하였다.

으며 기관방문 등을 통해 추가 자료의 확보와 정책수요를 조사하였다.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의 특성 상 정확한 정책정보 및 통계 입수의 한계가 있으나 중간보고회를 통해 정책실무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조장하여 분석된 정책 및 통계에 대한 검증과 보완의 기회를 가졌다. 특히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에 대한 현지 관련자와 한국전문가 간의 견해 차이를 좁히고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는 기회가 되었다.

베트남 중간보고회는 현지 각 분야 공무원 및 전문가 52인이 참석하여 적극적인 질문과 통계자료 비교 및 한국개발경험을 최종보고서에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추가 세부실태조사는 각 연구진별로 관련분야 무역부, 기획투자부, CIEM, 통계국, 노동부 등을 방문하여 추가적인 정보 수집과 관련 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검증하고 보완하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우즈벡 중간보고회에서는 현지 연구진과 경제부 관료, 금융전문가, 조세 및 관세 전문가, 산업담당 관료, 관련분야 연구원 등 총 27명의 현지 관련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의 산업발전 경험, 특히 그 중 어떤 면을 실제로 현지 경제단계에 응용할 수 있는지에 가장 관심을 보였다. 또한 추가 방문조사로써 1차 조사 방문기관들과 섬유업체, 농기계업체 등을 방문하여 추가로 현지 상황을 조사하였다.

3. 최종보고회

동 사업의 정책연구를 지원한 현지 연구진과 중간보고회에 참여한 관련 전문가를 서울로 초청하여 한국전문가들의 정책권고서 마무리를 위한 발표와 토론을 실시하였다.

베트남 최종보고회는 현지 연구진을 위주로 전문가 9인을 초청하였으며 KDI, 수출입은행, 재정부 방문, 한국경제특강을 통해 한국경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는 관련 분야 전문가 13인을 서울로 초청하여 최종보고회를 실시하고 한국의 경제개발5개년계획, 발전전략, 수출자유지역 및 수출진흥정책 등에 관한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 정책권고안을 출판하기 전 양국간 연구진 및 전문가들의 의견교환 기회를 다시 한번 갖게 되었으며 이는 일방적인 한국 연구진의 권고안이 아니라 수혜국의 의견을 반영하고 자료의 객관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결과가 되어 사업에 대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양국의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

4. 자문 활동

가. 1차 정책실무자연수

수요조사 시 베트남 재무부의 수출입은행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지원 요청을 수용하여 재무부 직원 등 관련 공무원 8명을 초청하고 수출입은행 업무에 대한 연수²⁸⁾를 실시하였다. 동 연수에서는 한국의 수출금융지원제도, 수출입은행의 업무, 금융사유품, 자금조달, 리스크 관리 등에 노하우를 전수하였다.

우즈베키스탄도 수요조사 시 요청한 연구기관의 운영 및 역량강화에 대한 자문을 요청한 바 있으며, CEEP 자체적으로 9월초 우즈베크 정부에 보고를 준비 중인 산업개발 관련 정책연구를 보완하길 희망하여, 경제정책센터(CEEP) 연구진 및 정부 관료를 초청하여 1차 정책실무자연수를 조기에 실시²⁹⁾하였다.

나. 2차 정책실무자연수

베트남 정책실무자연수는 DSI 연구진 이외의 각 관련 부처 과장급 이하 실무담당 공무원을 초청하여 연구진의 연구결과 및 한국의 개발경험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결과를 현지 정책에 반영하고 활용하는 기회³⁰⁾로 삼았다.

28) 동 연수는 전문기관인 수출입은행에 위탁하여 2005년 5월 10일에서 16일간 실시하였으며 재무부 부국장 이하 총 8인의 수출입은행 설립 담당자가 참가하였다.

29) 2005년 7월 20일 - 7월 26일간 실시된 동 연수는 연구진간의 정책세미나, KDI, KIET 및 재경부, 산자부, 수출입은행 방문토론, 산업공단 시찰로 구성되었으며 경제정책센터 소장 등 5인의 연구원과 관료가 참여하였다.

30) 2005년 10월 4일 - 10월 8일간 실시된 동 연수는 연구진간의 연구보고 세미나, 재경부, KOTRA 및 수출입은행 방문토론, 산업공단 시찰, 양국간 경제협력전략 세미나,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 특강으로 구성되었으며 DSI연구진 및 경제부 공무원 등 15명이 참여하였다.

우즈벡의 2차 정책실무자연수는 최종보고서와 연달아 서울에서 이루어 졌으며 관련 연구진은 물론 정부관료, 민간단체 인사를 초청하여 최종보고회에서 깊게 논의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 산업 및 수출전략을 전수하는 기회³¹⁾가 되었다.

다. 정책대화

고위인사 및 관계기관 책임자를 대상으로 사업결과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 및 정책입안 가능성의 제고, 폭넓은 한국의 개발경험에 대한 현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책대화를 실시하였다.

베트남에서는 재무부 장관 면담을 비롯하여 기획투자부, 무역투자부, 법무부, 호치민 인민위원회 등 총 10개의 기관을 방문하여 고위급을 대상으로 정책자문을 실시³²⁾하였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1차로 경제부 산업담당 차관 및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자문을 하였는데 특히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관심을 보여 해당 분야에 대한 강의를 별도로 실시³³⁾하였다. 12월에는 한국의 과거 경제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 경험에 대한 2차 정책자문을 실시하여 사업결과를 적극 이용하고 고위층과의 대화를 통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31) 2005년 9월 7일 - 9월 13일간 실시된 우즈벡 실무자 연수는 연구분야에 대한 보완 토론, 한국의 경제계획수립 및 실천경험, 경제자유지역 특강, 재경부 및 KOTRA 방문 및 토론회,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시찰로 구성되었으며 총 13명이 참여하였다.

32) 2005년 10월 25일 - 10월 27일간 실시된 정책대화에서는 최종찬 단장 이하 PM 및 전체 연구진이 참여 하여 부문별로 활발한 자문활동을 벌였다.

33) 우즈벡 1차 정책대화는 전파세미나 다음날인 2005년 10월 4일 실시되었으며 김도훈 박사의 중소기업 발전방안에 대한 특강이 30여명의 국책 연구원들이 모인 가운데 별도로 실시되었다.

제4장 사업결과 공유 및 평가

1. 사업결과 공유

사업결과의 활용, 홍보, 한국의 이미지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학계, 재계, 언론계 및 국제기구 등 다수의 여론지도층 인사를 초청하여 사업대상국 현지에서 사업결과전파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베트남에서는 각 연구주제 관련 부처 공무원 및 국제기구 등 전문가 100여 명이 참가 하였으며 베트남 현지인들의 관심이 높았다³⁴⁾. 또한, 베트남 국영 방송에 전파세미나 개최가 방송되고 일간신문에도 WTO 관련 연구결과 및 연구진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경제부 및 재무부 공무원, 국회의원, 세계은행, 국영 및 민영 기업 인사 및 연구위원 등 현지인 총 51명이 참석하였으며 국영 라디오 채널에서 연구책임자를 인터뷰하였고 현지 경제부는 정책권고안에 따른 후속조치에 한국이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 하였다³⁵⁾.

양국 모두 사업전파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에 관하여 더욱 깊이 알고자하였으며 세미나에서 언급된 각종 전략의 실천방안에 대하여 향후 한국에서 교육 및 연수기회 등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동 사업의 국영문 결과보고서는 외교부, KOICA, KOTRA, 수출입은행 등 국내외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정부기관의 대외경제협력정책, 국제협력사업, 국내기업의 진출,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지 진출 및 투자 희망업체와도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결과물인 정책권고서를 국내뿐 아니라 현지 진출기업인, 현지 부처 등 각 기관, 국제기구에 배포하여 사업결과가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특히, 영문보고서인 정책권고서는 현지어로도 번역하

34) 베트남 전파세미나는 10월 24일, 하노이 Melia Hotel 회의실에서 실시되었다.

35) 우즈베크 전파세미나는 10월 3일, 타슈켄트 셰라톤 호텔 회의실에서 실시되었다.

여 배포하여 수원국내에서의 사업결과의 지속적인 전파 및 활용에 기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진행과정의 중간 모니터링은 파견전문가의 활동과 수원국의 사업담당자들과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수행되었고 중장기사업인 만큼 기간 중 각종 보고회 및 연수 등 단계별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연구기관 종료 즈음에 실시한 현지 및 국내연구진 대상 설문지 평가를 통하여 향후 사업의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받고 지난 사업 활동들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기회로 삼았다.

2. 베트남 지식공유사업의 시사점

금번 베트남 경제발전을 위한 지식공유사업의 연구진 8명은 한국경제발전에 실무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있을 뿐 아니라 수차례 현지 조사를 통해 베트남 현실을 상당히 파악하였으므로 양국의 지식 갭을 좁혀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공유사업은 앞으로 계속되는 것이 양국 간 이해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 중요한 사항은 이번 지식공유사업에 대하여 수원국인 베트남정부의 실무 정책입안자들은 물론 정부 고위지도자들까지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한국의 경험과 사례를 깊이 있게 이해함으로써 향후 베트남 경제정책의 입안과 실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다.

베트남 WTO가입과 관련하여 가입전의 준비사항과 가입 후의 대책방안을 한국의 경험과 중국의 경우를 바탕으로 상세히 제시해줌으로써 통상에 경험이 부족한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WTO가입 후에도 한국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도움을 필요로 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기업 개혁방안 역시 베트남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한국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공기업 경영혁신과 민영화를 이룩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하여 한국의 구체적인 민영화 사례와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를 소개했기 때문이다.

한국 거시경제 운영에 있어서 성장일변도의 성과도 크지만 대내외 불균형성

장 즉 물가불안과 국제수지 악화와 방만한 경제운영이 외환위기를 초래했다는 경험을 베트남 거시경제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며, 베트남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는 고용창출을 통한 빈곤 감소에 역점을 둠으로써 도농 간의 소득격차를 줄여 가는데 한국의 사례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세계화, 정보화, 지식기반 경제화의 빠른 진행에 대비한 미국의 인적자원 개발 사례 역시 장래의 베트남경제를 주도하게 될 지식기반 산업 발전을 위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베트남 경제개발에 있어 외국인직접투자가 석유 및 가스, 통신, 화학, 전기, 자동차 등의 자본집약, 중화학 제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기술이전 효과가 크지 못하여 고용효과 역시 미미하다. 그 이유는 FDI 대상인 대형공기업들이 선진기술의 수용태세가 미흡했고 자본집약 제조업 위주였기 때문이다. 대형공기업의 경영합리화와 고급두뇌 인력의 양성과 영입으로 FDI를 통한 선진 경영 및 생산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이 시급하다. 특히, 수출주도 성장전략을 택하고 있는 베트남의 수출지원 금융제도가 아주 취약하며 수출보험제도 역시 빈약하다. 수출신용기관(ECA)에 의한 수출신용, 수출보험, 대출 등의 공적지원 제도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지식공유사업이 요망된다.

또한 WTO 가입을 앞두고 있는 베트남 정부는 WTO 가입 이후의 국제경쟁 체제하에서의 베트남의 장기적 번영을 위하여 FDI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률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으로서는 아직 많은 분야에 있어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WTO 가입 관련하여 통상전문가를 양성하고 또한 수출입은행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선진국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교육 등 국내외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예시로서 베트남의 경우 WTO 전문가 과정, 수출입은행 설립을 위한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동 연구결과 우리의 진출분야로는 첫째 부족한 각종 사회간접자본 형성에 대한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도로, 항만, 통신, 교육 및 인력양성 분야는 베트남정부의 역점 분야이므로 우리의 개발경험과 국제금융동원 능력을

발휘한다면 사회간접자본 분야의 진출전망이 밝다고 본다. 둘째는 베트남 각종 제조업과 천연자원개발 부문의 진출가능성이 매우 밝다. 우리의 기술노동 집약 산업, IT관련 지식기반 산업, 그리고 우리나라가 부족한 에너지산업과 농업분야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협력여지가 크다고 전망된다.

또한, 베트남의 공기업 민영화 분야의 연구결과와 정책제안, SOC 투자계획 및 기초자료 등을 KOTRA, 수출입은행 등 우리의 관련기관과 공유하여 공기업 민영화 또는 SOC 투자에 우리의 민관 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베트남은 거대 중국과 국경하고 있으면서 수천년을 중국과 투쟁했으며 미국과의 전쟁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은 국가이다. 현재는 지리적으로 ASEAN의 신흥회원국이지만 최근과 같은 성장이 계속된다면 동남아의 맹주국가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나라이다. 또한 역사와 문화적으로는 동북아문화권으로써 오히려 중국, 한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과 더 가까운 면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국력이 허락하는 한 보다 적극적인 유무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국가이다. 앞으로의 양국 협력강화를 위해 고급두뇌인력 양성을 위한 장기 교육원조와 단기 공직자의 방한훈련이 필요하다. 장기교육원조로는 우수한 고졸인재와 대졸인재를 한국으로 유학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에너지 등 천연자원 개발 분야와 농촌발전을 위한 유무상지원이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는 필요한 분야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베트남 지식공유사업에 대한 후속 사업이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수원국의 필요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된다면 실천가능한 대안과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마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베트남 모든 참여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지식공유사업을 수혜국인 베트남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 공여국인 한국의 주요 지식인들이 베트남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또한 베트남의 지식인들과의 우호와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양국 간의 협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데도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밝혀 둔다. 끝으로 연구 분야는 수혜국이 원하는 분야가 바람직 할 것이며 현지 정책입안자와 국책연구원들의 참여는 물론 국제기구 전문가들의 참여도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허락한다면 한국의 전문가를 일정기간 베트남에 파견하여 자문케 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3. 우즈베키스탄 지식공유 사업의 시사점

이번 사업 주제 “Industrial Development and Export Promotion Policies for Uzbekistan”은 현재 경제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우즈베크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분야로 선정되었다. 또한 지금까지의 다른 단기 사업과는 달리 제조업과 수출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산업 및 무역 정책 뿐만 아니라 조세, 재정, 금융, 거시는 물론 WTO 정책까지 포괄하는 여러 전문분야에 걸친 연구와 자문을 수행하여 현지 정책 담당자들에게 종합적인 경제운용 시각과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 결과 현지 참여자들이 보고서 내용에서 뿐만 아니라 연구진행과정에서의 양국 전문가들의 토론 및 한국에서의 연수와 산업시찰, 관련 부처 방문토론 등을 통하여 한국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의 섬유산업 및 자동차 산업에 대한 과거 경험 및 전략과 수출자유지역 등 수출산업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다만 연구와 관련된 통계의 확보에 어려움이 커서 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에 생산된 통계 자체의 양이 매우 적고, 제공된 통계도 기준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유용성이 적으며, 정부가 가진 통계를 보안 상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다. 또한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우리의 연구보고서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할 지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 및 통제와 각종 규제, 열악한 사업 환경, 만연한 부패 등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까지는 민간기업의 활발한 진출이 어려웠던 것이 현지 한국 사업가의 일반적인 평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한계에 이를 것이며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자원과 우수인력, 국내외 잠재시장의 확대 등 발전 잠재력을 고려할 때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한국을 중요 협력국가로 인식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점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섬유, 의복, 자동차 및 기계부품 산업, 그 외에 다양한 경공업 제품에 대한 국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 분야에 대한 한국의 기본기술, 자본

및 경영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상호 도움이 되는 협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자 파견 및 노후 기계설비의 이전, 경영 노하우 전수 등에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발전 정책 수립 등을 위한 정부의 Think Tank 육성 방안 지원, 시장경제 교육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개발전략이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우즈베키스탄 공무원이나 일반인을 한국에 초청하여 중장기 교육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약간의 물자를 지원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우즈베키스탄의 사업 환경이 열악하므로 우리 정부는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관계 약정을 통해 한국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처우를 제공하고 일정기간 보장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공업단지나 수출자유지역 설립 시 한국기업을 우대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지식공유사업을 통해 한국이 얻을 수 있었던 부수적인 소득은 체제전환국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북한 다음으로 폐쇄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른 CIS 국가보다 사회주의 체제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을 통해 얻은 경험은 앞으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가시화되고 북한의 체제전환을 지원할 수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정보와 지식이 될 것이다. 더구나 현재 우즈베크 정부는 소련의 WTO가입에 따른 우즈베크의 WTO가입 역시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잠재시장 의 하나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우즈베크에 진출한 외국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금융의 불투명성 및 비효율이므로 수출입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의 노하우를 전수하여 그로인해 금융 및 외국인 투자에 관한 체제가 개선된다면 향후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4. 경제협력을 위한 제언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중요한 개발원조사업의 공여국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총 원조규모, 1인당 원조액수의 절대부족³⁶⁾에도

36) 우리 ODA규모는 2004년 4억불이고 ODA/GNI가 0.06%로서 경제규모가 유사한 네덜란드(0.74%), 스

불구하고 과거에는 우리의 성공적인 수원경험으로서, 2000년대에는 기술원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점에서 매우 유용하고 실용적인 개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ODA 규모의 획기적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무역의존도 및 개방화의 심화, 국제사회의 우리의 역할에 대한 기대 등에 비추어 우리의 개발경험, 정보통신 산업,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의 확보차원에서도 필수적인 사항이다. 더불어 최근 정부가 마련 중인 ODA 현장의 제정, 국제사회의 지식협력사업의 중요성 공표 등 국내외의 흐름에 따라 개발원조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금번의 지식공유사업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 원조사업의 주요 과제 중 기술협력사업의 과제에 해당되는 측면에서 동 사업이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사업계획의 단기성, 구체적인 추진전략의 부재 측면이다. 특히 개도국, 특히 체제전환국의 경제정책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속성 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국제기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수원국의 소화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권고를 실시하고 있는 형편이다.³⁷⁾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사업에서는 기존의 사전 기초연구가 없는 일회성 전문가파견사업과는 달리 단계별 조사활동과 보고회를 포함한 약 5개월간의 경제종합연구를 실시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통합적 접근(integrated approach)을 수행하여 적절한 정책권고서 마련에 중점을 두고자 한 바 있다.

둘째, 수요자 및 성과중심의 사업기획의 측면이다. 이 또한 성과를 중시하는 측면에서 수요조사에서부터 사업결과전파세미나까지 약 8개월에 걸쳐 카운터파트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단계별 활동에서의 과제별 수요까지도 반영코자 하였다.³⁸⁾ 특히 정책자문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방식과 대상

페인(0.26%), 호주(0.25%)의 1/4-1/12에 불과하며 소득수준이 유사한 그리스(0.23%), 포르투갈(0.63%), 뉴질랜드(0.23%)의 1/4-1/10로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37)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여러 국제기구 및 선진국에서 다양한 경제사회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방적이고 전방위적인 개혁 요구를 하고 있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러한 외부의 개방요구 및 컨설팅 결과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시급한 산업육성 및 수출촉진에 초점을 두고 동반되는 각 분야의 정책지원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우리의 경험을 위주로 한 객관적인 경험의 전달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화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38)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공히 WTO가입과 그에 따른 전반의 정책조정이 불가피한 시점과 맞물려 매우

으로 전달되는지가 매우 중요하고, 제도적 개혁과 관련된 내용들은 수원국 파트너 연구기관이나 해당국의 전문가 및 시민들의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이들의 실천의지가 높아짐에 따라 동 사업에서는 정책실무자연수, 정책대화(policy dialogue), 사업결과전파세미나 등 다양한 대상과 방식의 정책자문 수단들을 동원하여 종합적인 프로그램(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종합적, 통합적 기술협력사업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동 사업의 기타성과와 우리 개발협력사업의 성과 및 체계화 제고를 위한 제언 측면에서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관련 전문가 간, 연구진간 다수의 회의를 통해 우리의 비교우위와 수요를 폭넓게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점과 전문가의 선정과정을 통해 인적자원의 체계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히 체감한 점으로 이러한 과정은 우리 전문가 및 개발협력사업의 체계화 작업에 있어서도 시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기초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이는 과거 10여 년간의 개발협력사업들이 산발적으로 실시되고 결과의 축적 및 공유의 체계화가 미비한 점에 기인한다. 이에 동 사업 차원에서 사업결과 뿐 아니라 확보된 기초 자료들의 공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산재되고 업데이트가 미비한 국내 대외협력사업, 지역연구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 개발협력사업 간의 연계 및 민간부문의 진출을 지원하는 측면에서의 기여이다. 현재 국내 기관별 대외협력사업간 정보공유가 미진하여 관련 사업의 기획이나 추진 중에 여타 사업을 참조하거나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동 사업 및 유사사업의 수요조사 시 지속적인 자문, 기자재 지원, 특히 국가간 인적 네트워크에서 핵심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장기연수생의 수용 등 다양한 요청 등이 있었으나 여전히 이를 개별 기관 또는 개별 사업 차원에서 수용하기는 예산상, 사업성격상, 사업기간 상 어려움이 상존한다. 따라서 동 사업결과를 사업주최기관인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통해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우리의 개발협력사업간 시너지 효과와 중복 방지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한국의 구체적인 사례와 정책제안을 요청하여 이에 따라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활동 단계별로 관련 부처와 현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반면에 지식공유사업의 신규 추진 시에도 별도의 수요조사 및 대상국 선정을 지양하고 우선적으로 유·무상 원조의 대표기관인 KOICA와 수출입은행의 수요조사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계가 구축되고 지식협력사업의 주요 수행기관인 KDI, 정보통신부 등이 활용하는 체계가 이상적일 것이며 이러한 사전조사 및 사후결과의 공유는 전문인력과 경험이 충분한 자산관리기관, 신용보증 기관, 수출지원 기관, IT 시스템 구축 기관 등이 전문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이는 개발협력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함은 물론 후속 과제와 수행기관의 선정, 과제의 활용수단이 선순환 되는 전략적인 개발협력사업 시스템의 구축에 모델이 될 것이다.

더불어 그 동안의 개발협력사업들이 우리 민간의 활용측면에서 소홀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동 사업에서는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대상국 경제정책과제를 파악하고, 정책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요조사 및 세부실태조사 등에서 우리 진출기업인들의 애로사항들과 관련 정책들을 파악한 바 있었다. 이를 통해 동 사업에서는 객관적이고 실무적, 실천적인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둔 바 있으며 이는 사업과정에서 파악된 우리 민간의 요구사항들을 간접적으로나마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대상국의 실질적인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대외협력사업의 기본 목적은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수원국 정책결정에 우리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동 사업은 약 1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정책담당자 뿐 아니라 고위직과의 면담, 지식인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결과전파세미나를 통해 동 사업의 목적 및 정책제안에 대한 우리의 고민과 노력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우리만의 개발경험을 기초로 구성된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국제 개발협력사업의 무대에서 우리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사업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물론, 수출입은행 등의 관련기관, 국별 참여전문가들이 무한한 확대가능성과 부가가치를 보유한 경제개발컨설팅사업의 경험을 축적하는데 유일하고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부

베트남의 개방경제체제하에서의 주요정책과제와 대응방안

제1장	베트남 경제현황과 주요 정책과제	73
제2장	베트남 공기업 개혁과제	79
제3장	세계 무역 체제로의 통합: WTO 가입을 위한 베트남의 준비 현황 및 현안 과제	97
제4장	베트남의 인적자원개발 전략	114
제5장	베트남의 거시경제안정화	133
제6장	베트남의 외자조달 방안(외국인직접투자를 중심으로)	154
제7장	수출지원금융정책 및 베트남 수출입은행 설립방안	180

제1장 베트남 경제현황과 주요 정책과제

1. 경제현황

가. 일반현황³⁹⁾

베트남(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은 인도차이나 동부에 위치한 국가로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와 접경을 이루고 있는 사회주의공화국이며 인구는 약 8천만(하노이 284만, 호치민 538만)이며, 베트남어를 사용하며 다민족국가이다. 국토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으며 석탄, 석유, 철광석 등의 지하자원이 풍부함. 기후는 북쪽은 아열대성이고 남쪽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열대성 기후이며 종교는 대부분이 소승불교를 믿고 있음. 베트남은 외형적으로 모든 종족들을 통합하여 하나로 묶는 민족통합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회주의공화제를 국체로 하고 있는 베트남은 국가주석이 국가원수로서 대내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있으며 총리는 임기 5년으로 국가주석의 추천으로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되고 각료는 24명으로 17개 부 및 7개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경제현황

베트남은 농업중심의 중앙계획경제체제로 산업화를 추진하는 비교적 성공적인 구 사회주의국가이며 1975년 베트남 전쟁 이후 비효율적이고 부패한 관료들이 추진한 경직된 농업집단화와 국영화 정책으로 인해 경제재건에 어려움이 있다. 1986년의 도이모이정책⁴⁰⁾ 이후 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Socialist-Oriented Market Economy)를 공식화하는 등 급속한 경제성장을 실현, 지속적인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39)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웹사이트와 미 중앙정보국(www.cia.gov) 베트남 국별 개황자료를 요약 정리하였다.

40) 베트남 도이모이(Doi Moi)정책은 혁신(Renovation)이란 뜻으로 이 정책 실시 후 생산력 증가, 생활수준 향상 등 성장잠재력과 자신감을 확보하고 역동적 경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현재 아시아국가 중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베트남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2003년 약 7.24%의 경제성장률을 실현하였고, 2003년에는 전년 대비 18.8%의 경제성장률을 보여 동남아 외환위기 이전의 성장추세를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2003년 수입이 전년동기 26.7% 증가하는 250억불로서 수출 증가율을 초과하는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2001년도 전체 적자 11억불보다 대폭 확대된 30억불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2003년도에도 약 51억불의 적자를 내고 있다. 이는 베트남의 원부자재 및 부품·소재 산업의 취약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수출이 확대될수록 수입도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외국인투자는 2002년도에는 전년 대비 65% 감소한 14.3억불에 그쳤으나 2003년에는 746건 18.5억불로 증가하여 다소 회복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수요의 회복, 높은 산업생산 증가, FDI 자금의 유입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며 산업별 성장을 감안 시 제조업 및 건설업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베트남의 산업생산은 2003년 기준 전년 대비 약 16% 증가한 것으로 베트남 통계청이 밝히고 있으며, 특히 민간기업들의 생산성 증가가 18.7%, 외국인 투자기업의 생산성 증가가 18.3%로 산업생산을 주도하였음. 베트남은 산업생산 증가와 외국인직접투자 증가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⁴¹⁾

〈표 2-1-1〉 베트남 주요경제지표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GNP 성장률(%)	4.8	6.8	6.8	7.1	7.3	7.7
산업생산증가율(%)	11.5	10.1	10.2	14	16	N.A.
인플레이율(%)	4.1	-1.7	0.8	4.0	3.0	9.5
실업률(%)	7.4	6.4	N.A	N.A	5.8	N.A.
환율(대달러화)	13,922	14,500	15,425	15,365	15,514	15,740
수출(억불)	115.2	144.5	150.3	167.2	198.7	260.0
수입(억불)	116.3	156.4	161.6	197.3	249.5	315.0
무역수지(억불)	1.1	-11.9	-11.3	-30.1	-50.8	-55.0
경상수지(억불)	1.3	0.2	-0.1	-0.6	-4.7	-4.4

자료: EIU; 베트남 통계청.

베트남의 농업기반 경제는 세계 두 번째의 식량 수출국으로 질적인 변모를 꾀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WTO에 가입하여 세계 경제체제속에 편입되

41) 외교통상부 주 베트남대사관 국별 개황자료를 참조하였다.

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고용현황은 96년과 2002년 사이 매년 백만 정도의 신규고용이 창출되었으며 01-04년을 기점으로서는 매년 150만정도의 신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 한국과의 관계

원유, 철광석 등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서 양질의 값싼 노동력을 보유한 커다란 성장잠재력을 가진 국가로 한국의 발전모델을 추구하는 전략적인 경제협력 대상국가이다. 북한과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핵문제, 미사일문제 등에 관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와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희망한다. 동국은 우리의 제25위 교역상대국이며 한국은 베트남의 제6위 대상국이다. 교역규모는 39억불(수출: 32억, 수입: 7억)로 전년대비 30% 증가하였고, ASEAN 국가 중 우리의 제1위 투자대상국이며 2003년 기준으로 싱가포르, 대만, 일본에 이어 제4위 투자국이다.

ODA 규모는 2004년까지 무상이 50백만불이며 EDCF 지원은 약 1.8억불로 중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에 이어 제4위를 차지한다. 경제위기 이전의 진출기업은 대우, LG, 포스코 등 대기업의 진출로 철강, 전자, 자동차 등 중공업 분야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최근 섬유, 신발 등 중소기업형 투자가 주류를 이룬다.

라. 주요 정책과제

베트남경제는 1986년 대외개방 및 대외개혁정책인 도이모이(Doi Moi)정책이래 아시아 금융위기였던 1998년을 제외하고는 6-7%의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반면, 물가는 비교적 안정되었고 국제수지적자 규모도 GDP의 4%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속되고 있다. 총 대외부채는 2004년 현재 GDP의 36.4%로 크게 줄어들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대외지불준비금은 2개월간의 수입액을 보유하고 있으나 적어도 3개월분이 바람직하다. 재정적자는 GDP의 4%선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베트남정부는 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하여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개발,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 WTO 가입, 복지의 향상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남베트남이 1975년에 완전 해방된 이후 베트남은 1976-80년에 제 2차 5개년 계획 시행하였다. 이 계획에 포함된 대부분의 목표는 수행되기 어려웠다.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4%, 인구증가율은 2.3%였으며 대규모의 재정적자와 물가는 20% 상승하였다. 게다가 많은 투자 계획은 미완인 채로 종료되었다. 제 3차 5개년 계획 (1981-85)은 당초부터 무리한 목표 설정으로 인하여 불균형이 유발되었고 위기에 봉착하였다. 생산이 침체되고 인플레이션은 1980년대 초 30-50%수준에서 1985년에는 587%, 1986년에는 775%로 폭등하였다. 이런 상황 하에서 베트남 공산당은 “도이모이”(개혁)를 진행하였다. 제 4차 5개년 계획 (1986-1990)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통화정책과 농업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각종 해법을 제시하였다. 제 4차 5개년 계획기간 중 GDP는 3.9% 상승하였다. 가장 큰 장애는 장기간 지속되었던 미국의 경제봉쇄 및 금수조치와 동구와 구소련의 심각한 경제위기 봉착이었다. 그러나 개혁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경제여건이 호전되었고, 개별경제주체들이 새로운 시장경제 메커니즘에 점차 적응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5년간 (2001-2005) 경제활동의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첫째, 빠른 경제성장이었다. 2001-2005년 동안 경제성장 예상치는 연 7.4%로 과거 5년보다 높다. 농림어업은 3.4%, 산업과 건설업은 10.2%, 서비스업은 6.9%의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둘째, 산업화와 현대화를 향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GDP 중 농림어업 비중은 2000년의 24.5%에서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20.4%와 19%로 축소된 반면 산업과 건설업은 2000년의 36.7%에서 2005년에는 42%로 상승될 것이다. 셋째, 거시경제의 안정화이다. 저축과 지출 균형이 개선되었다. 지출은 연 6.2%가 증가될 것이며, 1인당 소비는 연평균 6%가 증가될 것이다. 이 결과 국민생활수준의 대폭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저축은 경제개발을 위한 자본조달에 충분하게 되었다. 소비자물가는 2001년에 0.8%, 2002년에 4%, 2003년에 3%가 각각 상승하였으나 2004년에는 9.5% 상승하였고, 2005년에는 5%의 상승이 예상되어 5년간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4.5%로 예상된다. 자본투자율은 2001년 GDP의 34%에서 2005년 36.5%로 개선되었다. 넷째, 대외경제활동의 개선이다. 베트남은 국내 정치·사회의 안정과 더불어 ASEAN, WTO 등과의 국제경제관계가 강화되는 반면 수출입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발전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첫째, 성장의 질이 좋지 않다. 전통산업의 성장은 주로 저급기술과 생산요소의 투

입에 의존하고 있다. 거시경제정책의 불안정으로 공업제품, 농산물 및 서비스 생산비는 여전히 높다. 또한 노동생산성이 낮고 노동의 질이 아직은 저수준이다. 둘째, 경제의 구조조정이 계획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구조조정은 산업화, 현대화를 위한 필수 수단이다. 정책의 방향은 분명하나 추진 수단이 빈약하다. 셋째, 자원의 사용이 비효율적이다. 즉, 국가자산, 재정 및 기업재무가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넷째, 수출구조의 고도화를 필요로 한다. 중간재 수출비중이 높음으로 수출가격 전망이 좋지 않다. 다섯째, 교육 및 훈련의 질이 낮고 과학기술수준이 아주 낮은 수준이다. 끝으로 부패와 사회악이 여전히 난무하고 지방주민의 생활여건이 열악하여 도시와의 소득격차가 심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차기 5개년(2005-2010) 계획의 거시경제의 목표를 저개발 국가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고성장에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였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기술수준의 획기적 개선, 시장메커니즘의 구축, 경제발전과 사회문화발전의 연계, 교육, 훈련 및 인적자본의 형성,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 환경의 보호와 개선, 정치적 안정과 사회보장의 확립, 국가의 독립성과 주권의 확립 등이다. 따라서 베트남경제는 그 구조변화에 있어 극히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풍부한 인적자원과 천연자원을 적절히 활용하는 동시에 대미관계의 개선과 ASEAN 및 WTO의 가입을 통해 세계화와 지역화를 촉진하고 무역규모를 증대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룩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기 베트남경제의 현황과 전망을 고려할 때 우리의 대베트남 투자환경은 한마디로 밝다고 하겠다. 특히 베트남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은 양질의 저임노동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국민 기본 교육이 잘 시행되고 있으며,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열로 양질의 노동력 공급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둘째는 정치적 안정을 들 수 있다. 베트남의 정치체제는 총서기장, 총리, 대통령이 적절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공산당 일당 체제에 대한 반발 세력이 미약해 상당 기간동안 안정적인 정치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는 베트남이 석유, 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며, 넷째는 베트남경제의 빠른 성장과 비교적 안정된 물가이다. 따라서 베트남의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관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미정착, 미약한 법률체계 등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대베트남 시장 진출에 대한 유인 요인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야기되는 각종 정책과제들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한민국정부는 재정경제부와 KDI 정책대학원대학과 공동으로 베트남정부와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베트남의 정책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금번 지식공유사업 베트남연구원진은 8명으로 구성하여 다음 6가지 과제를 연구하여 정책대안을 건의하고자 한다. ① WTO가입을 위한 준비, ② 공기업의 개혁방안 ③ 거시경제정책의 개선④ 인적자원개발 ⑤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⑥ 수출금융과 수출은행 설립 등이다. 상기 6가지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는 것으로 서론을 끝내고자 한다.

제2장 베트남 공기업 개혁과제

1. 베트남 공기업 개혁의 진행과 과제

가. 베트남 공기업과 개혁 현황

베트남 공기업은 2003년도 베트남 GDP중 제조업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9.7%, 서비스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8.5%이다. 2005년 현재 대부분의 베트남 기업들은 공기업이고 국가 고정자본 형성에 75%를 기여하고 있고 국내투자의 20%, 국가 재정에 40%를 기여하고 있다. 아이스크림 가게부터 전력 가스등 network 산업에 이르기 까지 대부분이 공기업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표 2-2-1 참조)

대부분의 공기업은 중소기업으로 기업 평균 자기자본이 450억 VND(US\$ 300만\$) 정도이고 2003년도 전체 공기업의 40% 미만 정도만이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정도로 대부분의 공기업들의 수익이 저조한 상태이며 전체 조세 수입 중 9.2% 정도만 공기업부문이 기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높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 기술개발 저조, 낮은 생산성 등이 다른 나라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공기업에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기, 항공, 통신 등 주요한 산업에서는 시장점유율이 80%를 넘는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 대부분의 공기업도 과점체제이다.

1990년도에 베트남 공기업은 12,300개였으나 2005년 현재 equitization 및 구조조정을 통해 1,931개 정도 남아 있다. 대부분 공기업들이 해산, 정리, 통폐합, 매각 과정을 거쳤으며 대부분 대규모 집단 공기업(General Cooperation)으로 전환하였다.

2004년도 정부 및 공기업의 GDP 기여도는 38.33%이며 이중 27.20%가 공기업에 의해 주도 되고 있고 민간부문의 기여도는 47.67%, 외국기업의 기여도는 14.0%이다. 베트남의 기업형태는 정부 또는 지방정부 운영 기업, 공기업, 민간기업, 외국인 합작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2-1〉 베트남의 주요 산업별 공기업

산업	주요 기업 및 수	비고
농업	Agmex 등 15개	
회계 및 감리업	MSC 등 3	
항공	Vietnam air 등 3	
금융	EXIM 등 7개	
통신	Vietnam post and Telecom 등 5개	
건설	Vinaconex 등 3개	
문화	Vinafiolm 등 6개	
전기	Electricity of Vietnam 등 1개	
보험	Bao Viet 등 7개	
광물	Vunacoal 등 3개	
유전 및 가스	PetroVietnam 등 4개	
해물	Seaprodex 등 5개	
해운운송	Vianaline 등 8개	
기술	Fostecco 등 2개	
직물 및 의류	Garmex Saigon 등 7개	
관광	Hanoi Tourism 등 5개	
총계	84개	

〈표 2-2-2〉 소유구조에 따른 GDP 기여도

(단위 :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정부	38.5	38.40	38.31	38.33
공기업	27.53	27.29	27.15	27.20
민간기업	48.20	47.84	47.79	47.67
외국인 투자 기업	13.27	13.90	13.90	14.00

나. 정부의 역할

정부는 공공성, 국가 전략적인 이유, 사기업이 영위하지 못하는 업종유지, 규모의 경제가 있는 부문 등은 공기업형태를 유지하고 그 이외의 공기업의 경우 부분적 민영화(equitization)를 1986년 개방정책이후 20년간 실시하고 있다.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경계에 대한 논쟁이 아직도 매일 진행되고 있다. “사

회주의 목표를 지향하는 시장경제”의 방향에 대한 의미가 매우 모호하다. 규제, 민영화 판매지분의 매각에서 침해하게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의 실패부분에서만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시장경제와 함께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어 공기업들은 여전히 정부로부터의 보호이탈에 대한 우려가 크고 관주도 경제에 익숙해 있는 상태이다.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ance Corporation)의 연구에 의하면 베트남 민간 부문은 공공부문에 비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과도한 정부규제, 고세율, 및 공기업에 대한 차별적 특혜가 존재한다고 했다.

2. 민영화 정책의 논리와 한국 경험 사례

가. 세계 공기업 민영화 추세와 문제점

전 세계적으로 1977년부터 2001년까지 총 3,535개의 공기업이 민영화 되었다. 이로 인해 US 1조1270억\$의 총 매각수입이 발생하였으며 베트남의 경우 동기간 중 공기업 민영화 이후 US 170억\$의 매각수입을 올렸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100여개 국가에서 실시하였고 그 범위는 농업부터 제조업, 금융, 통신, 전력 network 산업까지 이르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 민영화는 자발적으로 일어나기보다는 외부압력 또는 환경변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일본, 한국도 그러하고 베트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적절한 경제상황에 따라 논의 및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매각하고 그 이후 여러 가지 보정장치 및 정책을 개발하여 만들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 불완전한 공기업 민영화를 하게 되었다.

세계적인 공기업 민영화 결과에 대한 공통적인 현상과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공기업 민영화는 선진국 GDP 구성에서 공기업부분의 비율을 1/2로 줄였지만 개발도상 국가들에서는 아직도 민영화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둘째로 민영화 된 기업들의 효율성측면에서 보면 생산성, 성장성에서 남아 있는 기존 공기업에 비해 매우 높다. 셋째로 공기업 민영화시 자본시장에서 공개 매각할 때 보통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사실은 오히려 매각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즉 매매차익을 많이

남긴다는 인식이 팽배되어 2차, 3차 매각 시에는 수요자가 많아졌다는 것이고 특히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국가들에게는 오히려 주식시장의 크기를 키워주는 방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민영화 시기, 방식 등은 나라마다 다르고 이는 정치상황, 경제상황, 제도적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나. 베트남 equitization

베트남 공기업 민영화는 일부매각을 하는 부분적 민영화이며 이들은 이를 equitization이라한다.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실험단계로 5개 공기업의 매각을 진행하였고 1996년 이후 대규모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민영화된 2242개 공기업을 보면 산업별로는 제조업(65.5%), 서비스업(28.7%), 농업·광공업(5.8%) 순이며 그 중 제조업 민영화가 가장 많았다. 민영화 기업들의 자본규모로 보면 50억 VND 미만(59.2%), 50억에서 100억 VND(22.3%), 100억 VND이상(18.5%)로 대기업 보다는 대부분 중소기업을 민영화하였다.

민영화 종류로는 일부매각(26%), 전체매각(15.5%), 일부매각과 주식 증자를 통한 일반매각(43.4%), 공기업을 상장하여 주식 증자를 통한 일반매각(15.1%) 방식이다. 전체매각(full privatization)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 민영화 기업들의 주요 대주주를 보면 여전히 정부, 지방정부, 또는 대규모 공기업집단(General Corporation)이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트남의 민영화는 속도가 느리고 실질적으로 계획보다 진행이 더디다. 2004년에는 927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계획했는데 실질적으로는 753개 공기업이 민영화 되었다.

〈표 2-2-3〉 민영화 계획 대비 추진실적

(단위 : 개)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총계
계획	710	651	636	927	2924
실적	212	205	164	753	1710(1999년 이전 376 포함)

출처: SCERD

민영화 추진의 지연과 SOE의 개혁의 걸림돌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2001년도에 주식시장을 열었고 2004도 현재 주식시장의 규모는 13조 VND이며 GDP 대비 2.4%이며 우리나라 75%, 미국 147%, 일본 101%에 비해 주식시장이 발달 되지 못하였다. 둘째로 최근 telecom 및 전력회사를 민영화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정부는 주요하고 전략적이고 시장가치가 있는 공기업은 민영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셋째로 계속되는 시장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되어 있다. 시장경제로 인해 일자리가 창출되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보다 훨씬 더 많은 수혜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로 공기업 경영자 및 근로자들은 공기업의 민간부분으로의 변화는 과거에 정부와의 연줄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여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다. 다섯째로 여러 주요 공기업의 M&A로 거대 공기업 집단의 출현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향후 민영화 계획은 없다. 여섯째로 민영화 대상기업의 가치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 전문 평가회사의 도움으로 가격산정에는 어려움이 없고 또한 다른 나라에서 실시한 분할매각을 통해 균형가격을 찾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일본의 NTT 사례). 일곱째로 민영화 이후 규제완화, 경쟁정책의 지속적인 연구 및 공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일반적인 접근에 불가하고 마지막으로 SOE의 민영화를 위한 전문가의 부족과 관료의 행정지연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인수합병, 해산절차를 거쳐 새로운 조직형태인 총 공사(General Corporation)화 되었다. 총 공사의 종업원의 규모는 전체 공기업 인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quitization을 통한 총 공사의 탄생도 부분적 민영화의 종류로 보여 진다면, 그리고 향후 지속적인 민영화가 이루어진다고 판단하면, 이러한 형태의 민영화도 하나의 시장경제의 과정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2004년 500개 민영화 기업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이익이 평균적으로 130% 증가하였고 평균적으로 13% 근로자가 신규 채용되었다.

다.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

한국의 공기업은 정부기업인 조달청, 양곡사업, 우편사업 등 3개가 있고 최근 공기업으로 전환된 철도 공사를 포함하여 정부투자기관이 13개가 있다.

〈표 2-2-4〉 공기업 현황 (1995, 2001년도)

공기업종류	기업 수	종업원 수	예산(U. S. M\$)
정부기업	4 (4)	72,238(73,583)	2,210(2,336)
정부투자기관	13(20)	59,113(161,694)	50,377(64,255)
정부출자기관	7(9)	53,977(47,762)	32,775(17,374)
정부투자기관 자회사	21(80)	15,847(65,741)	11,290(15,798)
합계	45(112)	185,328(348,780)	96,652(99,763)

주:()는 1995년도 자료임.

한국정부도 민영화 및 경영 효율성 증진제도 등을 통해 공기업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공기업유지로 인한 경제적 이득과 관료문제 등 조직의 경직성으로부터 오는 비용을 서로 비교하여 공기업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 공기업민영화는 1968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증진을 위한 제도로 정부투자기관 경영 평가제도 관련법을 1983년에 제정하여 1984년부터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민영화는 소유지분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민영화보다는 소유이전과 각종 규제완화 등이 병행하는 실질적 민영화를 말한다.

제1차 민영화는 1968년부터 1973년까지 실시되었다. 대한통운의 민영화로 시작되었고 대한 항공등 8개 적자 공기업이 민간 기업 또는 공기업형태의 금융기관에 매각되었고 소유지분의 상한선은 없었다. 이 기간 중에 18개 공기업이 새로 신설되었는바 시장실패치유를 위한 공기업 신설은 지속되고 불필요한 공기업(이미 목적을 소진한 공기업)은 매각되는 논리이다. 대한 염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영화 기업은 흑자 기업으로 전환 되었다.

제2차 민영화는 1980년 초반에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민영화 되었다. 1980년 세계적인 개방화 물결에 따라 시작되었고 한일은행, 제일은행, 서울신탁은행, 조흥은행이 민간부문에 매각되었다. 매각할 때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지배를 막기 위해 개인소유한도는 5000주, 기업한도는 5% 한계를 두었다. 그러나 1997년 금융 위기 후 한일은행, 서울·신탁은행은 흡수 통합되었고 제일은행과 조흥은행은 각각 국내외 은행그룹에 매각되었다.

제3차 공기업 민영화는 신자유화 물결(new rightism)에 따라 대규모로 계획되었고, 10개 공기업을 매각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POSCO, 증권거래소, 국정 교과서, 외환은행, 한국감정원, 한국기술개발(주), 한전(KEPCO, 한국통신(KT),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이었다. 한국통신, KEPCO, POSCO등은 국민주라는 이름으로 일부 매각하였고 증권거래소는 관련 기업에게 완전 매각하기도 하였으나 그 추진은 미미하였다. 대규모 기업집단(소위 재벌)의 인수방지 원칙 및 외국인 자본의 한계적 허용에 따라 매각이 잘 이루어 지지 않았다. 종업원에게는 매각규모의 20%까지 매입을 허용하였다.

제4차 민영화 기간 중 정부는 1996년 “공기업경영효율성 및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여 3차 민영화 계획을 백지화하고 공기업을 기존상태로 유지하면서 소유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했고, 민영화 계획을 수정하여 4개 대규모 공기업(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및 한국중공업)에 한해 동일인 한도를 제한하는 단계적 민영화와 민영화 이전에 이윤동기에 입각한 민간기업형 경영체제 도입을 목적으로 한 “공기업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공무원의 이사회 배제, 정부투자기본법 대상 제외, 민간식 이사회구성 및 역할 부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주인 있는 경영”을 위한 민영화 계획은 역시 “재벌문제”로 추진력을 갖지 못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제 5차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POSCO, 한국중공업 등 5개 공기업을 빠른 시일 내에 민영화하고, KT (한국통신), KT&G(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KEPCO(한국전력공사)등 6개 대형 공기업은 단계적으로 민영화할 계획이고, 정부투자기관의 자회사 33개를 완전 민영화하고 28개 정부출자 기관 자회사도 민영화하여 총 108개 공기업 중 11개 투자기관 및 출자기관과 67개 자회사가 정리되어 향후 2002년에는 15개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관과 15개 자회사만 남게 된다는 계획이었다.

한국종합기술금융과 국정교과서의 경우 각각 (주)미래와 사람과 대한 교과서에 매각하였고 한국종합화학의 자회사인 남해화학을 농협에 매각하였고 - 그 외 포항종합제철은 5.11%를 해외 DR 방식으로 3.5억 달러에 매각하였고 단계적 민영화 대상기업인 한국전력이 지분 5%(7.5억\$) 해외 DR 매각방식으로 추진하였다. 한국통신(KT), 담배인삼공사(KT&G)의 경우 2001년, 2002년에 매각이 완료되었다.

라. POSCO 민영화 사례

POSCO의 민영화는 1987년 12월부터 민영화를 시작하여 2000년에 완료되었다. POSCO는 단일제철소로 세계 4위이며 연 2800만의 조강을 생산하고 있고 현재 계열기업을 17개를 가지고 있는 재계 순위 9위인 대규모 기업집단이다. 1987년 노태우 정부는 민주화 및 중산층 육성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POSCO의 정부(12.3%) 및 산업은행 지분(21.8%)을 일반투자자에게 “국민주”라는 이름으로 매각한바 있고 400만 이상이 신청하여 일반 개인은 7주, 종업원 및 경영자는 100주 이상을 가졌다. 1994년에 뉴욕주식시장, 1995년에 영국 주식시장에 상장하였다. 그리고 개인투자자의 3%의 소유한도를 정하였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hard currency가 필요하여 정부 지분 및 산업은행 지분을 주식시장에서 전부 매각하였다. 현재 민간기업인 POSCO는 공기업일 때보다 이윤도 증가하고 주식가격도 증가하였다. 무엇보다도 경영진들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아 기업경영 개선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직원들 간에는 과거와 같은 공기업식 경영에 향수를 느끼는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소유 분산의 대표적 민영화 기업으로 재벌 기업의 경제력 집중해소에는 도움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기업의 대규모 투자 및 장기적 투자에는 많은 시간과 결정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가령 신규투자의 필요성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고로 사업에 투자를 게을리했다. 결국 1000만 톤의 초과 국내수요를 유발하여 현대 INI스틸의 700만 톤급 고로 신규진입을 허용해야 한다.

마. KT&G 및 KT 사례

KT&G는 총자산 규모로 33위에 이르는 대규모 기업집단이다. 1987년 전매청에서 전매공사로 전환함과 아울러 담배 전매수익금을 담배세로 고치고 경쟁체제로 만들었다. 1999년에는 법적으로 보호받던 독점 조항도 없애고 경쟁체제로 만들었고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였으며 2002년 10월 완전 민영화를 하였다. 외국인 지분의 상승으로 현재 제1대 주주이며 이들은 고배당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기업의 장기투자에 어려움이 있다. 매각 후 주가의 상승과 생산성의 상승효과가 있었다.

KT는 민영화하기 전 규제완화로 경쟁체제를 만들었다. 국내통신의 데이콤을 신설하였다. 1993년과 1996년 사이에 28.8%의 정부지분을 매각하였고 1999년에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하였고 뒤이어 미국, 영국주식시장에 상장하여 2002년 5월 완전히 매각을 하였다. 현재 주주는 외국인이 49%, KT 및 자회사가 26%, 국내투자자가 19%, 종업원 6%로 구성되어있다.

민영화 이후 국내통신망에서는 수익구조가 좋지 않다. 이는 아직 공공성을 이유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영역인 Internet 서비스 분야에서는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KT의 경우 소유분산과 외국인 대주주의 지배력으로 인해 장기투자 실행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미래가 불투명하다.

3.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와 한국경험사례

가.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는 정부투자기관에 조달 등 경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주고 1년 후 경영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있다. 이 제도는 1983년 정부투자 기관기본법과 1999년 2월에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 및 기능조정 이후로 20년간을 운영하였다. 이 제도는 인도,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브라질,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등 6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정부출연기관평가, 기금운용평가, 정부기관평가, 산하기관평가 등 공공부문 평가제도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에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투자기관별로 사업추진실적, 노동생산성, 인사, 조직, 노무관리 등 경영전반에 걸쳐 30개 내외항목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소속 직원에게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월 기본급의 500% 범위 안에서 실적에 따라 기관별 차등 지급)하고 평가결과 경영실적이 저조한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는 임면권자에게 사장 및 상임이사의 해임건의 가능하다.

정부투자기관 운영회 (위원장: 기획예산처 장관)는 기획예산처 장관, 주무부처 차관 등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있고 경영목표 설정 등 경영평가 전반

을 다루고 정부투자기관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사외이사의 추천권을 가진다.

매년 3월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연구원 등 관계전문가로 경영평가단을 구성, 3개월간 평가 후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의결을 거쳐 국회 및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2005년에는 34명의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했는데 이들 모두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및 전문연구원들이었다. 1984년부터 2003년까지 경영평가단 교수들을 분석해보면 교수(61.6%), 공인회계사(27.8%), 연구원(6.3%) 순으로 구성되었다.

〈표 2-2-5〉 경영평가제도의 변천

	제 1기(84년-91년)	제 2기(92년-98년)	제 3기(99년 - 현재)
평가대상	24-25개	23-13개	13개
평가내용	기관평가	좌동	기관평가 및 사장평가
인센티브	한도:300% 평균: 240-260%	한도: 325-500% 평균: 263- 352%	한도: 500% 평균: 284%- 307%
관리주체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장관급 및 민간인)	좌동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기획예산처장관 및 차관급, 민간인)
평가방법	기본점수(75점)부여	좌동	기본점수제 폐지

4. 한국재벌정책과 베트남 대규모 공기업집단의 과제

가. 대규모 공기업집단의 경제적 효과

다수의 계열기업을 가진 holding company 형성은 시장의 독점력과 아울러 일반 집중력도 증가하며 때로는 정치적 리더십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긍정적으로 이러한 조직형태는 경제개발에 도움을 준다. 개발도상국가에서는 특히 더 그러하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투자제약을 극복하고 개발초기에 기업들의 이미지 및 신용불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효율적인 중소기업들의 이합집산은 이들의 퇴출을 막아 경제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가 있으며 또한 시장의 독점력의 강화는 오히려 시장경제의 추진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나. 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정책 방향

재벌은 정·재계간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꾸준히 외연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재벌은 경제패권을 통해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 정치, 사회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Veto Power로 자리 잡아 왔다. 사회일각에 뿌리 깊게 내재해 있는 반 재벌정서 형성은 정경유착 및 재벌의 과거 그릇된 경영행태에 대한 반작용, 경제패권이 정치, 사회전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 정치권 및 일부 NGO의 재벌에 대한 왜곡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재벌 인식하에서 정치적/경제적 전환기마다 국면타개책의 일환으로 재벌에 대한 캠페인성 개혁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으나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재벌해체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며 재벌개혁이 강도 높게 추진되었다. 1998년 1월 13일 대통령 당선자와 4대 재벌 총수가 합의한 '기업구조조정방안 5개항'과 동년 8월 15일에 추가된 3개 원칙⁴²⁾을 바탕으로 재벌의 사업구조, 재무구조, 지배구조 개혁을 동시에 추진한바 있다.

과거 재벌의 과도한 사업다각화, 가족중심의 경영체제와 계열사 간 경영 불투명성, 기업들의 대규모 부실화 가능성, 시장 독과점화 등을 시정하는 데는 이른바 시장적 해결방식이 적용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 금융시장의 정부지배, 폐쇄적인 경영권(M&A)시장, 미비한 기업퇴출제도 등으로 이른바 "시장규율(discipline by market)"이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었다.

계열사 간 채무보증의 해소와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조치 등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뿐만 아니라 부실금융기관정리와 금융시장개편, 자본시장의 대외개방, 수입선 다변화제 폐지로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압력 제고 등 기업집단문제를 시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부분적으로 조성되었다.

재벌이 갖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전적 가치판단보다는 경험적

42)기업구조조정방안 5개항 : ①기업경영투명성의 제고 ②상호지급보증의 해소 ③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④핵심부문 설정과 중소기업 협력강화 ⑤지배주주 및 경영진 책임강화

※재벌개혁 추가 3원칙 : ①재벌의 금융지배 방지 ②순환적 상호출자 및 부당내부거래 억제 ③ 변칙상속의 차단

분석에 기초한 문제제기와 정책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재벌은 좋은 싫든 우리나라 산업조직을 구성하는 대표적 한 단면이며, 경제적 자원배분의 증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선적인 재벌해체에 대한 논의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특히 사전적 가치판단에 기초한 thought-experiment식 정책실험이 경제 전 분야에 미칠 과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판일변도의 시각에서 재벌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업의 조직형태, 소유·지배구조는 그 나라 고유의 경제여건, 제도 및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내생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재벌을 단지 기형적인 조직형태로 보기보다는 우리의 제도적·역사적 맥락에서 발전한 조직형태로 보는 균형적 시각이 필요하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집단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경제력집중억제를 포함한 재벌정책의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현실의 특수성 때문에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내 대기업들도 시장개방으로 인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40%를 상회하고, 선진 대기업과 국경을 넘어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 하에서 한국적 특수성을 거론하며 국내기업에게 역차별적인 정책을 지속할 수는 없다.

재벌체제의 문제점은 기업의 대규모성 아니라 재벌패권, 시장독과점(시장집중), 대주주의 경영통제권 독점에서 비롯되고 있다. 재벌패권은 정경유착을 가능케 하는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개혁으로, 시장의 독과점은 경쟁촉진시책으로, 그리고 대주주의 경영통제권은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으로 각각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한국경제의 활력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력집중억제에 치우쳐 있는 기존의 재벌정책 운용 틀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외부규율기능의 강화, 시장에서의 시장구조 개선, 경쟁유지 및 경쟁촉진의 방향으로 대전환하여야 한다.

기존의 재벌지배구조 및 경제력집중억제 관련 재벌정책은 시장친화적인 규율로 점진적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정부는 재벌지배구조개선 및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행태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지양하고, 시장 보호 및 인허가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 단행, 상품·용역시장의 경쟁적 구조로의 전환, 기업인수합병시장의 활성화, 지배구조개선 및 경영투

명성 제고, 금융시장의 자율성 확보를 통한 금융시장 기능의 정상화 및 제한적 집단소송제 등 법정정책을 강구함으로써 기업의 외부 경쟁압력을 제고해야 함. 즉 재별구조가 유리한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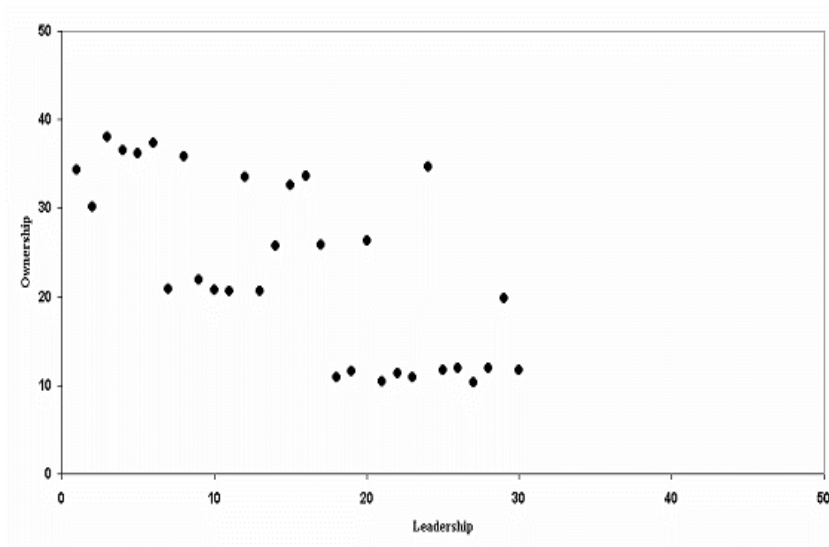
다. 소유 집중과 분산의 경제학(한국의 경험)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한국의 중요한 이슈였다. 미국 모델과 독일 모델 중에 미국 모델에 충실하여 소유분산을 정책목표로 하여 재별문제와 공기업 민영화에 도입하였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투명성확보가 주요한 이슈였다. 따라서 이사회에 사외이사의 도입,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강력한 법안 제정, 집단소송제 도입, 상속세제 강화, 자기자본과 부채비율의 축소, CEO 시장의 형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추진하였다.

최적 소유구조는 기업의 통제비용의 최소화하는 곳에서 발생된다. 기업의 통제비용은 시장상황, 생산품의 차이, 정부의 태도, 기업의 연령, 기업문화 리더십, 자본시장구조, 소액주주 보호법 유무 등에 따라 결정된다.

예로서 기업가정신(리더십) 과 소유분산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2-2-1〉 리더십과 소유분산



적절한 소유구조는 기업 효율성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기업의 감시 감독이 필요한 대리인의 문제가 발생 시 더욱 그러하다. 소유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경영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이미 결정된 의사결정에 대한 번복에 따른 위험도를 가지고 적절한 소유구조를 결정할 수가 있다.

소유분산이 되면 민주화된 결정을 하여 좋은 점이 있으나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다. 그러나 한번 결정된 의사결정의 번복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소유 집중이 있는 기업의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나 한번 결정된 의사결정도 쉽게 번복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결국 정부 또는 나라별로 다르나 신속성에 따른 의사결정이 비용이 들게 하고 번복에 따른 위험비용이 작다면 소유 집중이 좋은 제도이고 그러하지 않은 경우 소유분산이 좋다고 볼 수가 있다.

국가별 소유 집중과 분산의 선택을 위의 모형에 따른 비용비교를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보다 의사결정의 번복 위험 비용이 적었다. 그 이유는 빨리 적응하고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 정부정책이 오히려 변화가 많았다. 반면에 의사결정이 신속히 결정되지 못하면 뒤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표 2-2-6〉 국가별 기업통제 비용차이

	의사결정의 번복에 따른 위험비용	의사결정의 신속성에 이르지 못할 경우 비용
한국	높다	낮다
미국	낮다	높다
일본	중간	중간

5. 우리의 경험에 비춘 베트남 공기업 개혁 과제

베트남 공기업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해 3가지 중요한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로 정부는 현재의 equitization(부분민영화)은 완전 민영화의 전 단계로 종극에는 완전민영화를 한다는 인식과 시장기능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에 대

한 믿음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전파하여야 한다. 후속조치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매각방식은 주어진 상황 하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을 고르면 된다.

둘째로 공기업으로 남는 기업들 중 규모가 크고 국가에 중요한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반드시 경영평가제를 매년 실시하여 효과적인 공기업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로 대규모 공기업집단(state corporation)의 경쟁유도를 위해 반독점 금지법의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대규모 공기업 집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공기업체제로 남는 공기업의 지배·통치구조 연구 필요하다.

가. 민영화정책에 있어 베트남의 과제

베트남 equitization의 과제로 몇 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다.

첫째로 가격문제이다. 정부의 재산을 저가로 판매한다는 것은 국유재산의 헐값 판매로 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매각기업의 시장의 적정가격을 찾는 데 비용이 덜 들고 주식에 대한 초과수요자를 발생시켜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이는 일본의 NTT 매각 과정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이다. 둘째로 종업원의 반대 때문에 많은 판매 주식이 종업원에게 매각되어지는데 어떤 기준 없이 전량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를 가져온다. 종업원들에 대한 주식소유 상한선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로 민영화는 목표보다는 과정이다. 민영화를 진행하면서 시장을 이해하는 것이다. 진행을 꾸준히 해야 한다. 넷째로 대규모 공기업 집단의 형성으로 인해 생기는 비효율성에 대한 교정 장치의 마련이 중요하다.

한국의 민영화 추진의 경험에 비추어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로 민영화 대상 기업의 선정에서 개인 기업이 담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가진 산업은 배제하여야 하며 또한 민영화 이후 규제산업의 경우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규제완화는 반드시 동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둘째로 매각대상의 선정에서도 인위적으로 어떤 특정계층을 제외하는 것은 오히려

려 계층 간 격차의 심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가령 중소기업의 배제 또는 대규모 기업의 배제의 경우이다. 국민주 등을 이용한 대규모 매각방식은 신중해야 한다. 종업원의 인수규모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영화시 외국인 투자의 참여를 강력히 권고한다. 매각의 수월성과 장기투자의 지연의 tradeoff를 고려해야 한다.

나. 경영 평가제도의 베트남의 적용

베트남의 공기업개혁법(2004년)에 의하면 공기업의 내부 경영감시제도에 관해 자세하게 기술되어있다. 경영이사회의 기능, 경영감독회(controlling board)기능, 사장, 부사장 및 주요회계담당자들에 대한 자세한 기능을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감시제도는 상품시장과 자본시장이 경쟁적이고 효율적이면 정상적으로 가동하나 그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제도로는 경영자와 근로자간의 정보비대칭성, 불확실성, 그리고 도덕적 해이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

베트남은 공기업의 수와 규모가 방대하여 전체 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대규모 공기업 집단 중 종업원이 10,000명이 넘고 정부의 예산 기여율이 높은 10개에서 15개 정도를 선정하여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대규모 공기업의 경영평가의 실시는 타 대규모 공기업(GC)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경영평가 대상기업들을 다음과 같은 기업들을 고려 할 수가 있다. Vietnam Alcohol, VEAM, VINA SHOSE, Vietnam Industrial Construction Corp. Vietnam glass and Ceramic for Construction Corp. Song Da Construction, Ha Noi Construction Corp. VINACONVEX, Cienco No1, Vinafor, CIENCO No 8, Petrolimex,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Saigon Trading Corp. Saigon Real Estate Corp 등이다.

일단 거대 공사의 경영평가를 위한 주무부처 및 기관의 설정이 급선무이다. 정부자산을 관리하는 베트남 공사(state corporation), SCRED(Steering Committee for Enterprise Reform and Development), 재무부, 기획투자부(MPI) 등이 구성되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 이 위원회에서 개별 SOE의 목표치와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평

가교수단의 구성이 필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센티브제도의 운용이다. 소위 incentive compatible 계약을 어떻게 만드는가가 중요하다. 평가자와 피 평가기관 간의 위협을 적절히 부담시키는 계약을 만들어야 한다.

다. 베트남의 대규모 공기업 집단에 대한 정책적 제언

대규모 공기업 집단의 향후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현재부터 해야 할 몇 가지 정책을 제시한다.

첫째로 GC(General Corporation)는 반드시 민영화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시일이 지날수록 대규모 공기업은 점차 확대되고 정부만이 제어가 가능한 바 때로는 정부 관료도 관련 대규모 공기업집단에 포획이 되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초창기에 민영화를 하여야 한다.

둘째로 한국의 경우처럼 1997년에 시행된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5+3 원칙의 시행보다는 이러한 원칙에 근거한 정책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경제 및 시장 환경의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직접적 규제보다는 시장 유인적 규제의 시도가 바람직하다.

셋째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만드는데 정부 또는 민간 대주주의 소유지분의 양의 결정이 중요하다. 소유지분과 소유분산의 결정을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나라의 자본시장구조, 기업문화, 법, 기업의 리더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중한 소유지분결정이 요구된다. 베트남의 경우 정부의 강한 리더십이 존재하는 한 소유 집중이 바람직하다.

넷째로 소액주주의 보호제도 및 사외이사제도 등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연구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소유구조, 기업내부지배구조, 기업외부지배구조, 시장 경쟁 등이 혼히 이야기되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들이다. 정부가 100% 또는 50% 이상을 소유하는 공기업의 경우 시장이 독점적이고 자본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기업 내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해이, 불완전 계약 등에 대한 치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경쟁법 이외에 대규모 공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규제 법안도 고려해야 한다.

참고문헌

- Bortolotti, B. and Siniscalco, D. *the Challenges of Privatization*, Oxford, 2004
- CIEM, *SOE Law in Vietnam*, 2004. 1.
- Kang, Shin Il, *Korea's Privatization Plans and Past Experiences*, KDI Working Paper No 8823, KDI, 1988
- Kang, Shin IL, *Choice of Privatization Methodology: KEPCO and Korea heavy Industry*, KERI, 1994(Korean version)
- Kang Shin IL, *Determinants of Corporate Ownership Structure and their effects on Corporate Governance in South Korea, Ownership Structure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KERI, 2003
- Lim Wonhyuk, *Public Enterprise Reform and Privatization in Korea: Lessons for Developing Countries*, KDI, 2003
- Shirley, M. M. *Improving Public Enterprise Performance*. Working Paper, World Bank, October 1989
- Song, Dae Hee, *a Study for Internal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within the National Food Authority of Philippines*, KDI Working Paper, No 8803, KDI, April 1988
- Song, Dae Hee,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Korean Public Enterprise Performance: 1962-1991*, KDI Working Paper No. 9506, KDI, March 1995
- EPB, *New Administration System for Public Enterprises in Korea*, Sep. 1990
-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Guidebooks on Government -Invested Enterprises' Performance Evaluation*, 1995
- Korea Labor Institute, *Public Sector Industrial Relations in Selected Countr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s Reform Policies*, 1990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Limited, *Country Commerce Vietnam*, April 2004
- CIEM, "Accelerating State-Owned Enterprises Reform to Meet the Requirements of National Development and WTO Accessions," CIEM-FES Working Paper, January, 2004
- OECD, "Recent privatization Trends in OECD countries," OECD 2002

제3장 세계 무역 체제로의 통합: WTO 가입을 위한 베트남의 준비 현황 및 현안 과제

1. 서론

현재 베트남의 WTO 가입이 상당 부분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WTO 가입을 전후로 하여 베트남 국내 사회, 경제, 정치 등 전 부문에 걸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베트남의 경제 및 통상 제도는 커다란 변혁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WTO 가입을 통해, 베트남은 국제무역공동체의 일원으로 편입되게 되며 다른 148개 회원국과 동등한 지위에서 국제무역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WTO는 회원국에 대하여 국내 경제 및 무역 정책의 다양한 분야에서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오로지 해외 무역 증대방안에만 의존해 오던 지금까지의 무역 관행을 탈피, 본질적 개혁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WTO 가입과 관련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베트남이 WTO 가입을 통해 의도하고 있는 결과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WTO 가입을 위한 노력만이 아니라 WTO 가입 이후의 WTO 체제에의 적응 및 활용을 위한 지속적 노력 경주가 더욱 중요하다.

본 보고서는 베트남의 WTO 가입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에 관한 자문을 제공, 베트남이 향후 對 WTO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양자 협의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주요 교역국과의 양자협약에 있어 非市場經濟 (Non Market Economy

(“NME”) 문제와 市場攪亂 制度 (Market Disruption (“MD”) rule)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핵심적 이슈로 다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 베트남에 대한 비시장경제 (NME) 지정 문제

베트남을 비시장경제 국가로 지정하는 문제와 그 지정 기간을 확정하는 문제는 추후 양자 협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안건이 될 것이다. Pilot Study 및 중간 보고 회의에서 베트남측 인사들은 비시장 경제 국가로 지정 문제가 베트남의 WTO 가입 준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임에 공감하였다.

베트남 상품은 WTO 가입 이후 외국수출시장에 급속히 진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판단 하에 WTO 회원국들은 현 WTO 국제 무역 규범 체제 하에서 베트남을 비시장경제 국가로 지정하는 것이 베트남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베트남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베트남의 WTO 가입 이전인 현재에도 이미 베트남 수출에 대한 가장 중대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반덤핑 조사는 WTO 가입 이후에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WTO 가입으로 인한 베트남 상품 수출의 증가는 수입국 정부와 경쟁 기업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들 정부와 기업은 베트남 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남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시아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이며 베트남 대외 무역 정책의 주요 벤치마킹 모델인 중국과 한국은 WTO 출범 이후 빈번히 반덤핑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 1995년에서 2004년 사이에 중국에 대해서는 약 359건이, 한국에 대해서는 약 182건의 반덤핑 조사가 행해졌으며, 특히 WTO 가입 이후 양국의 수출량의 증가와 이에 편승한 양국에 대한 타 회원국의 반덤핑 조사는 더욱 높은 수치로 증가하였다. 결국 중국과 한국의 대외 무역 정책을 모델로 하는 베트남의 현 무역 정책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베트남은 중국과 한국에 이어 WTO 체제하에서 주요 반덤핑 조사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의 비시장경제 지정은 베트남에 대한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바, 바로 “비시장경제”라는 특별한 mechanism을 활용하여

미국을 포함한 여타 WTO 회원국이 베트남 수입품에 대해 보다 용이하게 반덤핑 조사를 시작할 수 있고 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베트남의 비시장경제 지정이 계속될 경우, 베트남은 향후 동일한 반덤핑 조사 절차 내에서도 다른 국가 -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보다 -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받게 될 것이다.

반덤핑 조사의 증가와 더욱 용이해진 반덤핑 조사 개시 및 반덤핑 관세 부과는 향후 베트남 수출 산업에 만성적인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 베트남이 WTO 회원국으로서 얻게 되는 많은 혜택을 상당 부분 상쇄시킬 가능성이 크다.

WTO 가입 초기 비록 베트남이 시장경제체제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회원국의 반덤핑 조사를 방어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자원이 투입되어야 할 형편인 바, 나아가 비시장경제로의 지정은 이러한 부담을 두 배, 세 배로 가중시킬 것이다. 따라서 비시장경제 지정의 문제는 베트남의 WTO 가입을 전후로 더욱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시장 교란 (Market Disruption)” 대응 규정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베트남에 대하여 WTO 협정보다 개시가 용이한 세이프가드 조사 메커니즘을 별도로 채택할 것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베트남 상품의 수입 증가를 우려하는 일부 국가들은 WTO 세이프가드 협정보다 더욱 실행이 용이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도입, 활용함으로써 반덤핑과 같은 “불공정 무역”이 아닌 “공정 무역”에 대해서도 베트남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실행이 용이한 특정 회원국에 대한 특별 세이프 가드 조치를 바로 “시장 교란 (Market Disruption)” 대응 규정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베트남 정부는 Market Disruption Rule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의 신설을 적극 저지하여야 하며, 비시장경제 문제와는 달리 베트남의 입장이 prevail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경우 타국의 강한 압력에 굴복, 2001년 WTO 가입 당시 Market Disruption Rule을 인정하는 예외 조항의 신설을 허용한 결과 중국 수출품으로부터의 “심각한” 피해를 입증함이 없어도 여타 WTO 회원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라는 강력한 통상 제재를 발동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이 제도는 Accession Protocol에 따라 2016년까지 중국 통상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선례는 WTO 가입을 앞둔 베트남 정부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금번 교섭 과정에서 타국 역시 유사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면, 베트남 정부는 Accession Protocol에 이러한 Market Disruption Rule이 포함시키지 않도록 합리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 베트남의 상황은 중국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와는 달리 베트남 상품의 수출은 Market Disruption Rule의 도입을 필요로 할 만큼 타국 국내 시장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여타 주요 교역국이 베트남에 대해서 Market Disruption Rule의 적용을 주장할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나, 만약 동 이슈가 제기되면 베트남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며, 비시장 경제 문제와는 달리 베트남 정부가 교섭 상대국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3. WTO 가입 이후 베트남 정부의 핵심 이행 사항

가. “WTO 전문가” 풀(pool)의 조직과 개발

WTO 가입 이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베트남 내에 “WTO 전문가” 풀을 조직하고 발전시키는 일이고 WTO 회원국으로서 요구되는 다양한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베트남 내 관련 분야에 대한 WTO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하다.

베트남의 가입과 동시에 모든 회원국들은 베트남에 대해 여타 회원국과 동일한 수준의 의무를 요구하게 되며 Grace Period는 존재하지 않는다. 타 회원국들로부터 WTO 가입 이후 초기 단계에서의 베트남의 경험부족과 필요한 준비 기간의 결여 등을 이유로 베트남의 WTO 의무 미준수에 대한 이해를

바라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베트남의 통상이익을 법적으로 방어, 확대할 수 있는 WTO 전문가 풀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양성, 민관이 공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재 이 분야 expertise를 보유한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다양한 전문 인력도 적극 활용하여 민관을 총괄하는 WTO 전문가 그룹을 각 부분 별로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나. 베트남 정부 내 WTO Task Force 시스템의 도입

WTO 가입 초기 몇 년간 베트남 정부는 상당한 workload를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초기 단계의 혼란은 주로 국내의 많은 이익단체를 적절히 regulate하는 것에 실패하고 WTO 및 그 회원국과 기업들의 다양한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WTO Task Force는 WTO 가입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최소한 임시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산재해 있는 많은 작업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여 가장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이슈부터 정책의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WTO Task Force의 주요 임무가 될 것이다.

많은 WTO 회원국 및 그 자국 기업들 그리고 심지어는 베트남 기업들 역시 베트남 중앙 정부에 각기 개별적인 요구를 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요구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가장 현안이 되는 시급한 것부터 한정된 인력을 투입시킴으로써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한다.

이러한 prioritize를 통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다.

다. “조사 당국(Investigating Authority)” 의 설립 및 운영

베트남 정부는 WTO Task Force와 함께 WTO 체제의 핵심 부서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즉, WTO 협정상 베트남은 외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보조금 위반 조사 및 세이프가드 위반 조사 등의 무역 구제 업무를 담당할 “조사 당국”을 설립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WT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다.

- 조사 당국은 특정 정부 부처 산하에 두거나 또는 독립 기관으로 설립될 수도 있으며,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무역 구제(trade remedy) 제도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무역 구제” 조사에 관한 규정, 선례 그리고 인력이 충분히 갖추어진 타국과는 달리 지금까지 “무역 구제” 조사의 경험이 전혀 없는 베트남으로서는 이 부분에서 앞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 통상법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의 개선

Pilot Study에서 많은 베트남 정부 인사와 관련자들이 베트남 교육 시스템의 전반적 문제를 지적했다. 예전의 교육은 기존의 계획경제체제 하에서는 원만히 기능하였으나 현재의 변화한 환경 하에서는 베트남 정부와 기업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에는 부족하다. 새로운 전문가와 새로운 교육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수없이 많으나 통상법 분야말로 가장 절실한 상태이다.

DSI 정부 인사들은 면담에서 베트남 내에서 WTO의 후원으로 실시한 단기 교육 과정을 제외하면 사실상 완성된 형태의 통상법 교육 시스템이 부재한다고 지적하였고 베트남 정부 인사들 역시 베트남의 법률전문대학에서는 통상법 교육과정이나 교육담당자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WTO체제는 법적 권리와 의무 및 이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하므로 적절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유능한 통상법 학자와 관리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며, 베트남 정부 인사들도 이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였으며 통상법 전문가 양성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조속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

마. 영어교육의 강화

Pilot Study 시 베트남 정부 인사 및 기업가들과의 면담은 베트남에서의 영어 의사소통 문제점이 이미 만성적인 것으로 굳어 있음을 보여 주었다. Pilot Study 중 많은 정부 관계자나 경영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영어가 WTO 협상과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장애가 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DSI 관료들 역시 무역 협상에 있어서 언어장벽에 대한 그들의 좌절감을 표시하였으며 여타 정부 담당자들도 능숙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정부 공무원들의 부족현상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WTO 가입의 성공적인 마무리뿐만 아니라, 향후 점증하는 국제 경쟁 체제하에서 베트남의 장기적 번영을 위해서도 베트남 사회 제반 분야에서 영어 능숙자의 증가가 절실히 요구된다.

개인 사업에 관한 지금까지의 영어의 활용은 역시 상당히 미비했다. 외국의 베트남에 대한 직접 투자와 기업간 교류는 앞으로 폭증할 것인 바, 영어 능숙의 부족은 이러한 Business Transaction에 있어 불필요한 cost를 야기할 것이다.

바. 기존 국내법 및 관련 규정의 개정 및 필요 법규정의 제정

WTO 체제에서 모든 회원국은 WTO 협정과 합치하는 방법으로 국내법과 관련 규정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법령의 개정 및 신규 도입은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는 작업이며 단시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실 WTO의 모든 회원국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하고 있는 on going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WTO가 회원국에 대해 요구하는 의무는 국내법 및 규정의 단순한 개정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법 시스템하에서의 정부의 행정명령 또는 관행 (practice) 마저도 WTO 협정에 합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 국내 사법시스템의 정교화

WTO가 회원국에 대하여 요구하는 또 다른 사항은 외국 수출자들과 투자자들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고, 관련 WTO 규범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국내 사법 시스템의 도입이다.

법원에서의 판결이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WTO이념에 부합하느냐의 여부, 동일한 상황에서 외국 기업들과 국가들의 활동이 베트남의 국내법과 합치하지 않을 경우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 시스템의 도입 여부 등이 문제시 된다.

현 베트남 사법제도에는 법관 임명제도, 외국 기업의 재판 절차 참여에 대한 행정적인 장벽, 판결의 실효성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아. 주요 교역 대상국에서의 친 베트남 분위기 조성

장기적인 과제의 하나로 베트남 정부는 주요 교역 대상국에서의 친 베트남 분위기 조성으로 부당한 통상 정책 및 입법의 소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상 정책에 관한 한 미국 의회 내에서의 베트남 지지 세력의 확보는 여러 모로 중요한 문제이다.

대만, 이스라엘, 일본의 경우 미국 의회와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무역 정책의 운용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 분야에서 다방면의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Korea Caucus 결성을 통해 미 의회 내에서의 친한 그룹 결성 노력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은 베트남 정부에도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주요 통상 이슈에 관한 한국의 경험 및 베트남 정부에 대한 제언

가. 반덤핑 조사 대응 전략

1980년대 이후 반덤핑 조사는 한국의 수출업자들에게 끊임없는 위협 요소로 작용한다. 초기 반덤핑 조사에 있어 미숙한 대응으로 문제점을 노정하고, 특히 순전히 법적 절차의 성격을 지닌 반덤핑 조사 문제를 정부간 외교적/정

치적 교섭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愚를 범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부와 회사들은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그러나 초기의 미숙함을 극복하고 점차 경험이 축적되며 최소한 반덤핑 조사에 관한 한 안정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 축적에도 불구하고 반덤핑 조사는 여전히 전 세계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의 수출업체의 최대 위협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중소기업 수출업체들이 외국의 경쟁업체에 의한 반덤핑 제소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 한국의 경험 및 교훈

정부 입장에서는 반덤핑 조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항의를 제기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만한 것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주요 시장에서 반덤핑 조사의 주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수출업체에 대한 “반덤핑 예방 및 대처 교육”이라는 점을 파악하게 된다.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외국 정부의 반덤핑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통상부내에 Foreign Import Restriction Task Force를 설립하고, 이 Task Force는 반덤핑 조사가 개시될 때 마다 해당 외국정부에 파견되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공정한 조사를 당부한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관심 표명이 대부분의 경우 진행중인 반덤핑 조사를 종료시키지는 못하였으나, 최소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는 상당히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정부에 의한 이러한 사전 정지 작업은 특히 조사 당국이 폭넓은 “불문율의 재량권(discretion)”을 보유하고 있는 개도국의 반덤핑 조사에 있어 특히 효과를 발휘한다.

2) 베트남에 대한 시사점

전반적으로 반덤핑 조사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접근(practical approach)’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즉, 현재의 반덤핑 조사는 특정 기업의 반덤핑 행위

에 대한 penalty라기 보다는 오히려 국제 통상 체제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불가피한 “사업비용(business cost)”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 및 기업은 반덤핑 제소에 대해 지나치게 과민 반응 (over-react)하는 것을 자제하고 베트남 수출상품의 해외 진출이 늘수록 당연히 수반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반덤핑 제소를 회피할 수 없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외국의 조사 당국에 의한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 부당한 반덤핑 조사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 베트남 정부가 정확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당해 조사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며 적절히 ‘외교적’ 및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성격이 모호한 반덤핑 조사를 통해 국내 수출업체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order)이 내려질 경우, 당해 결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격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해당국의 법원에 사법심사 (judicial review)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WTO 분쟁해결절차로 회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응은 초기에는 재정적·실무적 부담을 안겨줄 수는 있으나 향후 유사한 부당한 반덤핑 조사에 대한 억제책으로 작용하여 결국에는 베트남 정부나 베트남 기업의 이익으로 귀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보조금 및 상계관세 조사에 대한 대응

60-70년대 경제발전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다수의 핵심 산업 구축에 깊은 관여를 해 왔으나, 정부의 개입은 현재는 거의 사라진 형편이다. 특히 1990년대부터 민간 부분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 추진되고 또한 1997년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 제반 분야에 대한 자유화, 국제화가 대폭 추진됨에 따라 한국 정부의 관여는 대부분 사라진 상황이다.

그러나 다수 국가들은 여전히 한국을 주요 산업에 대하여 정부가 깊숙이 개입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시각으로 인하여 아직도 한국의 수출업체들에 대한 보조금 및 상계관세 조사가 빈번히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른 상계관세 부과는 한국 수출업체

들에게 심각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조금 및 상계관세 관련 문제는 현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가장 심각하게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며, 당분간 이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 한국의 경험 및 교훈

보조금 관련 분쟁은 직접적으로 정부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덤핑 관련 분쟁과 전적으로 상이하다. 따라서 타국이 제기하는 보조금 및 상계관세 조사를 예방하고 또한 관련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 효과도 미미하면서 보조금 지급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정부 프로그램들은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그러한 보조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여타 WTO 회원국의 왜곡된 “시각”이므로 경제 및 재정 정책의 자율화, 국제화 성과에 대해서는 적절히 국제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 조사와는 달리 보조금 관련 분쟁은 정부의 제반 정책에 관한 조사이므로 반덤핑 관련 분쟁에 비해 한국의 통상 이익에 보다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한다. 따라서 보조금 및 상계관세 조사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입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2) 베트남에 대한 시사점

보조금 및 상계관세 문제는 베트남이 NME의 지위로 남아있는 한 베트남 정부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NME 국가는 보조금 및 상계관세 조사에서 면제되는 것이 각국의 일반적 관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베트남이 WTO에 가입할 경우,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에는 베트남은 시장경제 체제로 인정받을 것인 바, 그 시점에서 보조금 및 상계관세 문제는 베트남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구성할 것이다. 다른 국가들은 베트남 정부와 민간 기업과의 긴밀한 관계에 기초하여 용이하게 보조금 및 상계관세 조사를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NME 지위를 졸업함으로써 반덤핑 조사 측면에서 얻게 될 긍정적 효과가 보조금 및 상계관세 조사에 따

른 부정적 효과에 의해 상쇄될 위험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WTO 가입과 동시에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산업 및 기업들과의 관계를 단계적으로 약화 및 단절하여 나가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베트남경제의 특성상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의 기계적 단절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나 최소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이를 실천하여 나가자 하는 노력을 여타 WTO 회원국에게 보여주는 것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문제는 현재 베트남의 경제체제 개혁과 관련하여 다른 중요한 문제인 베트남 정부의 국영기업 '민영화(equitization)'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며, 순전히 통상법적 관점에서 판단한 제안이다. 무엇보다 최소한 공식적(official)이며 공개적(open)인 보조금 지급(subsidization) 조치들은 이들 내용을 파악하여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 WTO 분쟁해결절차에서의 대응

한국은 현재까지 WTO의 분쟁해결 절차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하여 오고 있다. 최초 한국 정부는 다른 국가 특히, 한국의 주요 교역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었으나 WTO가 출범한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전략에 대하여 재고하게 되었다.

즉, WTO 분쟁해결제도가 오히려 한국의 통상 이익을 적절히 보호하고 실현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결국 한국의 통상 이익 옹호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자각하였다.

그 결과 2000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원용함에 있어서 상당히 공격적이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1) 한국의 경험 및 교훈

WTO 분쟁해결절차에서의 한국의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1995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이 상대국을 제소하거나 혹은 상대국에 의하여 피소된 사건은 총 23건이며, 그 중 7건이 양자 협의(consultation)에 의해 해결되었으며 15건은 패널 및 항소기구 즉, 분쟁해결기구(DSB)의 결정에 의해 해결되었고 한건은

현재 계류 중이다.

위의 15건 중 한국은 10건에서 승소한바 이러한 67%의 승소율은 50% 전후인 WTO 평균 승소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6개의 피소 사건 중 3건에서 승소한 바, WTO 회원국의 피소 사건에서의 승소율이 평균 약 10%임을 감안하면 50%의 승소율은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중요한 내재적 문제점이 존재하는 바, 바로 모든 사건들을 미국 혹은 유럽 출신의 외국 변호사가 담당하였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언어장벽 및 분쟁 관련 분야의 법적 지식 부족으로 인해, 한국 변호사의 선임에는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웃소싱”은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악순환”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전문성 부족 및 내재적 한계로 인하여 한국 변호사를 기피하게 됨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국 정부를 변호하는 외국 변호사들의 전문성은 점점 제고되는 반면, 이로부터 소외된 한국 변호사들의 전문성 및 능력은 더욱 제한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지나친 아웃소싱 문제는 때로는 변호사와 정부간 목표의 충돌 현상도 유발한다. 즉 변호사들은 수입 받은 사건에서의 승소가 지상과제임에 반해 정부 입장에서는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 사건 및 관련 업계에 대한 고려 등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바, 양자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다.

점차 통상 분쟁이 복잡화되어 감에 따라 이러한 목표의 “discrepancy” 현상은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궁극적인 해결책은 정부가 자체 변호사를 보유하여 이러한 분쟁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점진적으로 WTO 분쟁의 아웃소싱을 줄이고 정부내 담당 변호사의 육성을 통해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여 나가고자 하는 장기적 플랜을 보유하고 있다.

2) 베트남에 대한 시사점

한국의 그 동안의 경험은 통상법 분야 전문가의 장기적 육성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고, 특히 이러한 전문가에 대한 장기적인 육성 프로그램이 미비한

경우, 외국 변호사와 전문가에 대한 의존의 정도가 점차 심화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WTO 가입 초기 단계에서는 외국 변호사 및 전문가에 대한 아웃소싱이 불가피할 것이나, 점차적으로 외국 변호사의 역할을 줄여나가고 반대로 베트남 변호사의 역할을 증대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베트남 정부내 통상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순환 보직보다는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한 보직을 도입함으로써 이들의 전문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통상 전문 공무원에 대하여 적절한 보직 및 급여 등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중한 업무 부담과 국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통상 업무의 특성상 적절한 인센티브가 확보되지 않으면 우수 공무원이 이 분야에 지원할 가능성이 적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베트남 정부는 충분한 수의 통상 공무원들을 제네바 소재 WTO Permanent Mission으로 파견하여 이들이 다양한 분야에 각각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줄 필요가 있다. 특히 회원국간 다양한 분쟁에 대한 3자 참여를 통해 WTO 분쟁해결절차의 실질적인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으며, 3자 참여는 과중한 업무 부담 없이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라. 조사 당국(Investigating Authority)의 운영

WTO 협정에 따라 한국은 외국 수출 기업의 한국 시장 내에서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 당국'을 설립하고 운영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1987년 산업자원부(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산하에 한국무역위원회(Korea Trade Commission)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KTC의 활동은 외국의 조사 당국에 비해 그다지 활발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바, 그 이유는 한국은 국내 시장을 외국의 수입품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보다 외국 시장으로 한국의 수출품의 진출을 확대하는 데 더욱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이다.

1) 한국의 경험 및 교훈

WTO 체제와 FTA 체결의 확산에 따른 자유무역의 확대로 외국 수입품의 국내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 정부와 관련 한국 산업은 국내 시장 보호의 중요성을 점차 자각하게 되었다. 그 결과, KTC는 2004년 이래로 그 역할과 기능을 증대시키고자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먼저 한국 중소기업들에 대해 KTC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자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컨센서스 조성에 노력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는 KTC의 근무 직원과 조직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KTC 보다 원활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 및 규칙을 개정하고자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다. 나아가 한국 정부는 WTO 체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국내 시장의 철저한 보호가 한국 상품의 해외 진출을 오히려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자각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한국내에서 자국 상품에 대한 유사한 반덤핑 조사 등을 우려하는 외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등을 실시함에 있어 보다 신중하게 임하기 때문이다.

2) 베트남에 대한 시사점

한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역시 수출주도형 국가이나, '불공정한' 외국 수입품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메커니즘을 설립하는 것이 절실하다.

베트남이 WTO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조사당국 설립의 의무를 부담하는 바, 그러한 상황이라면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있는 "조사 당국"을 설립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특히 WTO 가입 이후 베트남 시장으로 외국 상품의 유입이 폭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적절한 조사 당국과 이를 통한 국내시장 보호가 미흡할 경우 불공정 수입품으로 인한 베트남 국내 산업 기반의 약화가 우려된다.

베트남 국내 조사 당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범집행은 해외에서 베트남 수출업체가 외국 조사 당국에 의한 부당한 반덤핑 및 보조금 조사의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을 줄이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해당

외국 정부가 베트남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등 관련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만약 명백히 불공정한 조사가 진행될 경우 베트남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 자국 상품에 대한 베트남 정부와 기업의 사실상의 보복 조치를 우려하여야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상의 경우 보다는 이러한 외국 조사 당국의 조사 진행과 방법이 보다 공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5. 결론

금번 베트남의 WTO 가입은 베트남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turning point를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WTO 가입에 따른 다양한 여파 즉, WTO 가입이 베트남의 경제/무역 부분에 미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이에 기초한 충분한 준비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본 프로젝트를 위한 Pilot Study 면담, 중간점검 회의 및 최종 회의에 참여한 베트남 정부 인사들은 상당히 협조적이었고 베트남의 현 상황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제공하여 이 분야에 관한 베트남의 정확한 현황 파악에 상당한 도움을 제공하였다.

현재, WTO 가입을 위한 양자 교섭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베트남 정부로서는 WTO 가입 이후에도 처리 및 이행하여야 할 “살인적”인 workload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단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주요 과제는 어떻게 하면 베트남 정부가 WTO 가입 이후 발생이 예상되는 다양한 부정적 영향 요소를 최소화하고 베트남 경제/무역체제를 순탄하게 국제 무역 체제로 편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각 부처의 개별적인 부문에서의 노력 보다는 베트남 정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포괄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WTO 회원국으로서 요구되는 제반 의무 사항들, 즉, 경제, 무역, 사회 구조 전반에 대한 기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WTO 협정상 제반 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베트남 정부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미

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WTO 가입에 따른 베트남의 국내 사회, 경제의 혼동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향후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 더욱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WTO 가입 이후 대두될 다양한 통상 현안 및 타 회원국과의 분쟁에 있어 베트남의 이익을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통상 전문가의 육성이다. 이러한 전문가의 육성은 장기간의 세월이 소요되는 바,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작업에 즉시 착수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베트남의 국내 시장은 마케팅 전문가의 의견이나 숙련된 노동력 및 최첨단 기술과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베트남의 WTO 가입은 이러한 국내 시장의 부정적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국내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력의 향상은 베트남 기업들이 더욱 활발히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줄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각종 통상 분쟁에 임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장은 초기에는 상당한 재정적, 외교적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베트남의 통상 이익 수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 베트남의 인적자원개발 전략

1. 베트남 노동시장 현황 분석

가. 일자리 창출의 양적·질적 성과 미흡

1986년 경제개혁(Doi Moi)이 시작된 이후 약 20년이 흘렀지만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창출효과는 기대만큼 성공적이지 못하다. 농촌부문에선 불완전고용(underemployment), 공공부문에서는 과잉인력 고용(redundant labor)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이 사실은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고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부문에서의 경제성장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과잉노동력(surplus labor)이 흡수될 경우 노동력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질적으로도 '산업화를 통한 고도성장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구조를 갖고 있다.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제조업 대형 사업장보다는 '서비스 부문의 소기업'에서의 고용창출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서비스 부문의 고용은 대부분 자영업 및 소기업의 도시 비공식 부문(urban informal sector, UIS)이다.

도시 비공식 부문은 고용탄력성이 큰 부문, 즉 같은 성장률에서도 고용흡수력이 높은 부문이고, 내부적으로는 '상대적 고소득 자영업주'가 많은 소위 upper-tier 도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도시 비공식 부문의 확대가 '고용친화적 경제발전 전략'의 하나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도시 비공식 부문은 첫째, (고용탄력성은 높을지 모르지만) 자체적인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진보(생산성 향상)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경제성장이 낮은 단계에서 실업자를 일시적으로 흡수하고 있는 역할은 수행할 수 있을 뿐,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의 토대(base)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상대적 고소득의 upper-tier에서의 소득창출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소비)가 지속되어야만 가능한데, 이는 다른 부문에서의 동력으로 경제성장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제조업 부문 내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이럴 경우 고용창출의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본축적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가격)우위 확보 등에서 극히 불리하며, 특히 경쟁국인 중국은 대기업 브랜드를 통해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한 고용창출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나. 베트남 노동력의 강점과 약점

노동공급 측면(노동력 관점)에서 보면, 양적으로는 인구가 8000만에 육박하며 이 중에서 15-44세의 젊은 인구층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질적으로도 문맹률이 4.3%로 매우 낮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업적 지식(skill)과 정신적 태도(work discipline 등) 측면에서 (특히 농촌에서) 아직 미숙한 노동력이 많다는 사실이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학력의 노동력이 많은 농촌부문에서의 미숙련노동자의 비중은 2003년 현재 여전히 86.5%에 이르고 있으며, 도시부문도 2003년 현재 54.5%의 노동력이 미숙련노동자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잦은 결근 및 이직, 노동과정에서의 집중력 부족 등의 노동규율(work discipline)의 문제가 약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산업부문(industry sector)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달리 말하자면, rural sector를 벗어나기를 원하는) 열망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도 산업화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 고학력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베트남에서의 실업은 기본적으로 도시부문에서의 현상이며, 농촌에서는 잉여 노동력이 실업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근로시간이 적은 불완전고용(underemployment) 노동력으로 분류된다. 1998-2003년간 전체실업률은 평균 6% 수준으로 그리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5-24세의 청년 중 4년제 대학과 2년제 전문(기술)대를 졸업한 고학력자의 실업률이 10%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고학력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첫째, 고학력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자본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교육이 양적으로는 팽창했지만 질적으로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설사 높은 수준의 기술에 기반을 둔 자본투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대졸자가 습득·보유하고 있는 지식의 내용과 수준이 산업현장에서 엔지니어나 관리자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베트남의 산업부문을 lead해 왔던 공기업의 경우, 경영성파가 양호하지 못한 반면에 기존 종업원(insiders)에 대한 고용보호가 철저하였고 정년도 남성 60세, 여성 55세 매우 길었기 때문에 신규채용의 여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했고 이것이 공공부문 취업을 선호하는 고학력 청년 근로자의 취업기회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고학력 청년들이 눈높이를 대폭 낮추어서 저임금의 직종에라도 취업을 할 수 있겠지만, 대졸 노동자에게는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의 2.34배에 달하는 별도의 차별화된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쉽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세미만 대졸자는 경제개혁 이후에 교육을 받은 세대로서, 자본주의 마인드 및 시장경제 원리에 대해 선배 세대 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세대이므로, 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즉, 이들에게 더 많은 취업기회를 줄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이 요구된다.

라. 미진한 기업개혁과 high-tech 인력의 부족

공기업(State Owned Enterprises, SOEs) 민영화는 농업(토지)개혁과 함께 베트남 경제개혁(Doi Moi)의 핵심사항이었으나, 노동자의 반발을 우려한 정부의 정책적 고려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다.

결국 기업개혁은 공기업 민영화 추진 자체에 있기 보다는 민영화 이후에 과연 (민영화된) 그 기업들이 경영효율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 될 수 있을 것인가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보호의 장벽이 걷힌 상황에서 privatized SOEs가 그 기업들(old SOEs)간에, 그리고 국내민간기업과 외국투자기업들과의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의 문제가 향후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될 것이다. 베트남의 기업개혁은 민영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기업개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인프라로서 기업의 인적자원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베트남의 경제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는 바로 high-tech 인력, 즉 (1)기술개발을 주도할 R&D 인력, (2)충분한 자본주의 마인드를 갖고 효율적인 기업경영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top & middle management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교육의 수월성(excellence) 확보를 위한 교육개혁, 특히 대학개혁, 높은 수준의 기술과 연계된 산학협동과 이를 통한 기술교육, 해외유학 및 기술자 양성을 위한 전략적인 국가 재정 투입 등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마. 노동보호 규제의 비효율성과 노동시장의 경직화

베트남의 노동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는 1994년의 Labor Code 제정과 2002년의 동법 개정으로 이루어진다. 노동조합 설립 의무화, 사회보장제도 등이 현실에서 잘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연 200시간 내의 초과근로시간 규제도 비현실적이다. 그런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노동보호 규제를 존속 혹은 강화시킬 경우, 자본투자 의욕만 저하시키고 노동시장의 경직성만 증가시켜서 결국에는 노동자 대중 전체에게 불리한 결과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2. 노동시장 개혁의 기본방향과 전략

가. 빈곤감소를 위한 고용창출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US 1\$/1인1일’ 을 빈곤선으로 가정 하였을 경우, 10년 전에 전체 국민 중 58%에 달하던 빈곤층의 규모는 1998년에 37%, 2002년에는 29%로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이며, 앞으로도 여전히 빈곤감소가 최우선 정책목표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빈곤계층의 90%가 농촌부문 인구이므로 베트남의 빈곤타파 정책의 1차적인 대상이 농촌 노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 빈곤의 根因은 ‘일자리(일할 기회) 부족 = 소득창출의 어려움’일 것이다. 자칫 신규 일자리 창출 보다 기존 근로자의 소득(임금 및 고용)보호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둘 경우, 빈곤감소의 속도는 더더지고 이로 인해 소득불평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경제개발 초기에는 절대빈곤 노동력의 대부분이 농촌부문에 있었으며, 국가는 농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략(일명, 새마을운동)과 산업부문의 고용창출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산업화의 급속한 추진과 산업부문에서의 고용창출을 위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은 투자자본이었으며, 투자자본 조달을 위해서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외국자본 조달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을 최대한 경쟁시장의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나. 일자리 창출 전략의 초점을 제조업 대형사업장에 맞추어야

제조업에서의 성장과 고용창출은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볼 때 질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장기적으로 고임금의 고용을 많이 창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조업은 기술개발에 의한 노동생산성 향상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부문이다.

제조업 부문 내에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이 추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 가격경쟁우위, 브랜드 파워 등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 일자리 창출의 애로 요인을 해결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첫번째 애로요인인 job skill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unskilled labor 에 대한 효과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추진되어야 한다. 베트남의 직업훈련은 여전히 양적으로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농촌지역에 새로운 산업단지가 건설될 경우 필요한 인적자원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양성 직업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질적으로도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산업수요와 괴리된 훈련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주요 문제이며 또한 커리큘럼의 내용, 시설, 교사의 질 모두 낙후된 것이 문제이다.

현재 베트남의 경우, 봉제 등 경공업, 오토바이 수리 등 단순 서비스 부문에서 필요한 단기간에 습득 가능한 low skilled 인력의 경우에는 훈련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먼저 훈련생의 입장에서 충분한 훈련수요가 있을 것이다. 예산제약으로 인해 훈련수요가 위축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이고, 또 베트남

남의 경제발전 단계에서 볼 때 충분한 기업수요로 인해 취업시의 기대 훈련이득이 훈련비용 보다 큰 경우이다. 그리고 기초투자 비용이 적고 및 어려운 기술이 아니므로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훈련서비스를 공급하는 민간 훈련기관이 충분히 존재할 것이다.

한편 기계, 전자 등 중공업에서 필요한 장기간(적어도 1년 이상)의 훈련기간이 요구되는 skill의 경우(high skilled, 중공업 인력)와 IT 등 첨단 하이테크 인력의 교육훈련에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교육훈련생의 입장에서 예산계약으로 인해 훈련수요가 위축된다. 또 쉽지 않은 기술이고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수요부족으로 인한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민간기관에 의한 훈련공급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high-skilled & high-tech 인력에 대한 훈련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것이 효율적인 방식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① 국가가 산업(기업)에서 필요(수요)로 하는 스킬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것을 교육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국가=기술적 leader). ② 국가가 필요스킬의 수준을 산업의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높은 질적 수준의 직업훈련 서비스를 공급할 충분한 유인을 갖고 있어야 하며 (incentive), ③ 국가가 직업훈련에 투자할 충분한 재원이 있어야 한다.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인데, 베트남에서의 상기 3가지 조건과 관련된 현실을 볼 때 만족스러운 답을 도출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실제로 현재 베트남의 국가주도 직업훈련 시스템은 하이테크 인력 양성 능력 부족, 산업수요와의 괴리 및 프로그램의 경직성, 안정적 재원 확보의 실패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현 체제를 고수하면서 보완조치를 강구하는 전략 보다는 직업훈련 시스템(들)을 완전히 다시 세우는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두번째 애로요인인 근로자 (특히 농촌출신)의 노동규율 부족과 산업부문, 즉 기업에 대한 충성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교육과 적절한 인적자원관리 방식의 도입이 요구된다. 첫째, 장기적으로는 베트남 학교(교육기관)에서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이지만, 단기적으로

는 기업들이 종업원에 대한 직업훈련과 별도의 정신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근무기강이 양호한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을 보상에서 철저히 차별화하는 인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아주 간단하게는 무결근, 장기근속 등에 대한 특별수당 추가지급 등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며, 다른 국가에서도 이러한 인사관리 방식이 성공을 거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둘째, 산업부문에서 오래 머물러 하지 않고 쉽게 농촌으로 회귀하려는 의식적 경향은 아직도 산업부문(혹은 도시부문)에서의 매력도가 그곳에 장기 정착할 유인을 가질 정도로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식의 [기업=평생직장]의 비전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노동보호 규제의 합리성·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적 노동보호가 실제 노동자 보호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그리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국가 제일의 목표가 되어야 할 빈곤감소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다. 압도적 다수의 노동력이 종사하는 농촌부문, 도시비공식부문, 소영세 기업 부문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제한적인 보호라는 점, 실제 노동시장 상황과 괴리되어 있는 과보호 성격의 규제인 경우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어 법의 실효성이 제한적인 점, 그리고 근로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설사 감독을 통해 적발하더라도 사업주가 뇌물로 해결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한국도 과거에 이러한 경험을 하였다는 사실 등의 한계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파업의 주된(1위-5위) 원인이 임금(초과임금 포함)체불, 초과근로시간 과다,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불 위반, 노동계약 서명 여부, 정리해고 수당 미지급으로 거의 개별적 노사관계 관련 법적 보호의 미이행과 관련된 것이다. 이는 단체교섭이 임금결정의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점과 개별적 노사관계가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동부문의 과제

민영화 이후의 공기업에서의 고용창출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경영효율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 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다. 그렇다면 기업의 내부 경영혁신을 추진한다면 그 핵심내용은 무엇인가? 하드웨어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력의 기반인 기술혁신과 가격우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R&D와 생산에서의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하이테크 인력의 확보이다.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과학기술인력과 경영진을 확보해야만 할 것이다.

첫째, 민영화된 구 공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 동시에 기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시장경쟁의 원리가 잘 작동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경쟁력이 없는 기업을 퇴출(exit) 시키거나 경쟁력 있는 기업에 M&A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만 경쟁력 있는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고 규모가 커질 수 있다. 현재 민영화된 기업들의 대부분에서 여전히 대주주가 국가이므로,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만 있으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럴 경우, 퇴출, M&A, 감량경영 등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원조정의 대상범위도 확대되고 그 규모도 민영화 과정에서 예상했던 수준 이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는 실직자에 대한 보상 재원을 미리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둘째, 하이테크 인력의 양성은 고등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대학교육의 수월성(excellence) 확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교수 인사관리 개혁을 통한 교수자원의 질적 수준 제고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대학에서 부족한 기술교육을 보완·대행해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관인 외국인기업을 교육주체로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기업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및 공학교육 기관을 설립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전략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성된 하이테크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베트남에 남을 수 있도록, 즉 brain drain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

마. 노동시장의 활성화

궁극적으로 농촌과 공기업 부문에서의 과잉인력을 해소하려면, 신규 일자리를 충분히 많이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문간 노동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이 생산성이 더 높은 부문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부문간 임금 차이가 생산성 차이를 반영할 수 있어야, 즉 임금이 노동시장의 가격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베트남의 직업훈련체제 개혁

가. 베트남의 현실

베트남 직업훈련체제의 문제점은 ①비숙련근로자의 규모는 엄청난데, 직업훈련 기관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농촌부문의 직업훈련기관의 양적 확대가 절실하다는 점, ②특히, 경공업이나 서비스 부문에서 필요한 저숙련 기능이 아니라 중공업 육성을 위한 고숙련기능의 인력 양성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에서도 크게 미흡하다는 점, ③산업수요와 괴리된 훈련 내용, 낙후된 시설과 교수법, 교사의 질적 수준 정체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①예산증액, ODA 등을 통한 재원 마련, ②교육훈련에의 민간투자 확대 유인 (social partnership), ③국제 협력 강화 (프로젝트 베이스의 자금 지원), ④산업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 ⑤ 교수방법의 개선, ⑥교육행정 개혁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나, 재정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 재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직업훈련 체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미흡하고, 여전히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민간의 참여를 일부 확대하는 방향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베트남의 공공부문이 과연 하이테크 기술을 교육시킬 수 있는 능력과 효율적인 운영을 장담할 수 있을 만큼의 유인체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다. 선진국 정부들도 이 부분에 대한 실패 경험이 있는데, 사회주의와 관료주의 마인드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베트남의 정부가 주도적인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 직업훈련에 대한 이론적 논의

직능의 유형은 첫째, job에 대한 전문성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직능(job-general skill), 전문직능(job-specific skill)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직업훈련과 자격은 전문소양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특정 기업에서의 유용성(effectiveness)을 기준으로 하여 직능의 기업특수성(firm-specific) 정도가 결정되며, 직능의 기업특수성 여부에 따라 직업훈련의 비용부담 주체, 훈련공급 주체가 달라진다.

〈표 2-4-1〉 skill의 유형

	일반직능(job-general)	전문직능(job-specific)
기업일반직(firm-general)	general skill (언어, 수리, 협동심 등)	산업특수적 스킬
기업특수직(firm-specific)	다능공, 집사 등	기업특수적 전문가

훈련의 비용부담과 이득환수 간에 시간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시장보다도 불확실성이 크게 존재하며, 이로 인해 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 노동력 이동성이 높을수록 기업이 투자한 skill의 환수가 어려워질 것이며, 기술발전의 속도가 빠를수록, 훈련비용의 환수 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다.

직능의 기업일반성(firm-generality)이 높을수록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사회적 수요가 많은 산업의 산업특수적 전문소양), 충분한 수준의 교육투자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스킬의 기업일반성으로 인한 훈련 투자한 인력의 이직가능성 (소위 poaching의 가능성)을 우려하여, 기업차원에서는 직업훈련 투자를 꺼리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직업 능력과 경제적 능력의 동시취약으로 취업과 훈련이 모두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과거와 같이 공공부문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 보다 즉, 정부예산을 지원하되 이 사업을 위한 별도의 공공부문을 설립하기보다는 '가장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기관'에 공공, 민간 구분 없이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기업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이 직접 사업을 수행할 경우, ①기업이 원하는 직능이 무엇인지(skill 수요의 내용)에 대해 훈련기관이 잘 모르는 현실적인 문제(정보의 불완전성)가 해결된다. 수료생의 취업실적 등의 지표를 갖대로 훈련기관을 평가한다고 해도 평가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며, 설사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뒤쳐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접근하기에는 기술진보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②향상 및 재훈련의 경우,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재직근로자 및 실직자의 현재위치 (보유지식의 내용 및 가치, 학습능력)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주체는 기업이다. ③피훈

련생 입장에서도 훈련의 궁극적인 목표는 배움 그 자체라기보다 취업이므로 노동 기능의 수요 주체인 기업이 훈련주체로 나서게 될 경우, 훈련의 호응도가 높아져서 훈련규모도 더 커지게 될 것이고 비용부담의 유인도 더 높아질 것이다.

다. 한국의 공공훈련 체제 도입의 경험

한국의 기능인력 양성은 기본적으로 일본을 쫓아가되, 정책적으로 독일식 방식을 일부 가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농업사회에서 산업화가 급속하게 추진되었던 한국은 과거 일본의 양성공 방식, 즉 기업이 직접 필요한 인력을 훈련시키는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기업은 자사에서 필요한 기술에 대한 훈련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firm-specific skill의 훈련), 이에 대한 기업과 종업원의 훈련유인 제공을 위해 종신고용제가 정착한 것이다. 기업의 특수한 숙련의 경우 기업도 훈련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회수하려면, 훈련 후 상당기간 종업원이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어야 하고, 종업원 입장에서도 다른 기업에서 별로 알아주지도 않을 기술을 습득할 유인이 있으려면 현 기업에서 고용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초기 경공업 중심의 발전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단기간의 (그리고 적은 비용의) 자체 훈련으로 필요인력을 조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다가 70년대 말부터 박정희 정부가 중공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조업 기능인력의 양성 필요성이 커지게 된다. 이미 표준화된 산업기술 (선반, 밀링, 용접, 전자회로 등)을 습득한 인력의 수요가 대량 늘어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때에도 물론,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필요 skill을 양성·조달할 수 있었지만, 중소기업에게는 그러한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렇다고 이러한 기술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민간 훈련기관도 존재하기 어려웠다. 민간 훈련기관의 능력도 문제이지만 비싼 훈련비용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민간의 참여가 극히 미흡했던 상황이었다. 즉, 과소투자가 우려되는 사회적 편익 (social benefit)이 매우 큰 직업훈련의 확대를 위해 정부가 직접 투자, 공공훈련원을 직접 설립하며 직업훈련을 주도

하게 된다. 또한 경제적 능력의 취약으로 고등학교 미진학한 청소년에게 '교육→일자리'를 통한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는 '직업훈련분담금' 제도를 도입했다. 직업훈련의 능력 (지식+시설+자금) 이 있는 대기업에게 자사 직원이 아닌 양성훈련의 경우에도 직업훈련 실시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대기업에게 부담금(levy)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공공훈련의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다. 공공훈련 이수자가 대기업에 입사하게 될 경우 결국 대기업의 훈련비용을 절감하게 해주는 것이고, 설사 중소기업에 취업한다고 해도 대기업의 하청기업일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대기업에 간접적인 이득이 될 것이라는 것이 부담금 부과 논리였다. 또한 정부가 공공훈련을 통해 기업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poaching 우려에 의한 과소투자 문제를 방지할 수 있고 (공공재 생산의 논리), 국민 세금에 의한 일반회계 재원을 동원하는 것 보다 수익자 부담 원리에 부합한다는 논리도 있었다.

한편, 공공훈련의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해 직업훈련 교사에게는 정규교육 교사 보다 월등히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등 우수인력을 교사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국립 기술교육대학도 설립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리인 비용 (agency cost)'에 기인한 정부의 실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컨대, 교사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해당교사의 전공강좌는 수요가 없음에도 계속 개설되거나, 혹은 일만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에 신규사업 진출에 소극적이게 됨에 따라 훈련 프로그램 폐쇄 및 운영의 경직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조직팽창 논리에 의한 과도투자, 예컨대, 인건비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축소해야 할 사업을 계속 붙들고 있음으로써 과잉훈련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았다. 혹은, 정부 자신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부추기는 경향도 많이 나타난다.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원칙 없이 잡다한 사업을 부여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공공훈련의 역할이 제조업 생산직 양성훈련에서 취약계층 고용촉진 훈련 (서비스직 포함)으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과거 개발연대의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공공훈련기관의 훈련시설과 교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쉽지 않다는 공급자 논리로 과거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훈련수요가 감소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사업은 존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라. 주요선진국 직업훈련 시스템 변화의 시사점

첫째, 직업훈련 공급주체로서 기업의 참여 폭이 획기적으로 넓어지고 있음. 특히 주목할 사실은 산학협동의 차원을 벗어나 직접적인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School to Work로부터의 Work to Work로의 전환'이 대표적인 예이다. 본래 기업특수적 직능 (firm-specific skill)의 훈련의 경우는 기업이 직접적인 공급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의 기업참여 확대는 기업일반적 직능 (firm-general skill)의 경우에도 확대되고 있다. 이 경우 대부분 전문직능(job-specific skill)이지만, 심지어 정규교육의 못이었던 일반직능(job-general skill)까지 기업훈련의 내용이 되기도 한다. (예: 미국 근로자의 부족한 기초소양 교육을 기업이 수행)

둘째, 기업일반적 직능(소양)에 대해서도 기업훈련이 활성화되려면 기업 및 근로자 참여의 인센티브(유인)가 보다 커지고 분명해져야 한다. 훈련비용을 기업이 일부 부담할 경우에는 훈련비용 회수 이전에 근로자가 다른 기업으로 이직할 (소위 poaching) 가능성이 적어야만 한다. 한편, 근로자의 참여유인이 있으려면 훈련 이후의 보상이 충분하고 또 확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훈련을 통한 직능수준 제고가 기대만큼의 임금상승으로 나타난다는 확신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지역·업종별 네트워크를 통한 '집단적 (노동)수요독점 (collective monopsony)'로 기업간 임금격차 축소로 poaching의 가능성을 낮추는 한편, 숙련·비숙련간 임금격차를 크게 하여 근로자의 훈련유인을 높이고 있다.

셋째, 업종별 특성화와 지역성 강화가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산업특성화 개념이 없는 지역중심의 네트워크는 목표가 없는 전략이고, 지역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는 중앙집권적 접근의 산업특성화 전략은 효율성이 지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업종·지역 결합의 부문(cell)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직업훈련 활성화의 핵심요소이며, 네트워크 구성에 있어서 물론 학교·기업·지자체 3자간의 연계가 중요하지만 (특히 School to Work의 경우), 기업들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특히 Work to Work의 경우)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기업의 직접적인 훈련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한 후, 이에 대해 평가할 때 잘못된 평가지표를 쓸 경우 훈련의 본래 목표가 실종되거나 형식적으로 추진되어 훈련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영국의 경우, 취업률에 집착한 성과평가, 단위노동비용으로 묶어놓은 프로그램 편성 등 평가 및 통제지표가 잘못된 점에 일부 기인한다.

다섯째, 평생교육의 場은 지역성(인근 기업과의 연계성), 지리적 접근성(훈련생의 교통편의), 교과과정의 유연성, 교육대상에 대한 개방성 등의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는 곳이어야 한다. 미국의 Community College가 대표적인 예이다.

마. 베트남의 정책 과제

베트남의 직업훈련 시스템은 정부가 직접 사업주체로 나서는 공공훈련이 주도하는 모델이다. 다만, 현행 체계로는 산업수요 변화를 따라가기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민간의 참여를 일부 확대하는 방향에 머물고 있다. 향후 과제의 핵심은 능력과 유인 측면에서 공공부문이 갖고 있는 한계를 베트남에서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다

한국의 경험을 보면, 전문화된 능력을 중시하여 정부 조직이 아닌 정부출연 기관과 같은 공공기관이 담당하였으나, 베트남의 경우는 정부 조직이 직접 담당한다는 것은 전문성 부족, 조직 경직성 등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자본주의 마인드가 부족하고 정치성이 강한 정부조직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제조업 부문의 대부분의 기업이 국영기업이었고 이들 대부분이 인력양성을 공공훈련에 의존하는 타성에 젖었다는 것도 문제이다.

공공훈련이 주도하는 과거 개발도상국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은 일시적·제한적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산업수요의 변화를 쫓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다른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결국 한국이 겪은 시행착오를 베트남이 똑같이 경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한국 방식에 대한 오해부터 해소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일본식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되, 일시적으로 크게 부족했던 산업기초 기술에 한하여 국가가 보완해

나가는 방식이었다. 공공 훈련기관이 인력양성의 대부분의 몫을 차지하는 국가주도 방식이 아니다. 그리고 독일 방식에서도 산학협동과 도제제도를 통해 실제로 많은 기술훈련이 기업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당장 시장실패가 나타나서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한 부분에 한해 최소한의 부분을 공공훈련으로 지원하되, 산업계와의 밀착도가 매우 높은 새로운 직업훈련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방식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공공훈련의 역할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공공훈련은 꼭 필요한 부분에서 최소화 한다’는 전제하에 다음 몇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미 표준화된 산업기술인데도 불구하고, 민간 훈련기관은 그러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술력(능력)이 없거나 수익성이 없어서 훈련사업을 수행하려 하지 않고, 기업들은 poaching을 우려해 직접 인력양성에 나서지 않으나, 일반적인 기술이라서 산업수요는 매우 폭넓게 존재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중공업 육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본기술인 선반, 밀링, 용접, 전자회로 등 기본 과목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공공훈련이 필요한 영역에서도 정부나 공공주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 이외에 민간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거나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도입했던 직업훈련분담금은 직업훈련 사업수행 능력이 있고 직업훈련에 의한 인력양성의 편익을 가장 많이 얻어가는 대기업으로 하여금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강제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능력이 인정되는 일부 민간 직업훈련기관에 대해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도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예로는 한국의 인정직업훈련원을 들 수 있다.

둘째, 기업주도 훈련 시스템의 모델 구축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크게 세가지로 구분해 보면 ①대형 규모의 국내 및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도록 의무화 (직업훈련분담금 제도 도입)한다. 현재 베트남에서 가장 능력 있는 훈련 주체는 민간, 특히 외국 대기업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자체 고용할 인력들에 대한 훈련뿐만 아니라, 보유 시설을 활용하여 외부인력 양성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책임을 지게 한다. 동일한 세금 부과 방식이라도 기업의 직접적인 참여로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수익자 부담 원리에 보다 충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②산업정책, 지역정책과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연계하여, 업종·지역별 훈련 사업을 추진한다. 경쟁이 심하고 자체적인 훈련투자가 쉽지 않은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에서는, 산업특수적 스킬 양성을 위한 ‘업종별 공동훈련’의 방식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특화된 업종을 기반으로 하여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단지내에 해당 산업특수적 스킬을 훈련시킬 수 있는 공동훈련원을 설립 운영한다. 이르기 위해서는 현재 업종 mix의 시너지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베트남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글로벌 기업의 베트남 진출시 사내 기술대학 설립을 유도한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할 경우, 그 기업이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기업인사가 교수로 참여하는 ‘기업주도의 기술대학’ 설립을 유도한다. 여기서 해당기업에 필요한 인재만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며, 글로벌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예컨대, 대학재정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베트남에 투자할 시 조세를 감면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4. 노동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혁

가. 하이테크 인력의 양성

대학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개혁 방안으로서 중국의 대학개혁 모델을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한다. 중국 개혁의 핵심은 교수 개혁과 선택과 집중에 의한 국가의 대폭적인 재정지원이다. 대학교육의 질적 개혁의 핵심은 지식 창출 및 전수의 주체‘인 교수에 있으므로, 교수의 연구 및 강의 능력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임용탈락부터 고액연봉지급까지 차등할 수 있는 능력주의 교수 인사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택된 대학에 대해서는 교수 개혁 등 구조조정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대폭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육성한다.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교수 이외의 또 다른 핵심요소는 대학의 재정 능력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사실은, 베트남 대학에서도 필요한 것은 핵심인

재들을 선별·육성할 수 있는 엘리트 교육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초중등교육은 대중교육이, 그러나 대학교육에서는 엘리트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가 선별 지원하는 대학은 엘리트 교육 중심으로 가되, 다른 대학들은 경쟁체제로 간다. 따라서 민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대학간 경쟁도를 높이는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교육시키기 어려운 첨단 과학기술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으로 해외 우수대학에 유학생을 보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개인에 대한 국가의 선별적인 지원이고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가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보다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방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재정 지원 대비 기술 습득 효과 극대화를 생각해 볼 때, 선진국의 세계적인 대학으로의 유학 보다 한국과 같은 중진국의 대학으로의 유학을 보다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예컨대 베트남에서 보다 빨리 활용할 수 있는 응용기술은 미국 보다 한국이 더 많이 갖고 있을 것이며, 한국은 미국 보다 학비가 훨씬 저렴하고, 한국 국내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 등의 문제로 외국(특히 후진국) 공학인력에 대한 매력을 많이 갖고 있는 실정이다.

하이테크 인력을 양성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베트남에 돌아와서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만 인력양성의 성과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일정기간 국가에 봉사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들 수는 있지만, 국비 유학생 등 정부가 직접 지원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인도 등 다른 일부 국가의 경우 실제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외국으로 가 버리는 것도 여전히 큰 손실이다. 따라서 베트남 내에서 이들이 활약할 수 있는 기회와 충분한 보상이 제공되는 등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국가가 직접 이들을 고용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경제개발 초기에 KDI (경제부문 인재), KIST 및 KAIST (과학기술 부문 인재) 등 공공기관에 핵심인재들을 고용하고 정부재정으로 획기적인 보상을 해 줌으로써 인재의 국내유치에 성공했다. 그러다가, 1997년 IMF 경제위기시 기업의 R&D비용절감으로 기업내 과학기술 인재의 위상이 위축된 것에 더해, 정부까지 예산절감의 구호 아래 공공연구기관의 과학기술인

재에 대한 대우가 저하되면서, 국내의 과학기술인재가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해외 국가로 빠져나가는 brain drain 문제가 발생했다. 이 때 소위 역선택(adverse-selection)이라 불리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재부터 빠져 나가게 될 것이 분명하다.

나. 노동보호 규제의 개선

개별적 노사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기존의 노동보호 방식을 집단적 노사관계의 기능을 회복하고 그 대신 개별적 노사관계의 보호 수준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적용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잘 지켜지지도 않고, 투자위축으로 빈곤타파를 위한 고용창출을 방해할 수 있는, 과도한 보호 수준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재검토 요망 제도는 '총 초과근로시간 제한' 제도이다. 1년 초과근로시간을 200시간(일부 노동집약 제조업의 경우는 300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베트남 실정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이다. 초과근로는 정규직의 고용보장의 완충장치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관행이므로, 이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고용을 제한적으로 더 늘릴 수 있을는지 모르나, 이로 인해 비정규직 활용 확대 및 기업의 훈련투자 기피 등의 단점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정규직의 고용안정은 베트남 근로자의 농촌회귀를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로서 베트남 산업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관행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많은 국가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중도에 포기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제도개혁으로 인한 이해관계의 변화를 우려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노동 부문의 새로운 제도 도입은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며, 사회주의 국가 전통을 갖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전격 도입하게 보다, 일정 지역에 한시적으로 도입해 본 이후에, 실험을 거쳐 성공한 제도를 추후에 확산 도입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도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의미와 함께, 또 많은 경우 제도 설계 자체보다도 운영이 훨씬 더 중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는 의미도 있다. 예컨대, '국제자유지역'내에 국한하여, 노동보호와 관련된 새로운 규제

및 물을 적용해 보고, 이러한 새로운 규제와 물이 넓은 의미로 과연 노동자 보호 관점에서 더 열등, 혹은 우등한 제도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 공기업 개혁을 위한 한시적 기금 마련

공기업의 개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는 고용조정의 원활화를 지원할 수 있는 자금, 즉 실적에 대한 금전적 보상에 사용할 기금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때, 필요한 재원은 「고용조정 대상자 즉 실직자들의 희생으로 '덕'을 보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적 이득만 누리고 사적 손실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즉, 해당 공기업의 '주주'와 '살아남는 자'들이 부담하는 방식을 찾아본다.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면, 주주의 부담은 '떠나는 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으로, 남는 자의 부담은 '능력별로 각출하여 실직자 위로금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후자의 방식과 관련하여 볼 때, 장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어려움이 없는 기업이라도 이러한 목적의 기금을 기업차원에서 적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일종의 실업 私보험의 기능을 갖게 될 것이다. 이 기금은 '떠나는 자에 대한 남는 자의 배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불경기에 대비한 호경기의 저축'이라는 의미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제5장 베트남의 거시경제안정화

1. 서론

본 연구의 제목은 “베트남의 거시경제안정화”이다. 연구목적은 베트남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도록 하는 거시경제안정화 정책을 연구하는 데 있으며 한국의 성장과 안정화 경험을 토대로 거시경제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은 지난 40년간 압축성장을 이룩하였다. 공식적인 GDP 관련통계가 1970년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활용한 소득변수는 그 이후 기간의 통계이다. 한국의 일인당 GDP는 1970년에 \$254달러에서 1996년에는 \$12,197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외환위기 여파로 1998년에는 \$7,355로 급락한 후 2004년에는 \$14,162로 회복되었다.

한국의 압축성장은 몇 가지 부작용도 수반하였다. 한국은 1990년대 초까지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렸고 외환위기 직전까지 경상수지 적자가 핵심문제였다. 이론적으로 경상수지적자는 저축을 초과하는 투자에 기인한 것이며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상수지적자는 거시경제 불균형 혹은 불안정을 초래했다.

한국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장지향적 경제시스템의 재구축, 효율적인 생산 및 금융시스템, 개선된 기업지배구조 등의 일련의 개혁조치를 시행하였다. 한국이 외환위기 이전에 경제시스템을 개혁했더라면 위기를 당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경험을 베트남의 경제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어 적용한 것이다.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은 베트남의 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발전과 성과, 3장은 베트남의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추이, 4장은 한국의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의 진행과 성과, 5장은 한국의 주요 거시경제변수 추이, 6장은 한국의 거시경제 불균형 점검, 7장은 신용정책, 통화정책, 재정정책, 환율정책 및 임금정책 등 한국의 제반 거시경제정책, 8장은 베트남의 거시경

제안정화를 위한 정책제안과 단평으로 구성하였다.

2. 베트남의 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45년 전후 회복기간 중 북베트남 경제는 농업과 교통을 중심으로 빠른 회복을 실현하였다. 북베트남은 1958년 이후 사회주의로 전환, 중앙정부주도의 개발모형을 확립한 후 생산수단을 국유화하였고 국가는 책임지급과 배급표 발급을 통한 보조금지급제도에 의한 생산물 분배를 수행하였다. 1961-65년의 제 1차 5개년 계획으로 북베트남은 구축기에 진입하였다. 이 시기에 베트남은 정부는 교육개발, 건강보전 및 각종 사회사업에 관심을 기울였고 새로운 메커니즘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여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설비도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마련된 경제시스템은 결점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반면에 남베트남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갖추었다.

남베트남이 1975년에 해방된 이후 통일 베트남은 1976-80년에 제 2차 5개년 계획 시행하였다. 이 계획에 포함된 대부분의 목표는 수행되기 어려웠다.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4%, 인구증가율은 2.3%였으며 대규모의 재정적자가 발생하였으며 물가는 20% 이상 상승하였다. 게다가 많은 투자 계획은 미완성인 채 종료되었다. 제 3차 5개년 계획 (1981-85)은 당초부터 무리한 목표 설정으로 인하여 불균형이 유발되었으며 급기야는 위기에 봉착하였다. 생산이 침체되고 인플레이션은 1980년대 초에 30-50%수준에서 1985년에는 587%, 1986년에는 775%로 폭등하였다. 이런 상황 하에서 베트남 공산당은 “도이모이”(개혁)를 진행하였다.

제 4차 5개년 계획 (1986-1990)에서 정부는 예전처럼 투자 촉진을 성장의 추진력으로 삼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를 제대로 관리하고 통화정책과 농업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각종 해법을 제시하였다. 과거의 메커니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새로운 메커니즘도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각종 개혁조치들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기간 중 베트남의 GDP는 3.9% 상승하였다.

제 6차 베트남 공산당대회는 2000년까지 사회경제적 상황을 안정시키고 발

전시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제 5차 5개년 계획 (1991-1995)을 시행하였다. 이 계획의 가장 큰 장애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봉쇄 및 금수조치였고 동구와 구소련은 심각한 경제위기 봉착하였다. 이 때 베트남으로부터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루블화 권역으로의 무역증가율은 현저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개혁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호의적인 경제여건이 형성되었고 개별경제주체들이 새로운 관리메커니즘에 점차 적응하였다.

제 6차 5개년 계획 (1996-2000)의 중기 목표는 21세기의 심각한 사회문제의 해결, 견고한 국방과 안전, 후진과 빈곤으로부터 해방,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 저축증대, 보다 높은 상태로 진전하기 위한 기반구축 등 더욱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GDP 성장률 목표를 연 9-10%로 정하였으며 국가재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세수입의 증가와 재정적자의 축소를 목표로 채택하였다.

국회가 승인한 제 7차 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전반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빠르고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 산업화와 현대화를 지원하는 방향에서 경제와 노동구조의 극적인 재조정
-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의 획기적 개선
- 무역과 투자연계의 확대
- 교육, 훈련, 과학기술 분야의 개혁과 인적자본의 완전가동
- 대규모 일자리 창출
- 기본적으로 기근의 근절과 빈곤가계 수의 획기적 감축
- 사회악의 제거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강화
- 사회주의 편향성 시장경제의 개발 진전
- 정치적 안정, 사회질서와 안전, 국가독립, 주권, 지역통합과 안전보장의 확고한 방어

베트남의 지난 5년간 (2001-2005) 경제활동에 나타난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첫째 빠른 경제성장률이었다. 2001-2005년 동안 경제성장률의 예상치는 7.4%로 과거 5년보다 높았다. 농림어업은 3.4%, 산업과 건설업은 10.2%, 서비스업

은 6.9%의 높은 성장이 예상되었다. 농림어업 총생산의 예상증가율은 5.1%로 목표치를 상회하였고, 산업과 건설업 총생산의 예상증가율도 15.4%로 목표치를 2.3% 포인트나 상회하였다. 서비스업 총생산의 예상증가율은 7.5%로 목표치와 근사하였다.

둘째, 산업화와 현대화를 향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효율적으로 재조정되어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 GDP 중 농림어업의 비중은 2000년의 24.5%에서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20.4%와 19%로 축소되었다. 농림어업의 당초 계획된 목표치는 20-21%였다. 산업과 건설업은 2000년의 36.7%에서 2005년에는 42%로 상승했다. 산업과 건설업의 당초 계획된 목표는 38-39%였다.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목표치가 41-42%였으나 39%에 도달했다.

셋째, 거시경제의 안정화이다. 이를 반영하여 저축과 지출 균형이 개선되었다. 지출 증가율의 당초 목표는 당초 5.5%였으나 6.2%가 증가했으며, 1인당 소비는 연평균 6% 증가하였다. 이 결과 국민생활수준의 대폭적인 향상이 이루어졌다. 저축은 계속 증가하여 경제개발을 위한 자본을 조달하였다. 소비자물가는 2001년에 0.8%, 2002년에 4%, 2003년에 3%가 각각 증가하였으나 2004년에는 9.5%, 2005년에는 5%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4.5%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개발을 위한 자본투자는 해마다 개선되어 자본동원은 2001년도에는 GDP의 34%에서 2005년에는 36.5%로 증가했다. 2000년 가격으로 평가한 2001-2005년의 5년간 투자된 총자본은 목표치를 16%나 상회하였다.

넷째, 대외경제활동의 개선이다. 최근 국제환경이 더욱 거센 시장경쟁, 투자자본 유입의 둔화되는 등으로 복잡한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국내 정치·사회의 안정과 정비된 정치적 조치의 시행으로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였다. ASEAN, WTO 등과의 국제경제관계가 강화 및 확대되었고 수출입이 활성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발계획의 약점과 문제점이 사회경제적 여건 가운데 존재한다.

첫째, 성장의 질이 좋지 않으며 경쟁의 정도가 낮다. 과거에는 성장률이 주

로 광범위한 개발요인에 기인하였다. 아직 저급기술과 생산요소의 투입만으로 가능한 전통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거시경제정책의 불안정으로 경쟁의 정도는 여전히 낮으며, 공업제품, 농산물 및 서비스 생산비는 여전히 높다. 한편 노동생산성은 유사한 개도국에 비해 낮고 노동의 질도 좋은 편이 아니다.

둘째, 경제의 구조조정이 계획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구조조정은 산업화와 현대화를 위한 발전의 수단이다. 정책의 방향은 분명하나 이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이 별로 없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경제구조는 현대화되지 못했으며 성장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집중적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자원의 사용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정부가 금융자본을 주도적으로 동원하는 능력이 부족했으며 이를 사회경제개발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 또한 국가자산, 재정 및 기업재무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했으며 정부수입도 안정적이지 못하였다. 재정지출은 경제성장 속도에 맞추어 빠르게 증가했으며, 재정으로부터의 직접 보조도 빠르게 증가했다. 자본구축에 있어서 상당한 낭비와 누수가 발생했다.

넷째, 대외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베트남 경제는 경쟁과 시장으로부터 험준한 도전을 극복하지 못했다. 수출이 경쟁적이지 못했으며 저부가가치의 원자재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중간재의 수출비중이 높으며 수출가격 전망도 좋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교육과 훈련의 질이 낮고 과학기술활동이 충분치 못하다. 부패와 사회악이 여전히 난무하고 있으며 지방주민의 생활여건이 나쁘고 소득수준도 낮다.

차기 5개년(2005-2010) 계획의 거시경제 목표는 저소득 저개발 국가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성장의 질을 개선하고, 효율성과 경쟁을 강조한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다음과 같은 기타 목표를 설정하였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의 기술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완전한 사회주의 편향적 시장메커니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경제발전과 사회문화발전의 연계를 구축한다. 교육, 훈련 및 인적자본의 질과 국민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 환경보호와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며 정치적 안정과 사회보장의 확립, 국가의 독립성과 주권의 유지를 달성한다.

차기 5개년 계획의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자원 동원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향후 5년의 생산 및 경제활동은 경제발전의 단계를 높이고 보다 큰 규모의 경제로 성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재정지출은 보조금을 없애고 모든 자원의 가동을 최적화하기 위해 민간으로부터 자본을 동원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성장과 빈곤감축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강화해야 한다. 베트남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은 빈약하므로 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셋째, 인적자본의 개발과 질의 개선이 요망되며 과학기술능력의 향상 필요하다. 넷째, 정부는 사회주의 편향성을 지닌 시장경제 메커니즘에 대한 개선, 경쟁이 심화되는 경영환경 구축, 경제통합과 협력의 가속화, 국가소유 설비의 효율성 개선 등의 세부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3. 베트남 거시경제변수의 추이

1999년 이후에 GDP 성장률은 가속되었지만 1인당 GDP성장률은 2002년 이후에 빨라졌다. 인플레이션은 2000-2001년에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으며 2002년 이후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누증되었다. 환율은 1986-1992년 사이에 급속히 절하되었고 그 이후에 절하속도가 둔화하였다. 경상수지는 2004년에 GDP의 약 4%선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이었고 무역수지는 2002년 이후 수입이 수출 초과로 지속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전수지는 GDP의 5%선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경상수지의 주요 수입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직접투자는 GDP의 4%선으로 자본유입의 주요원천이다. 총대외부채는 1989년에는 GDP의 329%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그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04년에는 36.4%로 크게 줄어들었다. 대외지불준비금은 약 2개월분의 수입액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제적 기준을 적용할 때 약 3개월분의 보유가 바람직하다. 재정적자는 현재 GDP의 약 4%선으로 5%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4. 한국의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1960년대는 한국경제 반세기 역사 가운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 기간은 신

정부의 후원을 입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출범시킨 시기이다.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2-1966)에는 자급자족의 산업기반구축의 시작했다. 경제는 소비지향적이지 않았으며 석유에 지나치게 의존적이지 않은 산업구조가 구축되었다. 이와 같은 분야에는 전력, 비료, 정유, 합성섬유, 시멘트가 있다.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7-1971) 기간에는 산업구조의 현대화와 철강, 기계 및 화학 등 수입대체산업의 빠른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표 2-5-1> 참조).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72-1976)에는 중화학공업의 추진으로 산업구조가 수출지향적 구조로 빠르게 바뀌었다. 구체적으로는 철강, 교통기계, 가전, 조선, 석유화학이 중점산업으로 선정되었다. 중화학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선정된 사업에는 원자재 및 자본재를 집중 공급하는 한편 해외자본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신산업의 주요전략 산업단지를 남부에 건설함으로써 서울 이외의 지역을 산업화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고용증대를 이룩하였다.

<표 2-5-1> 한국의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

(단위 : %, 억 달러)

	제 1차 1962- 1966	제 2차 1967- 1971	제 3차 1972- 1976	제 4차 1977- 1981	제 5차 1982- 1986	제 6차 1987- 1991	신경제 1993- 1997
성장률, %	7.8	9.6	8.0	6.2	8.7	9.4	7.1
(목표), %	(7.1)	(7.0)	(8.6)	(9.2)	(7.6)	(8.2)	(7.0)
인플레이션, %	16.3	12.7	16.0	18.6	3.6	6.8	5.0
경상수지	3.2	26.5	49.0	151.9	14.5	194.8	432.8
[GDP비중], %	[·]	[·]	[-5.2]	[-4.7]	[-0.6]	[2.7]	[-1.6]

제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77-1981)에는 세계 수출시장에서 효율적으로 경쟁하기 위하여 산업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 시기의 주요 전략산업은 기계, 전자, 조선 등 기술집약적이면서도 숙련노동집약적인 것이었다. 철강,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 대형 중화학공업에 역점을 두었고 그 결과 중화학공업은 1981년에 51.8%, 총생산에 대한 수출비중은 45.3%까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발전은 제품철강, 조선 등의 수출실적 증가에 기인했으며 기본적으로 고품질-저비용의 상품이 생산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편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으로 선진국의 중화학공업은 1970년대 후반에 침체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계산업이 발전하였고 통합기계, 디젤엔진, 중장비건설기계 등에 대한 투자가 배증되었다. 이와 같은 투자 급증의 이면에는 정부의 정책금융이 중요한 역할 담당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는 세계적 경기침체, 오일쇼크에 따른 고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의 산업구조에 불균형이 발생했으며 중공업부문에 대한 과잉 투자로 심각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었다.

제 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1982-1986) 기간에는 중화학공업으로부터 정밀기계, 전자 (TV, 비디오, 반도체 등), 정보 등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산업의 중심이 이동하였다. 즉 이 시기에는 세계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첨단기술 상품개발에 노력하였다.

제 6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1987-1991) 중에는 제 5차 계획의 목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가 수립되었다. 정부는 수입자유화의 가속화, 수입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비롯한 각종 장애물의 제거에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규모의 기금 잉여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통화팽창과 산업구조조정의 지연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었다. 정부는 특정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를 중단하고 대신 모든 산업에 대한 인력훈련과 연구개발을 확대하며 특별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장하였다. 정부는 1991년까지 GNP의 2.4%에 불과했던 과학기술투자를 3% 이상으로 끌어올리려고 계획하였다.

제 7차 5개년 계획 (1992-1996)의 목표는 1989년에 작성되기 시작했으며 정밀전자, 신소재, 정밀화학, 생명공학, 광학, 항공우주 등의 첨단기술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발하려고 하였다. 정부는 국가 전체의 지리적 배분을 고려하여 7개의 지방도시에서 첨단기술시설을 건립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1993년에 김영삼 대통령에 의하여 신경제 5개년 계획 (1993-1997)으로 대체되었다.

신경제 5개년 계획 (1993-1997)은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무원의 태도 개선 등을 강조하였다. 진입장벽을 낮추고 주류, 정유, 교통, 건설, 금융 등 전통적으로 과잉보호 되었던 산업에 대하여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

을 제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관료를 포함한 기득권에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시장의 경쟁을 향상시키는 데도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개발 계획은 기본적으로 연동계획이었다. 해마다 목표치를 전망해보고 현재의 정책수단으로는 목표치 달성이 어렵다고 판명될 경우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하였으며, 대내외 경제여건의 현저한 변화로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목표치나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경제사회개발 계획은 유도계획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부문의 투자 등을 유도함으로써 목표치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나라 경제사회개발 계획의 성공요인은 양질의 교육, 인적자본, 제약 없는 해외자본의 유입, 강한 기업유인, 활발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저임금, 호의적인 국제환경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주도한 계획과 전략에 의한 성장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성장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약점을 드러내었다. 정책금융에 의한 자원의 배분착오, 정부실패, 저효율성, 경제정책 결정과정에서 투명성의 결여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5개년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필요로 하였다. 정부는 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을 선정하였고 정부주도의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였다. 여러 차례에 걸친 5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를 돌아보면 여러 투자계획들이 비효율적이거나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투자계획이 실패한 원인은 투자계획마다 각기 다른 요인들이 있지만 공통적인 요인들도 있다. 투자가 실패한 주원인은 현실성의 결여라고 볼 수 있으며, 계획의 부정확성, 비합리성 및 비효율성도 추가적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5개년 계획을 평가할 때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한다.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자. 정부가 수출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삼았던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이었다. 그 결과 각종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제거함으로써 투자가 활성화되었으며, 여러 제도와 법률이 제정·정비됨으로써 사회구조가 발전되었다. 또한 시장의 보완적 기능이 확대되었다.

한편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생산과 저축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민간의

소비와 복지가 희생되었다. 이와 같은 발전전략은 파산기업을 양산하였으며, 파산기업은 시장보다는 정부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여건 하에서는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가 규칙보다는 재량에 의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목표달성에 지나치게 의욕을 보이기 때문에 시장왜곡이 발생하였다. 또한 압축성장은 형평성과 효율성을 희생시킨 측면이 있으며 고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켰다. 이자율 결정과 신용배분에 관한 정부의 개입은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했으며 정부결정에 따른 자원배분은 산업구조의 독점화를 촉진시켰다.

5. 한국의 주요거시경제변수 추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1986-1996년 사이에 빠르게 증가하였고 1997년과 1998년에는 외환위기에 따른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설비, 건설 등의 고정투자와 수출이 고성장에 기여했다. 생산구조면에서는 서비스와 제조업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였다. 제조업의 구조를 보면 중화학공업 비중은 증가한 반면에 경공업은 감소하였다. 저축률과 투자율을 보면 1998년 이후에는 저축률이 투자율을 상회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했다. 민간저축률은 1998-2002년 중에 하락했으나, 2003-2004년 중에는 상승하였다. 2004년의 정부저축률은 1998년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경제성장률은 1999년 이후에 둔화 추세를 보였다. 2003-2004년의 인플레이션은 1999년보다는 높아졌으나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통화증가는 1997년 이후 M2, M3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며 이자율은 1991년 이후에 하락추세가 지속되었다.

6. 한국의 거시경제안정화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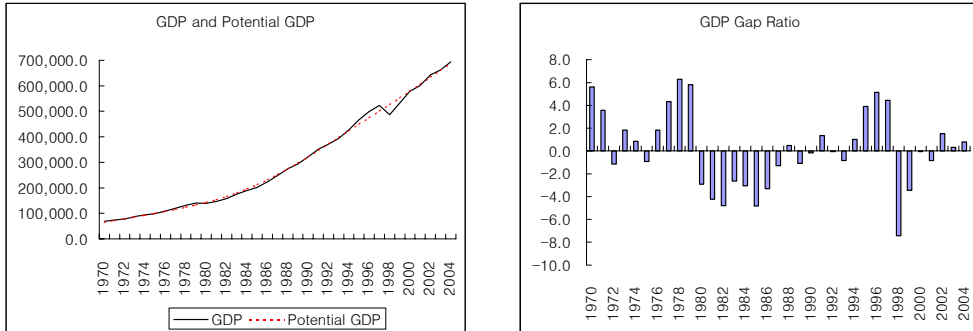
1970년대에는 한국경제가 연평균 8.3% 성장했으나 심각한 거시경제의 불균형이 유발되었다. 예를 들어 1, 2차 오일쇼크, 인플레이션 가속화, 경상수지 적자 악화 등이 경제를 위협하였다. 중화학공업에 대한 대량 투자, 중동 건설 붐에 참여, 곡물가격 보조금 지급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와 이에 따른 70

년대 후반의 초과수요압력이 증가했다. 1974-1979년의 생산자물가는 23.6%나 증가했으며 GDP는 잠재GDP를 크게 초과하였다(<그림 2-5-1> 참조).

<그림 2-5-1> 한국의 GDP, 잠재 GDP, GDP 갭률

(단위 : 십억원)

(단위 : %)



대내균형: 1982년까지는 물가안정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율이 10% 이하였던 해는 1973년과 1977년뿐이었다. 이런 점에서 1982년 이전 기간 중에는 대내균형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1970-1973년 기간이 대내균형을 논의하기가 1973년 이후보다는 용이하다. 이 시기에도 인플레이션은 상존했으며, 다만 인플레이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가 관건이었다. 이 당시 물가안정은 정부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부가 인플레이션의 결과를 잘 수습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인플레이션에 따른 부의 재분배 효과가 오히려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은 토지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유리했지만 부의 분배구조를 상당히 왜곡시키는 등의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은 1982-1987년에 도입되었으나, 1988-1991년에는 임금폭등으로 인하여 정책기조가 다시 바뀌었다. 1992-1997년은 어디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었는지 판단이 애매한 기간이다. 동 기간 중의 소비자물가는 4-6% 상승했고 규모면에서 볼 때 과거에 비해서는 완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교육, 외식비, 부동산 부문에서의 급격한 가격 상승은 중산층에 타격을 주었다.

대외균형: 대외균형은 경상수지, 자본수지 혹은 종합수지 중에서 어느 지표

도 목표로 삼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상수지와 종합수지에 따라 균형여부를 판명하였다. 중화학공업 프로그램, 오일쇼크와 그에 따른 정부의 조정에 따라 대외수지의 변동성은 1970년대에 증가하였다. 1974년의 대규모 종합수지 적자 이후 2년 연속 대규모 흑자 (1976-1977년)가 발생하였고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는 중화학공업의 발전으로 경상수지 적자로 전환되었다. 한편 1980년대 중반에 원화 저평가의 주원인이었던 환율의 과잉 절하는 1987년과 1988년에 지속가능하지 않을 정도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유발시켰다. 1998년에는 금융위기로 인하여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나타났다.

본 보고서에서는 CPI와 PPI의 상승률이 모두 4% 미만이라면 대내균형으로 간주하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1983-1987년, 2001년을 제외한 1999-2003년 중에는 한국경제가 대내균형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상수지와 종합수지의 GDP 비중이 2%보다 작을 때를 대외균형으로 간주하였다. 이 기준에 의하면 한국경제가 1983-1985년, 1991년을 제외한 1990-1995년, 2001년 중에 대외균형을 성취하였다. 대내균형과 대외균형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는 1983, 1984, 1985년 3년뿐이다. (<표 2-5-2>, <표 2-5-3> 참조)

<표 2-5-2> 한국의 CPI, PPI, GDP 및 GNI 증가율

(단위 : %)

연도	CPI	PPI	GDP	GNI
1970	17.5	9.1	8.8	7.6
1971	13.5	8.6	8.2	7.5
1972	10.7	14.0	4.5	4.2
1973	3.2	6.9	12.0	12.1
1974	25.0	42.1	7.2	6.7
1975	25.0	26.5	5.9	4.1
1976	15.3	12.1	10.6	12.4
1977	9.8	9.0	10.0	10.8
1978	14.7	11.7	9.3	10.4
1979	18.3	18.7	6.8	6.1
1980	28.7	39.0	1.5	4.2
1981	21.4	20.4	6.2	5.2
1982	7.2	4.7	7.3	8.0
1983	3.5	0.2	10.8	11.2
1984	2.2	0.7	8.1	8.2

연도	CPI	PPI	GDP	GNI
1985	2.4	0.9	6.8	6.3
1986	2.8	1.5	10.6	12.5
1987	3.1	0.5	11.1	13.1
1988	7.1	2.7	10.6	12.1
1989	5.6	1.5	6.7	8.4
1990	8.6	4.2	9.2	8.9
1991	9.4	4.8	9.4	9.8
1992	6.3	2.1	5.9	5.8
1993	4.8	1.6	6.1	6.3
1994	6.2	2.7	8.5	9.2
1995	4.4	4.7	9.2	9.5
1996	5.0	3.2	7.0	5.6
1997	4.4	3.8	4.7	2.7
1998	7.5	12.2	6.9	8.3
1999	0.8	2.1	9.5	9.4
2000	2.2	2.0	8.5	5.5
2001	4.1	0.5	3.8	2.8
2002	2.7	0.3	7.0	7.0
2003	3.6	2.2	3.1	1.9
2004	3.6	6.1	4.6	3.8

〈표 2-5-3〉 한국의 국제수지

(단위 : 백만달러)

연도	수출 (FOB)	수입 (FOB)	무역수지	경상수지/GDP	종합수지/GDP
1970	882.2	1,804.2	922.0	7.7	0.1
1971	1,132.3	2,178.2	1,045.9	8.9	2.0
1972	1,676.5	2,250.4	573.9	3.5	1.5
1973	3,271.3	3,837.3	566.0	2.3	3.4
1974	4,515.1	6,451.9	1,936.8	10.5	5.7
1975	5,003.0	6,674.4	1,671.4	8.8	0.7
1976	7,814.6	8,405.1	590.5	1.1	4.0
1977	10,046.5	10,523.1	476.6	0.0	3.5
1978	12,710.6	14,491.4	1,780.8	2.0	0.8
1979	14,704.5	19,100.0	4,395.5	6.6	1.5
1980	17,245.3	21,858.5	4,613.2	8.3	1.3

연도	수출 (FOB)	수입 (FOB)	무역수지	경상수지/GDP	종합수지/GDP
1981	20,747.3	24,596.1	3,848.8	6.5	0.4
1982	20,934.4	23,761.6	2,827.2	3.3	0.1
1983	23,271.6	25,120.1	1,848.5	1.8	0.1
1984	26,486.1	27,575.2	1,089.1	1.4	0.9
1985	26,632.6	26,652.8	20.2	0.8	0.0
1986	34,128.3	29,829.2	4,299.1	4.2	0.0
1987	46,559.9	39,030.5	7,529.4	7.2	0.6
1988	59,973.0	48,689.7	11,283.3	7.7	4.7
1989	61,832.0	57,486.7	4,345.3	2.3	1.4
1990	63,659.7	66,121.0	2,461.3	0.8	0.4
1991	70,546.4	77,450.0	6,903.6	2.7	0.4
1992	76,209.5	78,116.5	1,907.0	1.2	1.1
1993	82,097.8	79,947.7	2,150.1	0.2	0.8
1994	94,982.5	97,999.7	3,017.2	1.0	1.1
1995	124,933.6	129,298.2	4,364.6	1.7	1.4
1996	130,037.6	145,114.7	15,077.1	4.1	0.2
1997	138,730.7	141,986.4	3,255.7	1.6	2.3
1998	132,251.2	90,586.2	41,665.0	11.7	8.9
1999	145,375.4	116,912.4	28,463.0	5.5	5.2
2000	176,220.5	159,266.9	16,953.6	2.4	4.6
2001	151,478.3	137,990.3	13,488.0	1.7	1.6
2002	163,414.0	148,636.6	14,777.4	1.0	2.2
2003	197,289.2	175,337.2	21,952.0	2.0	4.3
2004	257,745.0	219,584.3	38,160.7	4.1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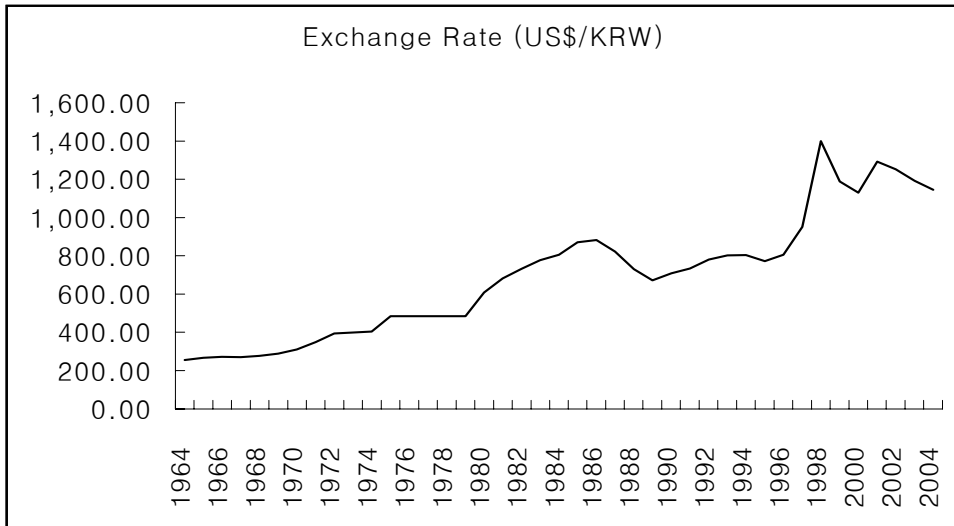
1976-1978년의 M2 증가율은 34%에서 1979-1981년에 27%로 하락하였으며 1982-1985년에는 17%로 더 하락하였다. 인플레이션은 M2 증가율보다 더 빠르게 감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이자율은 증가했으며 금융자산/GDP 비율로 표현되는 금융심화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경제안정화 초기에 행정비용과 SOC 투자에 대한 정부지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는 1980-1982년의 경기수축기 중에 경기부양책의 시행으로 더욱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대한 조정된 이후의 재정적 영향은 1981년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긴축적이었다. 1983년 이후 경기회복이 가시화되었을 때 재정정책은 더욱 긴축적이었다. GDP 대비 총재정은 1980-1982

년의 28%에서 1987-1988년 23%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 중앙정부 재정수지는 GDP의 4% 적자에서 0.8% 흑자로 개선되었다.

원-달러 환율은 1974년 이후 고정되었으나 1980년 2월에 약 20% 평가절하되었다. 동시에 고정환율제도는 복수통화 바스켓제도로 변환되었고 원/달러 환율은 국내외 인플레이션의 차이를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1981-1982년의 디스인플레이션의 기간 중에는 실질실효환율이 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목 환율은 1985년까지 상당히 절하되었다. (<그림 2-5-2 참조>)

<그림 2-5-2> 한국의 대미원화환율



이자율은 경제안정화정책의 일환으로 1980년 초에 대폭 상승한 후 1982년 6월 직전까지 모두 8번 조정되었다. 이 기간 중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24%에서 8%로 하락하였다. 동시에 정부는 정책금융에 대해 우호적으로 적용했던 복잡한 이자율 체계를 포기했다. 이와 같은 정책조정의 배후에는 금리하락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더욱 안정화시킬 수 있으며 금융기관과 예금주들이 물가안정에 따른 명목이자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질가치로는 상당한 이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주요원리로 작용했다. 사실 1980년대 초의 이자율 하향조정은 경기침체기 동안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상당히 완화시켰다.

1982년 이래 공무원에 대한 임금인상 계획은 민간부문 임금인상에 대한 비

공식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정부는 임금을 과다하게 올린 기업에 대해 은행대출을 억제하려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시도는 기업과 노조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약속은 과거 인플레이션에 기초한 임금지수화를 기대인플레이션에 기초한 미래예견(forward-looking) 임금으로 교체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강화되었다. 궁극적으로 전산업의 평균임금상승률은 1984-1985년에 9%선에 안정되었다.

1990년대의 경제성장은 기본적으로 소비와 서비스 생산의 확대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1990년 초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등 대외불균형이 발생하였다. 점증하는 대내외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는 1991년에 안정화에 정책의 초점을 두었다. 정부는 포괄적인 안정화 정책수단을 발표하였고 특별히 건설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상업용 건물건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1992년 후반에 정부는 호황이 거의 사라진 건설부문에 부과했던 규제수단을 부분적으로 폐지하였다.

이와 같은 안정화 노력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었으며, 1992-1993년 경제성장률이 6%로 낮아짐에 따라 대외균형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1994-1995년에는 경제성장의 활력이 되살아나 각각 8.5%, 9.2%의 높은 성장률을 시현했다. 여기에는 엔화 절상과 설비투자 및 수출의 증대가 중요한 요인으로 기여하였다. 이후 1997년말에는 우리경제가 외환 및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경제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등 과거의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으나 이 부분은 당초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다.

7. 한국의 거시경제정책

신용정책: 정부는 실질적으로 은행을 지배함으로써 이자율과 대출 규모를 결정하였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와 같은 정부주도적인 신용배분 전략이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데 비효율적임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대규모의 신용이 성공적이지 못한 사업에 배분됨으로써 기업과 은행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통화공급을 확대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신용정책은 효율적 은행시스템의 발전을 저해했으며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통화정책: GDP 대비 총통화의 비율 (M2/GDP)로 본 금융연관비율은 1965년 금리현실화로 인한 은행저축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서 1964년 말의 9%미만에서 1969년 말에는 33%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에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금융발전은 오히려 후퇴하여 1981년까지도 M2/GDP 비율은 37% 수준에 머물렀다. 1980년대 초 이후에는 안정적인 통화정책에 힘입어 물가가 크게 안정되었으며, 동 비율은 1994년에 88%, 2004년에는 121%로 크게 높아졌다. 한편 총유동성의 GDP 비율로 나타낸 금융발전의 정도는 급속한 속도로 진전되어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42% 수준에 머물던 M3/GDP 비율이 1985년에는 66%, 1994년에는 66%, 2004년 말에는 165%로 급상승하였다.

통화정책은 복구 및 개발에 수반된 통화팽창, 이에 따른 인플레이의 수속을 위한 통화긴축, 석유파동, 엔고 등 해외 교란요인으로 인한 해외부문 통화공급(경상수지)에 주로 좌우되어 왔다. 따라서 통화정책의 경기조절기능은 매우 미약했으며 결과적으로 경기 순응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재정정책: 재정수지의 추이를 보면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재정지출을 확대함에 따라 1972년에 재정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보였고 1973년의 재정긴축으로 적자가 상당히 축소되었으나 제 1차 석유파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책대로 인해서 1974-1975년에는 공공부문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를 보였다. 1990년대 들어와서는 도로와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이 지속적 경제성장에 애로요인을 나타내고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경기를 부치길 필요성도 대두됨에 따라 주택과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정부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1991-1992년에는 통합재정수지가 다시 적자를 보였으나 1993년 이후로는 흑자로 반전되었다. 재정지출은 2000년과 2002년에는 각각 8.1%, 7.0%가 증가하여 명목 GDP 보다 느린 증가율을 보였다. 재정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에 19.1%였으나 2000년에는 18.9%로 낮아졌다. 추후 2001년에 이 비중은 20.4%를 회복했으며 2003년에는 22.9%로 크게 높아졌다.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제의 재정수지에서 경기순환요인을 제거한 구조적 재정수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세는 경기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므로 실제의 재정수지로는 구조적인 재정상황을 판

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80년도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2%로 수지가 크게 악화되었지만 이 당시의 급격한 경기침체를 감안하면 구조적 재정수지는 오히려 전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정책: 공식적으로는 1965년부터 단일변동 환율제도 하에 환율이 유동화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 초에는 바스켓 환율제도가 채택되었으나 원화환율은 다분히 통화당국의 관리 하에 있었다. 1991년에 시장평균환율제도가 도입되고 환율변동의 허용폭이 확대됨으로써 환율결정에 관한 시장기능은 종전보다 제고되었다. 1997년 말에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환율변동은 자유화되었으나 최근에 오면서 환율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원화는 실질실효환율 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추이를 보여 왔다고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상당한 기복을 보였다. 이러한 기복이 나타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원화 환율이 미국 달러에 크게 의존하여 운용됨에 따라 달러와 여타 통화간의 환율변동이 원화의 대미환율에 즉각 반영되지 않은 데 기인한다. 국내 및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인플레이션 격차는 비교적 빨리 원화 환율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원화 환율은 국내 거시경제여건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면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해 원화가 절상되고 외환보유액이 적으면 절하되는 경향을 보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지지만 경기둔화기에 원화 절하를 통해 수출을 촉진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8. 베트남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제안

거시경제의 안정성은 광의로 정의해야 한다. 인플레이션 뿐 아니라 국제수지, 대외부채, 부동산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어야 한다. 1980년대 중반까지 인플레이션은 심각한 문제였다. 그러나 일련의 개혁조치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은 35%까지 하락하였다. 2003년까지는 오히려 디스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으며 인플레이션은 2004년부터 가속화하여 9.5%까지 상승하였던 반면에 금년에는 5%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베트남의 거시

경제안정화를 위하여 몇 가지 재정, 통화, 물가 및 환율정책을 제안한다.

베트남 경제는 과거의 높은 통화증가율에도 불구하고 물가 압력은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통화수량설의 입장에서 보면 유통속도가 대폭 하락했어야 하는데, 유통속도의 하락만으로는 베트남의 통화증가율과 명목소득의 관계를 전부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으로써 통화팽창에 따른 물가압력을 해소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베트남 통계에 오류가 없다면 팽창된 통화와 신용의 증가는 시차를 두고 가까운 장래에 인플레이션으로 발현될 것이다. 이와 같은 판단에서 향후 베트남 거시경제의 안정화를 위한 경제정책의 운용은 대단히 중요하다.

재정정책: 재정적자를 GDP의 5%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총재정수입이 지나치게 작기 때문에 계획된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재정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재정적자를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억제해야 한다. 지출을 줄인다면 자본지출보다는 경상지출을 줄여야 하며, 비효율적 공공투자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효율적인 투자계획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공공투자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 경제규모의 성장에 따라 조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며, 정부가 효율적 투자계획을 선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투자계획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통화정책: 통화정책은 단기적인 경기변동을 조절하는 데 유용하다. 현행 통화정책수단으로는 공개시장조작과 지불준비금제도가 간접조절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중앙은행이 시장상황에 따라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 베트남의 효율적인 통화관리를 위해 M2가 과연 통화목표로 신뢰할만한지 점검해보아야 한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M2 증가율과 인플레이션 간에 안정적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달러화” 영향을 고려하여 다른 통화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1998-2001년 중에 M2 증가율은 높았으나 디스인플레이션 발생하였다. 여기에는 세계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이 베트남의 디스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M2와 CPI의 안정적 관계가 사라진 원인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우선 외화예금/M2 비중이 20%에 달함으로써 M2 증가율만으로는 인플레이션 예측이 어렵다는 견해가 있으며, 또한 CPI에서 차지

하고 있는 음식료품 비중이 약 40%에 달하여 수요측면 못지않게 공급측면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도 있다. 아울러 베트남 경제의 “달러화” 심화 현상도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높은 통화증가율이 계속되면 가까운 장래에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통화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한 기본 자료인 M2와 CPI를 정확히 측정해야 하며, 공급 측면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사상한 코어 인플레이션 (core inflation)을 계산하는 것이 좋다.

물가정책: 물가정책은 베트남 정부가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오랫동안 사용해 온 정책이다. 1992년 이전에는 정부가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을 책정했으나 그 이후는 수요-공급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의 간접적 개입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2002년 이후에는 더 이상 정부가 가격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개별가격을 직접 조절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통화당국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물가정책보다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정책조합이 인플레이션 조정에 훨씬 유효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간접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물가예측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물가예측을 위한 거시경제모형과 시계열모형을 갖추고 있다면 경제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사전적으로 준비하는 데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다.

환율정책: 베트남에서 환율정책은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실제적 정책으로 활용되지 않았다. 실질실효환율은 대외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다. 외환당국이 실질실효환율을 적정선에서 유지한다면 대외불균형 문제는 훨씬 완화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도록 변동환율제를 운용해야 한다. 한편 환율상승에 따라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통화당국과의 협조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거시경제정책과 관련한 몇 가지 단평을 생각해본다.

성장과 안정: 빠른 경제성장은 후생을 향상시키지만 경제 불안정이라는 비용을 발생시킨다. 성장률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수요가 증가하여 불안정이 야기된다. 이런 관계로 인하여 성장과 안정 간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고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민간 혹은 정부신용이 증가하는데 통상 신용 팽창은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고 간혹 부동산 거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성장률이

높아짐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재정수지는 악화된다. 따라서 대내외 균형을 잃지 않는 지속가능한 성장 유지가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성장 여부는 잠재성장률로부터 알 수 있다.

자본동원: 베트남의 투자를 위한 자본동원은 GDP의 36%에 달한다. 투자가 저축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면 대외부문의 만성적 불균형을 유발한다. 베트남이 아직까지는 대외부채가 많지 않은 상태이나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대외부문의 지속가능성은 장기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생산성 개선: 지속가능한 고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많이 동원하는 것보다 생산성을 개선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자원이란 자본, 노동뿐 아니라 토지와 신용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시스템 확립: 시장경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잘 작동하는 경제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는 실행을 위한 제도와 기구를 보장함으로써 경제계획을 책임지고 추진해나가야 한다.

계획의 조정: 계획의 목표에만 지나치게 매달리다 보면 경제의 운영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계획기간중이라도 필요하다면 목표를 수정해야 하며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부 내 조직 설립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개발을 고정계획이 아닌 연동계획으로 바꿈으로써 중장기계획의 유연성을 제고해야하며 유도계획의 성격을 부과하여 정부가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정책 목표에 순응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제6장 베트남의 외자조달 방안 (외국인직접투자를 중심으로)

1. 서론

베트남은 1986년 제6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대외개방정책인 도이모이(Doi Moi) 정책을 채택한 이후 외국인투자법 제정, 재정금융개혁 등의 개혁정책을 추진한 결과 물가안정, 재정적자 축소, 외국인투자 증대 등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 연평균 7%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등 베트남 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200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53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베트남이 이러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자본이 필요하였는데 국내 투자자본이 부족한 베트남으로서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통한 투자 재원 조달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한 투자자본 조달이 총투자의 30.5%까지 이르는 등 성장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외국으로부터 필요한 자본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은 원조, 차관 그리고 FDI 등이 있는데 아시아 주요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경제여건에 따라 상이한 외자 조달 방안을 추구해 왔다. 한국의 경우에는 1950년대까지는 전후 복구를 위해 대부분 외국 원조에 의존하였으며 1960년대 이후 적극적인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주로 차관 형식의 외자도입을 도모하게 됨. 반면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은 FDI가 주도적 외자 도입방안으로 활용되었다. 베트남도 자국 경제개발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으로 FDI 유치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FDI가 베트남 경제의 GDP, 산업생산, 수출, 재정수입, 고용, 기술이전 등에 미친 실질적 영향을 보면 기대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FDI가 베트남의 지속적 경제개발을 위한 주요한 재원조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베트남의 FDI 유입 현황과 베트남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부문별로 살펴보고 FDI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요인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향후 과제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의 외자 도입 정책에 대한 소개를 통해 베트남 FDI 정책에 대한 시사점도 도출해 보고자 한다.

가. FDI 현황

FDI 통계가 파악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1994년까지의 FDI는 주로 석유 및 가스 부문에 집중되었다. 1994년 이후에는 FDI가 부동산, 제조업 등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1997~98년 기간 중의 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이전까지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저임금을 찾아 해외투자를 크게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1998년 이후에는 대베트남 FDI 유입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아시아의 외환위기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베트남 투자가 급감하였으며 특히 부동산 부문에의 투자 감소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이후 외국인 투자 유입이 지속적으로 부진함에 따라 베트남은 2001년의 제9차 공산당 전당대회를 통해 신회사법 채택, 외국인투자 관련법 개정, 국영기업 민영화 등의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FDI유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나. FDI의 경제적 효과

대베트남 FDI는 베트남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우선 총투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주요 투자 재원조달 역할을 하여 개방정책 실시 이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수출 증대를 통해 세계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베트남에 유입된 FDI의 GDP 기여율은 1995년의 6.3%에서 2000년에는 두 배 이상 증가한 13.3%를 기록하였고 수출기여율도 23.2%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FDI가 GDP 증대, 수출 등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기준 FDI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는 베트남 전체 노동 가능인구의 2%에 불과하다. FDI기업에 의한 고용창출 효과는 FDI가 주로 자본집약적인 부문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제한적이었으며 기술이전 효과도 FDI기업에 대한 베트남 국내 제품 의무 사용비율 부여에도 불구하고 크지 않았다.

이는 주로 베트남내 기업들이 FDI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제반 기술, 관리 능력 등을 전수 받을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FDI기업들이 과거 사회주의 체제하에 형성된 베트남 기업들에게 새로운 개념 및 생산기술의 도입과 기술 및 노하우의 발전을 이루도록 하였

다. 또한 FDI의 74%가 베트남 전체 인구의 15%만이 거주하고 있는 5개 대도시에서 집중되어 있어 인구의 85%가 거주하는 여타 56개 지역에 대한 FDI는 26%에 불과한 실정이다. FDI가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것은 자원개발이나 관광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FDI기업들이 투자 대상 지역으로 대규모 시장이 존재하고 제반 사회간접자본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대도시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 한국의 자원조달 정책

한국은 1950년대까지는 해방 초기 및 전쟁기의 혼란과 전후 복구를 위하여 엄청난 규모의 외국원조에 의존하였으나 1960년대에 이르러 외국원조가 점차 소멸되기 시작하였고 반면 적극적인 경제개발 추진을 위해 주로 차관형식의 외자 도입을 도모하게 된다. 외자도입은 국제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되고 조달 비용이 저렴하던 1970년대 중반까지 국내저축을 보전하는데 유효하였으나, 1970년대 말 세계경제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1980년대 초에는 급속한 교역조건 악화 및 지급이자의 급증으로 외채부담이 가중되어 경제 정책 운용에 큰 제약 요인이 되었다.

지난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외자도입정책을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외자도입정책의 일관성과 장기 계획이 결여되어 있어 항상 사후 조정 조치를 취해 왔다는 것이다. 장기계획에 대한 조정계획으로서 Rolling Plan 작성시 전체 경제의 동향이나 경기 상태를 고려하여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방적이기 보다 사후적 조치에 급급하였다. 둘째는 외자도입정책이나 외자도입 관련 법규의 기본 취지가 잘 이행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행정관료나 기업가들이 실정법규를 위반하였다는 의미와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조건이 나쁜 상업차관에 대해서는 도입 억제 방침이 수립되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를 규제하지 못해 결국 외자 도입 기업의 부실이 확대되었다.

셋째, 1960~1970년대까지의 개발과정에는 외자도입 자체에 급급했던 나머지 외자의 조건이나 외자도입의 결과에 대해 충분한 검토나 평가를 하지 못하

였고 이를 위한 제도의 보완도 미비하였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외자를 도입하는 경우 정부는 도입되는 외자의 조건이나 원리금 상환능력, 국제수지 효과, 고용효과, 기술이전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었지만 실제 국제금융시장의 여건이나 국제수지가 악화되었을 때에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

한편 한국의 FDI 유치 정책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맞기 전까지 크게 3단계에 걸쳐 변화해 왔다. 경제개발을 추구하던 산업화 초기에는 외국인투자를 규제하다가 어느 정도 산업화가 달성되고 개도국의 외채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대두된 1980년대 초부터 차관의존도를 줄이고 FDI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말 한국 외환위기 이후의 FDI 정책은 적극적인 투자 유치로 전환 되면서 제 4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FDI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외환과 금융부분을 대폭 자유화하였다. 한국 정부의 FDI 정책 목표는 첫째, FDI가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투자환경의 정비 둘째, FDI 정책을 국내 산업정책의 목표와 긴밀하게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것 등이다. 한국정부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지배를 우려하여 외자조달 수단으로 FDI 보다는 차관을 주로 선호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산업의 보호라는 목적은 상당부분 달성하였으나 외채비율의 과다로 인한 외채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해외의 개방 압력으로 급속하게 시장을 개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베트남은 외자 조달 수단으로 FDI 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성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베트남 경제의 성장에 따라 투자자원을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점차 차관을 통한 외자 조달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라. 향후 과제

향후 베트남이 FDI 활성화를 통한 경제개발과 사회개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반 경제, 사회적인 여건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FDI시 합작기업 및 100% 단독투자법인의 법정자본금이 총투자금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한 것과 합작투자의 경우 FDI 비율을 30% 이상으로 한 것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재산권 관련 법령들을 포함하여 시장경제체제가 잘 운영될 수 있는 법률체계와 함께 건전한 금융제도가 준비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국영기업의 민영화 실적을 보면 국영기업의 수는 개혁 초기에 비해

38%로 크게 축소되었으나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국영기업의 8%에 그치는 등 크게 부진한 실정이다.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기업경쟁력 강화, 구조조정, 금융 개혁, 민간부문 확대, 자본시장 활성화 등 제반 경제 개혁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더 적극적인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넷째, 베트남 투자환경의 가장 큰 애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정부패 척결에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이 베트남이 시장경제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영기업 개혁, 부정부패 척결 등의 개혁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FDI 현황

가. 베트남 시장의 특징

베트남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은 양질의 저임 노동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국민 기본 교육이 잘 시행되고 있으며, 과거 남베트남 시절의 자본주의 영향으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도 커서 FDI기업 입장에서는 주변국인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 비해 양질의 노동력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둘째는 정치적 안정을 들 수 있다. 베트남의 정치체제는 총서기장, 총리, 대통령이 적절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공산당 일당 체제에 대한 반발 세력이 미약해 상당 기간동안 안정적인 정치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공산당이 추진하고 있는 FDI 유치를 통한 공업화 정책이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베트남이 석유, 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라는 것이다. 베트남 시장의 이러한 특징들은 베트남의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관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미정착, 미약한 법률체계 등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FDI기업들에게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게 하는 요인들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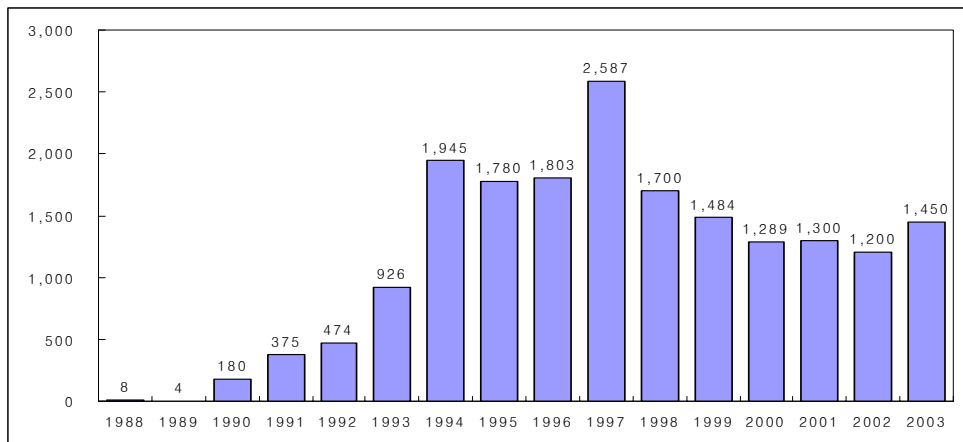
나. FDI 현황

1) FDI 유입 추이

FDI 통계가 파악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최근까지의 FDI 유입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은 3 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1994년까지의 FDI는 주로 석유 및 가스 부문에 집중되었으며 특히 석유 부문에의 투자를 통한 석유 수출은 동 기간중의 수출 증대에 주 요인이 되었다.

〈그림 2-6-1〉 대베트남 FDI 유입 추이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http://stats.unctad.org/fdi/>

1994년 이후에는 FDI가 부동산, 제조업 등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1997~98년 기간중의 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이전까지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저임금을 찾아 해외투자를 크게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이 기간중의 FDI 유입은 투자재원조달 역할뿐만 아니라 FDI 기업을 통해 베트남이 세계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1998년 이후에는 대베트남 FDI 유입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아시아의 외환위기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베트남 투자가 급감하였으며 특히 부동산 부문에의 투자 감소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또한 1998년 이후의 투자 유입액 감소에는 베트남의 국내 정치적 환경도 영향을 미쳤는데 베트남 국내적으로 그동안의 개혁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보수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경제 개혁정책의 추진이 지체된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후 외국인투자 유입이 지속적으로 부진함에 따라 베트남은 2001년의 제9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개혁주의자인 Nong Duc Manh을 총서기장으로 선출하고 신회사법 채택, 외국인투자 관련

법 개정, 국영기업 민영화 등의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금년 2월초 하노이에서 개최된 공산당 창립 75주년 행사에서 Manh 총서기장이 베트남 통일 이후 야기된 일련의 경제적 위기에 공산당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공산당원들의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함에 따라 사회적 개혁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FDI 유입액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국가별 투자 현황

〈표 2-6-1〉 국가별 FDI 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국 가	건수	승인액	유입액	국 가	건수	승인액	유입액
싱가포르	334	7,982.94	3,381.14	네덜란드	53	1,835.26	1,974.73
대 만	1,259	7,258.37	3,145.84	태 국	116	1,384.85	756.77
일 본	490	5,386.89	4,253.31	말레이시아	163	1,319.00	811.44
한 국	840	4,751.74	2,888.83	미 국	215	1,281.28	729.93
홍 콩	326	3,228.23	1,941.83	영 국	62	1,217.53	600.24
B.V.Islands	212	2,430.42	1,141.28	기 타	898	5,536.64	4,898.11
프 랑 스	142	2,153.11	1,060.72	합계	5,110	45,766.26	26,772.73

주) 2004년 12월말, 누계기준임.

자료: Vietnam Investment Review. 2005. 2. 21-27

대베트남 FDI 유입 현황은 2004년말 승인액 누계 기준으로 보면 총 5,110건에 458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실제 유입액은 268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국가별 투자현황을 보면 싱가포르가 제1위로 334건에 투자 승인 규모가 80억 달러에 이르고 실제 유입액도 34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후 대만, 일본에 이어 한국이 제4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투자 상위 10개국중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 화교계 자본이 전체 투자의 32%나 점유하고 있어 이들의 베트남내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싱가포르, 홍콩 등의 경우에는 투자 건당 평균 투자승인액 규모가 비교적 큰데 이는 주로 호

텔, 리조트 등 부동산 투자가 많기 때문이다.

〈표 2-6-2〉 부문별 FDI 현황

(단위 : 백만달러)

부 문	건수	승인액		유입액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공업	3,423	26,634.83	52.8	18,460.92	69.0
석유 및 가스	27	1,898.08	4.1	4,434.73	16.6
경공업	1,403	7,131.58	15.6	3,362.26	12.6
중공업	1,407	10,884.94	23.8	6,587.91	24.6
식품산업	230	2,838.54	6.2	2,038.02	7.6
건설	293	3,881.68	8.5	2,038.00	7.6
2. 농림어업	696	3,416.96	7.5	1,698.18	6.3
농업 및 임업	591	3,130.42	6.8	1,548.61	5.8
어업	105	286.53	0.6	149.57	0.6
3. 서비스업	991	15,714.47	34.3	6,613.64	24.7
운송, 통신	143	2,567.84	5.6	918.46	3.4
호텔 및 관광	166	3,604.99	7.9	2,198.83	8.2
은행 및 금융	56	738.55	1.6	632.43	2.4
문화, 교육	179	665.89	1.5	342.04	1.3
신도시 개발	3	2,466.67	5.4	51.29	0.2
사무실 건물 및 아파트	104	3,635.64	7.9	1,611.94	6.0
공업 단지 건설	20	986.10	2.2	521.37	1.9
기타	320	1,048.78	2.3	337.27	1.3
총 계	5,110	45,766.26	100	26,772.73	100

주) 2004년 12월말, 누계기준임.

자료: Vietnam Investment Review. 2005. 2. 21-27

3) 부문별 투자 현황

대베트남 FDI를 투자 부문별로 보면 유입액 기준으로 공업이 전체 FDI 유입액의 6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중공업이 건수 및 금액면에서 각각 28%와 25%를 차지하고 있어 자본집약적 부문으로의 투자가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농림어업에 대한 투자 유입액은 6.3%로 매우 적으며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25%에 이르나 서비스업 투자의 대부분이 호텔의 건설 및

운영 등 관광 부문에 치우쳐져 있다. 그리고 많은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경공업 부문에의 투자가 금액 면에서 전체 유입액의 12.6%에 불과해 FDI가 베트남에서 고용 창출을 많이 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FDI기업이 투자 허가를 얻은 후 실제 투자를 한 비율이 58%에 불과한 것도 유의할 부분이다. 이는 FDI기업이 투자 라이선스를 취득한 후 현지 법인 설립, 공장 건설 등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베트남의 관료주의로 인한 복잡하고 느린 행정절차, 불명확한 법률체계, 공무원의 부정부패 등으로 투자규모를 축소하거나 투자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FDI의 경제적 효과

가. 개요

개발도상국에 있어 국제투자자본의 유입은 경제성장 및 후생 증대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FDI는 다른 자본 투자에 비해 투자의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 있어 경제개발을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자국에 FDI를 가능한 한 많이 유치하는 것이 FDI기업으로부터 기술, 자본, 노하우 등의 이전을 통해 자국 경제를 세계경제에 편입시킬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도이모이 정책을 통해 본격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도 1987년 외국인투자법 제정을 통해 FDI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대베트남 FDI는 1990년대에 들어 베트남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투자자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총투자에서 FDI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에 30.4%로 정점에 이른 후 1990년대 후반의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03년에는 17.5%에 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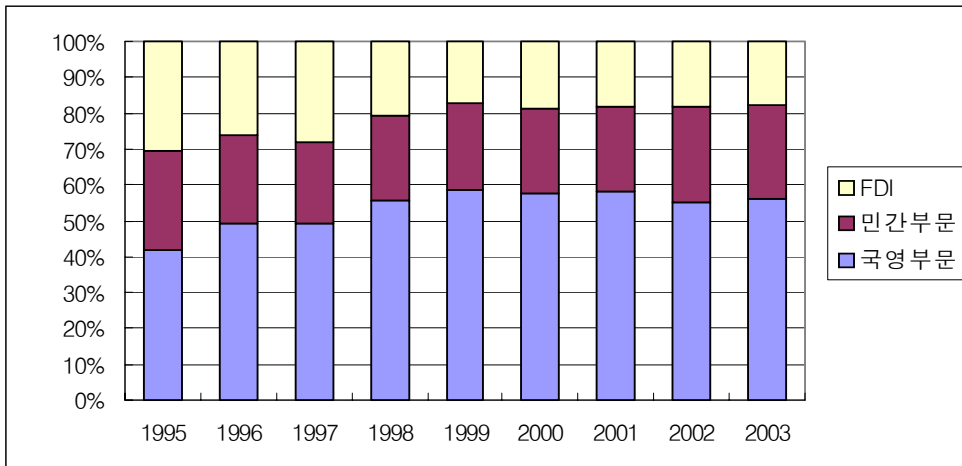
나. 부문별 경제적 효과

1) GDP 증대 효과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총투자에서 FDI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감소하였지

만 GDP 증대에 미친 영향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여 FDI의 GDP 기여율이 1995년의 6.3%에서 2000년에는 두 배 이상 증가한 13.3%를 기록하였다. 이는 FDI가 특히 산업생산, 수출, 정부 재정 수입 부문의 증대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1990년대 초까지 FDI기업에 의한 산업생산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1995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00년에는 전체 산업생산의 35%를 차지하며 국영부문 투자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995년 이전의 FDI는 광산부문이 4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여타 부분으로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2000년에는 그 비율이 32%로 낮아졌다.

〈그림 2-6-2〉 투자주체별 구성 추이



자료 : GSO, Statistical yearbook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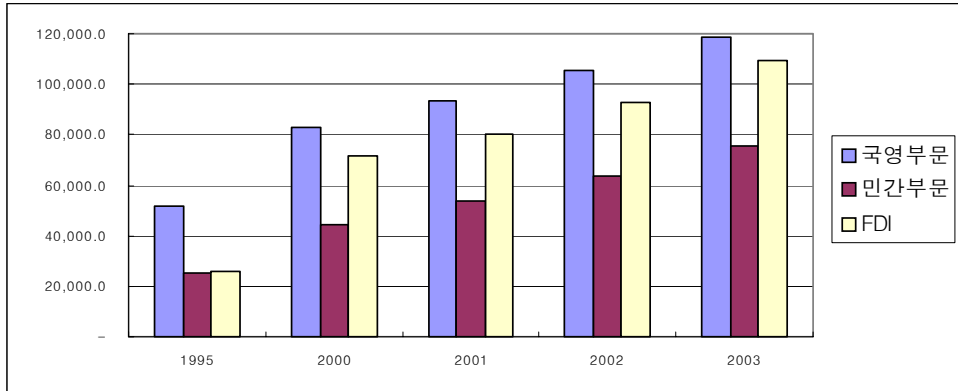
또한 FDI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베트남의 수출증대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1997년에는 FDI의 수출기여율이 전년대비 80% 이상 증가하여 당해년도 총수출의 20%를 점유하게 되었으며, 이후 수출기여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표 2-6-3〉 FDI의 GDP 및 수출에 미친 효과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GDP기여율(%)	6.3	7.4	9.0	10.0	12.3	13.3
수출기여율(%)	8.1	10.8	19.5	21.2	22.4	23.2

자료 : www.mpi.gov.vn

〈그림 2-6-3〉 부문별 산업 생산액 추이



주 : 2004년말 기준 1달러=15,740동(Dong)임.

자료 : GSO, Statistical yearbook 2003.

2002년중 FDI에 의한 수출은 주로 전기제품, 신발, 의류 및 직물류 등에 집중되어 있는데 전기제품 수출의 82%, 신발 수출의 42%, 의류 및 직물류 수출의 25%가 FDI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FDI기업의 대베트남 투자는 FDI기업을 통한 베트남의 수출 증대뿐만 아니라 베트남 국내 기업들의 성장을 통한 수출 촉진 효과도 가져왔다. 한편, FDI는 정부 재정수입도 증대시켰는데 1997~2000년 기간 중 정부 예산의 5.7%가 FDI기업으로부터 발생하였으며 석유 및 가스 부문의 정부 수입을 감안하면 FDI로 인한 정부재정수입은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 고용창출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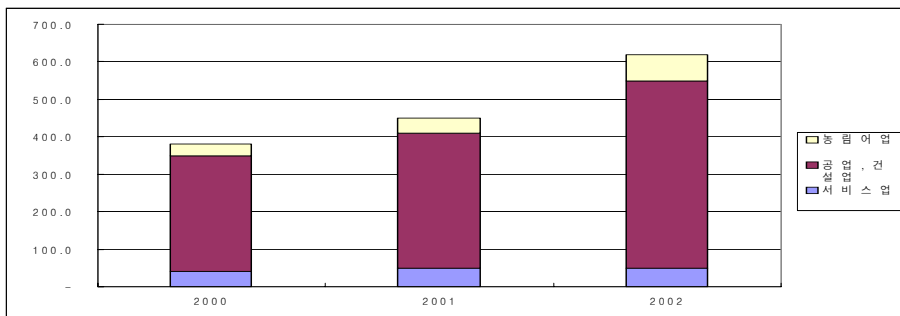
고용창출은 FDI가 베트남 경제에 미친 영향중 중요한 부문중의 하나이나 당초 베트남 정부의 기대보다 FDI가 고용증대에 미친 영향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FDI가 GDP, 투자, 수출 등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기준 FDI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는 베트남 전체 노동가능인구의 2%에 불과하다. FDI기업에 의한 고용이 전체 노동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부문별로 보면 공업 및 건설업이 6.4%, 서비스업이 0.4%, 농업이 0.2%로 대부분 제조업과 건설부문에서 고용 창출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비율은 2000년 이후에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FDI기업에서 고용창출이 많지 않

은 것은 첫째, 베트남에 투자하는 FDI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높고 생산과정에서 더 앞선 기술을 사용하며 생산제품 원부자재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IMF 등의 보고서에 의하면 FDI기업의 총매출액 중 수입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9년에는 74%, 2000년에는 82%에 이르고 있다. 이는 베트남에 진출한 FDI기업의 베트남내 생산공정이 부품의 생산, 조립 등이 아니라 대부분 완제품 단계의 생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이는 낮은 고용 창출 효과로 연결된다. 한국기업의 예를 들면 주요 가전회사의 경우 가전 완제품은 높은 관세로 베트남 수출이 어려우므로 베트남 인접국의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일부 분해하여 베트남 현지에서 재조립 생산하는 사례도 있다.

둘째, 부문별 FDI를 보면 전체 투자 유입액의 50%가량이 자동차, 오토바이, 철강, 시멘트, 자원개발, 호텔 등의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2004년 말 잔존기준 대베트남 FDI 유입액의 부문별 비율을 보면 중공업부문 24.6%, 석유 및 가스 부문 16.6%, 호텔 및 관광 부문 8.2% 등 자본집약적 산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전체 고용의 2/3와 GDP의 25%를 차지하는 농업부문으로의 FDI는 5.8%에 불과해 FDI가 농업부문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을 알 수 있다. FDI가 창출한 고용을 부문별로 보면 2001년 기준 공업부문이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와 운송이 13%, 농림어업은 10%에 불과함. 2002년에는 FDI에 의해 창출된 고용 65만 개중 공업부문이 83%를 점유하고 있으며 농업 및 서비스업은 각각 10%, 7%에 불과하다. 공업부문에서는 의류, 직물, 신발, 기타 소비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공업이 전체 FDI기업에 의한 고용창출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6-4〉 FDI의 부문별 고용 창출

(단위 : 천명)



자료 : ADB, Vietnam: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Postcrisis Regional Integration, Sept. 2004.

3) 기술이전 효과

지난 15년 동안 FDI의 유입은 투자 자본뿐만 아니라 관리 능력과 기술의 유입도 가져왔다. FDI기업이 사용하는 기술은 베트남 기술보다 크게 앞선 것들이며 특히 석유 및 가스, 통신, 화학,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 앞선 기술들이 도입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합작기업 또는 사업협력계약(BCC)⁴³⁾의 경우에도 이러한 신기술들의 이전효과를 기대하였으나 실제로는 기술 이전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베트남내 대부분의 기업, 특히 국영기업들이 시장 경제체제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 FDI기업의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FDI기업도 베트남으로 기술이전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베트남내 연구 개발 기능과 생산부분과의 연계성도 매우 낮은 상황이다. 즉 FDI기업이 베트남 경제개발과 기술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FDI기업과 베트남 국내기업간의 낮은 연계성, 국영기업의 비효율성, 민간기업의 미발달 등으로 그 파급 효과는 제한적이였다. 그러나 IT 등 일부 부문에 있어서는 기술이전의 효과⁴⁴⁾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베트남 기업들이 FDI기업으로부터 기술습득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4) 지역별 불균형 발전

베트남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특징 중의 하나는 도이모이 정책 이후 전체적인 빈곤이 다소 감소되고 여타 개도국에 비해 개방정책 초기의 소득불균형이 비교적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곤율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FDI의 74%가 베트남 전체 인구의 15%만이 거주하고 있는 5개의 도시⁴⁵⁾에 집중되어 있어 인구의 85%가 거주하는 여타 56개 지역에 대한 FDI는 2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FDI가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것은 자원개발이나 관광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FDI기업들이 투자 대상 지역으로 대규모 시장

43) 사업협력계약(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BCC)은 베트남내 사업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단지 쌍방간의 사업계약에 의거,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투자형태이며 별도의 법인설립이 없기 때문에 계약상의 무한 책임을 짐.

44) 기술이전은 ① 합작기업의 경우 FDI기업과 베트남 파트너기업간, ② 합작기업으로부터 여타 베트남내 기관 및 기업, ③ 다국적기업으로부터 베트남내 기업 등의 형태로 나타남.

45) 베트남의 전체 도시인구 비율이 25%에 불과하며 FDI 상위 5개 도시는 HCMC, Hanoi, Dong Nai, Binh Duong, Ba Ria-Vung Tau 등임.

이 존재하고 제반 사회간접자본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대도시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6-4〉 지역별 FDI 유치 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분	건수	승인액	유입액	구분	건수	승인액	유입액
호치민시(HCMC)	1,590	11,517.83	6,077.65	Thanh Hoa	15	696.69	411.09
Hanoi	549	8,019.45	3,702.27	Long An	85	626.18	306.38
Dong Nai	608	7,528.41	3,613.08	Vinh Phuc	73	593.47	442.94
Binh Duong	902	4,241.04	1,766.84	Hai Duong	66	591.63	367.51
BaRia-VungTau	108	2,132.39	1,397.93	기타	856	5,248.39	2,868.41
Haiphong	164	1,790.72	1,252.20	석유 및 가스	27	1,898.08	4,434.73
Lam Dong	67	881.98	131.70	합계	5,110	45,766.26	26,772.73

주) 2004년 12월말, 누계기준임.

자료: Vietnam Investment Review. 2005. 2. 21-27

따라서 대다수의 빈민들이 거주하는 지방(농촌) 지역의 투자와 성장은 대부분 국영부문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중북부 해안지역과 중부 산악 지대에 대한 투자중 국영부문이 85%이며 북부지역 투자의 79%를 국영부문이 담당하고 있다. 즉 베트남 국영부문의 투자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 왔으며 이는 FDI가 대도시 지역에 더욱 집중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최근 베트남 정부는 의도적으로 북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반 투자 인센티브의 제공, 조건부 투자 허가 등으로 FDI를 북부지역에 우선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 한국의 외자 조달 정책

가. 개요

한국도 196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었던 소요자본을 주로 외국에 의존 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1950년대까지는 해방 초기 및 전쟁기의 혼란과 전후 복구를 위하여 엄청난 규모의 외국원조에 의존하였으나 1960년대에 이르러 외국원조가 점차 소멸되기 시작하였고 반면 적극적인 경제개발 추진을 위해 주로 차관형식의 외자 도입을 도모하게 된다. 차관과 FDI는 국내저축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해외저축 수단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차관이 원리금 상환 의무를 가지는 반면, FDI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투자원본의 회수는 가능하지만 원리금 상환의무는 없기 때문에 외채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기술이전이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FDI의 경우 직접 경영권을 가지고 경제 간섭을 하게 되거나 국내시장을 잠식하여 국내영세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면서도 핵심 기술은 이전하지 않고 사양산업이나 공해산업의 이동만을 가져오는 등 FDI의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지적되고 있다. 한국의 경제개발정책 추진 이후 한국의 외자정책은 여타 개도국과는 달리 차관 위주로 일관되어 왔고 1980년대 초반과 1990년대 후반, 두 차례에 걸쳐 외채원리금 상환이 염려될 만큼 외채가 누적되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외환위기로 이어지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나. 한국의 외자 도입 정책

1) 한국의 외자 도입 정책의 전환 과정

가) 외자도입체제의 정비기(1962~1971)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에서 1962~1972년간은 두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에 의하여 획기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시기로 평가받고 있다. 1962~1966년 동안의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당시 산업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업부문에 정책 목표를 두고 공업화의 준비단계로서 에너지 자원의 확보와 기간산업의 확충을 도모하였다.

나) 본격적 외자 도입기(1972~1978)

1973년에 시작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1976)은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의 중점 개발과 철강, 기계, 조선 등 중화학 공업 육성을 통한 국제수지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 동 기간중의 외자도입정책으로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장기 저리의 공공차관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FDI를 적극 유치하는 것과 차관도입선도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와 유럽지역으로 다변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표 2-6-5〉 한국의 외자 도입액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원조	차관		FDI (A)	총외자도입 (B)	A/B
		공공차관	상업차관			
~1960	2,935	-	-	-	2,935	-
1965	131	11	28	11	181	6.08
1970	83	147	283	25	538	4.65
1975	1.2	476	802	69	1,348	5.12
1980	0.36	1,516	1,402	131	3,049	4.30
1981	0.24	1,690	1,247	152	3,089	4.92
1982	0.06	1,868	914	129	2,911	4.43
1983	0.03	1,494	973	123	2,590	4.75
1984	-	1,424	858	193	2,475	7.80
1985	-	1,024	964	236	2,224	10.61
1986	-	880	1,620	477	2,977	16.02
1987	-	1,109	1,558	626	3,293	19.01
1988	-	981	988	894	2,863	31.23
1989	-	477	860	812	2,149	37.79
1990	-	417	30	895	1,342	66.69
1991	-	429	0	1,396	1,825	76.49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년호

다) 선별적 외자 도입기(1979~1986)

1978년 시작된 세계적인 원유가격 상승으로 국제적 고금리가 지속되고 보호 무역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외채위기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한국은 당시 정책 운용의 중점이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설비투자에 있었던 만큼 그 타격이 심각하였다. 한국정부로서는 투자 조정 등 과감한 경제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경상수지 적자 보전을 위한 외자 도입이 시급한 문제도 대두되었다.

라) 채권국 진입기(1986~1991)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수행으로 한국은 대내적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산업경쟁력도 회복되어 1986~1988년 기간중 연 12%의 고도성장을 시현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상수지는 과거의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 큰 폭의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국내투자재원의 자립조달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외채증가를 강력히 억제하기 위하여 '상업차관 도입 인가방침'을 마련하고 상업차관 도입 가능 산업을 국내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킬 수 있는 성장 산업 중심으로 대폭 축소하는 동시에 차입비용을 최대한 절감시킬 수 있는 장기 저리의 차관 도입을 유도하였다.

또한 1986년 12월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을 제정하여 한국의 해외경제협력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1987년 12월에 인도네시아 및 나이지리아에 대한 최초의 개발 차관자금을 승인함으로써 한국도 대외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발돋움 하게 되었다.

2) 한국의 외자 도입 정책의 평가

한국의 경제발전 전략은 적극적으로 외자를 도입하여 이를 주로 제조업 부문에 투입함으로써 수출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장으로 연결시켜 국내저축능력을 제고하고 잠재 성장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외자도입은 국제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되고 조달 비용이 저렴하던 1970년대 중반까지 국내저축을 보전하는데 유효하였으나, 1970년대 말 세계경제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1980년대 초에는 급속한 교역조건 악화와 지급이자의 급증으로 외채부담이 가중되어 경제 정책 운용에 큰 제약 요건이 되었다.

지난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외자도입정책을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외자도입정책의 일관성과 장기 계획이 결여되어 있어 항상 사후 조정조치를 취해 왔다는 것이다. 장기계획에 대한 조정계획으로서 Rolling Plan 작성시 전체 경제의 동향이나 경기 상태를 고려하여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방적이기 보다 사후적 조치에 급급하였다. 둘째, 외자도입정책이나 외자도입 관련 법규의 기본 취지가 잘 이행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행정관료나 기업가들이 실정법규를 위반하였다는 의미와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조건이 나쁜 상업차관에 대해서는 도입 억제 방침이 수립되어 있었으나 현

실적으로는 이를 규제하지 못해 결국 외자 도입 기업의 부실이 확대되었다. 이는 국내정책이 잘 준수되지 못한 면도 있지만 국내 금융의 이자율 정책에도 큰 문제가 있었다. 셋째, 1960~1970년대까지의 개발과정에는 외자도입 자체에 급급했던 나머지 외자의 조건이나 외자도입의 결과에 대해 충분한 검토나 평가를 하지 못하였고 이를 위한 제도의 보완도 미비하였다. 특히 민간 부문에서 외자를 도입하는 경우 정부는 도입되는 외자의 조건이나 원리금 상환능력, 국제수지 효과, 고용효과, 기술이전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었지만 실제 국제금융시장의 여건이나 국제수지가 악화되었을 때에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 넷째, 한국의 외자도입 실적을 살펴보면 FDI보다 차관에 치중하고 있다. 1962~1991년 기간중 유입된 FDI는 총 79억 달러로서 전체 차관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 그 실적이 매우 부진하였다.

다. 한국의 FDI 정책

1) 한국의 FDI 정책 추이

한국의 FDI 유치 정책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맞기 전까지 크게 3단계에 걸쳐 변화해 왔다. 경제개발을 추구하던 산업화 초기에는 외국인투자를 규제하다가 어느 정도 산업화가 달성되고 개도국의 외채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대두된 1980년대 초부터 차관의존도를 줄이고 FDI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다.

산업화 초기였던 제 1단계(1962~1983)에는 ‘투자제한’ 단계라고 불릴 수 있다. 당시 한국정부는 국내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지배를 우려하여 FDI유치에 소극적이었으며 기술도입은 FDI 보다 라이선스 계약과 기술자 파견에 의존하였다.

제2단계(1984~1989)는 규제에서 유치로 정책을 전환하는 ‘기반조성’단계로, 한국정부는 1984년 7월 외국인투자 개방을 위하여 그동안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업종을 명시해 온 허용업종 열거 방식(positive system)을 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명시하는 금지, 제한업종 열거 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였다.

제3단계(1990~1997)는 외국인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자유화' 단계임. 1991년에는 인가제와 병행하여 신고제를 도입하였고 1992년에는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인가를 하는 제도로 전환하였음. 1993년에는 224개 제한 업종중 132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 개방 5개년 계획(1993~1997)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3차례에 걸쳐 개방 계획을 앞당겼다.

2) 외환위기 이후의 FDI 정책 현황

외환위기 이후의 FDI 정책은 적극적인 투자 유치로 전환 되면서 제 4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FDI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외환과 금융부분을 대폭 자유화하였다. 또한 FDI 유치를 법률적으로도 지원하기 위해 1998년 7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적극적인 유치활동, 기업 환경 개선, 투자 인센티브 제공, 효율적 지원조직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제한 업종을 대폭 축소하였고, 외국인투자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FDI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토지임대료 및 분양가 감면, 외국인투자지역 선정 등의 인센티브도 강화하였다.

라. 베트남 FDI 정책에의 시사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정부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지배를 우려하여 외자조달 수단으로 FDI 보다는 차관을 주로 선호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산업의 보호라는 목적은 상당부분 달성하였으나 외채비율의 과다로 인한 외채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해외의 개방 압력으로 급속하게 시장을 개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베트남은 외자 조달 수단으로 FDI 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성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베트남 경제의 성장에 따라 투자재원을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점차 차관을 통한 외자 조달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적극적인 FDI 유치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FDI를 통한 선진 기술 습득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대베트남 FDI의 경제적 효과를 보면 FDI를 통한 기술이전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베트남 기업의 생산성이 대부분 낮아 선진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베트남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발 개도국들과의 기술격차를 신속히 줄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향후 FDI 유치 정

책의 주요 목표로 자원 조달뿐만 아니라 선진 기술의 습득을 설정하고 이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향후 과제

가. 외국인투자제도 개선

베트남은 대외개방개혁정책을 선언한 제6차 공산당 전당 대회 이후인 1987년 12월, 첫번째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였다. 외국인투자법의 제정은 베트남 경제가 기존의 중앙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본격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베트남식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1987년 이후 외국인투자법 및 그 시행령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더 유리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5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외환규정의 완화, 투자형태의 전환요건 완화, 과실송금세 인하 등 많은 투자 장애 요인들이 해소되었다. 또한 FDI기업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되었고 합작기업에 있어 토지내 원주민의 이주를 포함하는 토지 정리 작업도 FDI기업의 책임에서 베트남측 파트너의 책임으로 변경되었으며, FDI기업의 경우 설립회사의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1년 이후에는 일정금액 이하의 FDI 인허가권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어 각 지방정부가 더 좋은 세제 조건, 과실송금세, 토지사용권 등으로 다른 지방정부와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FDI기업에게는 지분출자 방법, 투자 자원 조달 방안 등 여전히 많은 제한이 존재하고 있다. 대표적인 규제중의 하나가 합작기업 및 100% 단독투자법인의 법정자본금이 총투자금액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FDI기업 입장에서는 과도한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것이다.

그리고 베트남은 FDI기업의 현지 기업에 대한 주식 취득과 M&A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FDI기업은 투자가 허가된 35개 부문에 속한 베트남 기업 주식의 30%까지 취득이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수상실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한 통신 및 항만 사용료 등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외국인에 대한 이 증가격제도 등은 FDI 유치를 위한 인국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표 2-6-6〉 동남아 8개 도시 투자 관련 비용 비교

(단위 : 미 달러)

비용 \ 시	호치민시	하노이	북경	방콕	싱가포르	자카르타	마닐라	쿠알라룸푸
사무실 임대료 (월, m ² 당)	21	24	30-60	11,03	40,64	14-20	4.52-7.23	9.92-17.68
전기요금(KW당)	0.05-0.07	0.05-0.07	0.03-0.09	0.04	0.07	0.05	0.09	0.05
Yokohama항까지 해상운송비용	900	1,300	500	1.200	575	890	850-1,100	575
최고개인소득세율	50%	50%	45%	37%	22%	35%	32%	28%
노동자 평균임금(월)	102-138	79-119	79-139	184	432-557	133	170	202

자료 : Saigon Giaiphong, 2004. 6. 23.

한편 베트남 정부는 개방정책 실시 이후 계속되는 상품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수입대체 산업을 육성해 왔으며 이는 동 부문으로 FDI기업의 합작투자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가 수입대체 산업 부문에 대해 높은 수입관세를 책정함으로써 베트남 국내 시장이 수출 시장에 비해 수익성이 좋아지게 되어 수출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1997년 이후에는 베트남의 고관세율이 점차 완화되기 시작하여 내수 시장의 관세는 크게 낮아졌으나 주요 수출품의 보호는 더욱 강화되었다. 현재 베트남의 수입관세가 여전히 높으나 베트남의 ASEAN 가입과 AFTA의 CEPT(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협정에 따라 베트남은 2006년까지 역내국가에 대해 모든 제조업 제품의 관세율을 0~5%까지 인하해야 하므로 관세인하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FDI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경제여건이 FDI에게 합리적이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법률제도의 개선, 국영기업의 개혁, 부정부패의 척결, 민간부문의 개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금융 및 대출 제도의 개선 등에서 성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 부문별 개혁과제

1) 법률제도 개선

베트남 법률은 조세, 외환, 노동, 토지 등 여러 부문에서 빠르고 불규칙적으로 그리고 일관되지 않게 변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와 같이 중앙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변화하는 경우 그동안 없던 새로운 법률체계를 만들어야 하나 베트남내에서는 이러한 법률제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나 기관이 없어 베트남 법률체계가 취약한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데에 가장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재산권 관련 법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도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재산권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담보제도 및 강제집행 관련 제반 시행령 등이 완비되어야 하며, 이는 베트남내 금융기관들이 대출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베트남 자본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2) 국영부문 개혁

베트남은 경제여건이 취약하고 생산요소 시장 및 자본시장 등 시장경제체제의 주축을 이루는 조건들이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국영기업 민영화는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베트남의 국영기업 민영화는 급격한 가격 자유화와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쇼크 요법(shock therapy)보다는 주로 국영기업의 경영 효율성 증대에 중점을 두고 시장 경쟁체제의 조성, 기업보조금 중단, 국영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에 중점을 두어 왔다. 즉, 국영기업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와 보조금의 폐지를 통해 국가의 세출 부담을 줄였으며 국영기업에게는 금융기관 대출, 노동자의 고용, 임금 결정,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영기업들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고 정부의 힘을 이용하여 국영은행으로부터 투자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조달하려 하였으며 시장경쟁도 가급적 회피하였다.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민영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영기업 민영화 실적은 산출액 기준으로 하면 전체 국영기업 산출액의 8%만이 민영화 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는 민영화된 국영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임을 의미한 것으로서 대형 국영기업 민영화가 크게 부진한 상황이다. 이처럼 민영화가 지체되고 있는 이유로는 국영기업의 기관장들은 자리보전을 위해 그리고 근로자들도 실업에 대한 우려로 민영화에 소극적인 점, 베트남 증권시장 미발달로 상장이 어려운 점, 국영기업에 대한 FDI가 30%로 제한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베트남 공업부문의 대부분이 비효율적인 국영부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국영기업의 적자를 정부 재정이나 국영은행의 대출로 구제해 주고 있어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3) 부정부패의 해소

많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베트남 투자 및 기업경영에의 가장 큰 애로점으로 베트남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를 첫 번째로 들고 있을 만큼 베트남내 부정부패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1990년대 초반에 적발된 부정부패 사례들을 보면 국가재산의 횡령, 밀수, 불법상품의 교역, 세금 사기, 뇌물 수수 등의 형태를 띠었으나 최근에는 예산 및 소득관련 법규의 위반, 합작기업의 남용, 예산의 불법적 전용, 부동산 및 건설에 관한 정부규제 위반 등 새로운 유형의 부패들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는 정실 인사 관행인데 이는 내부 고발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의 부패 관료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왔다. 셋째, 경제개혁과정에서 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절차법들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아 관료들의 재량권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경미하고 불공정한 법 집행 등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공무원 및 국영기업 간부의 부정부패 만연으로 인해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금년들어 부정부패 해소를 위해 반부패 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국회도 국가감사원의 설립을 승인하는 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미지수이다.

4) 금융 개혁

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은 금융부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1988년의 금융개혁은 상업은행과 중앙은행을 분리시켜 과거의 단일 독점은행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이자율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되어 정(positive)의 금리수준에

도달하였고 경제부문별 금리차등화도 폐지 또는 완화되고 있으며 금융산업에 대한 진입규제도 완화되었다. 베트남 금융 개혁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금융의 집중화로 수요측면에서 보면 금융자금이 국영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과 전체 신용공급 측면에서 보면 금융자금을 국영상업은행이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의 은행경영 개입으로 현재 명시적으로는 최저 예금금리와 최고 대출금리의 제약이 있을 뿐이나 실제로는 여전히 정부 개입이 강하다. 셋째, 명시적 차별은 없지만 민간부문에 대한 은행 대출은 상당히 제약되어 있어 여전히 국영상업은행의 국영기업에 대한 편중이 지속되고 있다. 넷째, 일반은행이 대부분 특수은행적 성격을 띠고 있다. 즉 국영상업은행중 상공은행과 농업은행은 법적으로 조직과 기구상으로는 모든 경제부문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겸업주의에 근거한 일반은행으로 출범했지만 기능적으로는 여전히 특정분야에 집중적으로 신용을 제공하는 특수은행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향후 베트남 금융 개혁의 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금융의 소프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금융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에 대한 법률 및 규제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소유자와 담보에 관한 법률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계약의 의무와 권한 관계, 계약의 강제집행,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 부과 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둘째, 금융시스템을 재구축하여 간접금융체제와 직접금융체제가 균형 있게 발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베트남과 같이 금융산업이 아직은 유치산업 단계이고 신용사회건설이 미흡한 상태에서 물가안정과 효율적인 국내저축의 동원과 배분을 위해서는 간접금융제도의 정착에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한다.

참 고 문 헌

1. 강광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8.
2. 강석인, 「외자도입과 한국의 경제발전」, 범신사, 1997. 2.
3. 장윤중, 전주성, 「글로벌 경제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을유문화사, 2000. 10.
4. 김승진, 「투자인센티브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9. 4.
5. 김준동, 「외국인직접투자의 장애요인과 촉진방안」, KIEP, 1997. 12.
6. 박 승, 「경제발전론」, 박영사, 2000. 6.
7. 이병기,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과급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2.
8. 이종원, 「한국경제론」, 을곡출판사, 2002. 3.
9. 동서문제연구원, 「베트남의 법제도와 시장개혁」, 2002. 4.
10. 한국베트남학회, 「한국학과 베트남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2004. 10. 2.
11. 한국수출입은행, 「베트남의 국가현황과 우리의 진출방안」, 2004. 9.
12. _____, 「베트남의 주요 에너지산업동향과 개발전망」, 2003. 12.
13. _____, 「베트남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집」, 1997. 12.
14. Brain Van Arkadie & Raymond Mallon, "VIETNAM: a transition tiger?", Asia Pacific Press, 2003.
15. Dinh Van An, "Developing The Socialist-Oriented Market Economy in Vietnam", CIEM, 2003.
16. Doanh, L. 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Vietnam: Results, Achievements, Challenges and Prospects", August, 2002.
17. June-Dong Kim,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Regime and Some Evidences of Spillover Effects in Korea」, KIEP, 1999. 6.
18. Whang In-Joung, 「Economic Transformation of Korea, 1945-95: Issues and Responses」, The Sejong Institute, 1997.
19. ADB, Vietnam: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Postcrisis Regional Integration, Sept. 2004.
20. MUTRAP, The FACTOM model: FDI attraction Comparison and Trade Openness Measure, EC, Vietnam, 2002.
21. Wood McKenzie, South East Asia Upstream Services, 2003.
22. GSO(베트남 통계국), Statistical yearbook 2003.
23. _____, Input-Output of Vietnam 2000, 2003.

24. Saigon Giaiphong, 2004. 6. 23.
25. Vietnam Investment Review. 2005. 2. 21-27
26. www.eiu.com
27. www.stats.unctad.org/fdi/
28. www.kita.net
29. www.mpi.gov.vn
30. www.viewswire.com
31. www.vir.com.vn
32. www.worldmarketsanalysis.com

제7장 수출지원금융정책 및 베트남 수출입은행 설립방안

1. 서론

베트남은 인구 82.6백만, 면적 33만km²로서 최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한 국가 중 하나이다. 2001~4년간 베트남경제는 7.2% 성장률을 기록하여 같은 기간 동안 더 높은 성장을 보인 국가는 8.2% 성장한 중국뿐이었다. 베트남이 이렇듯 높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1986년의 도이모이(쇄신)와 1989년의 무역과 해외투자를 통한 경제개방, 수출확대로 인해서이다. 그러나 무역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는 무역금융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수출신용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황이다. 그러나 WTO 가입을 앞두고 있는 현재, 베트남은 시행하고 있는 수출보조금 제도를 폐지되는 대신 허용보조금이라 할 수 있는 수출신용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베트남 수출현황

가. 주요 수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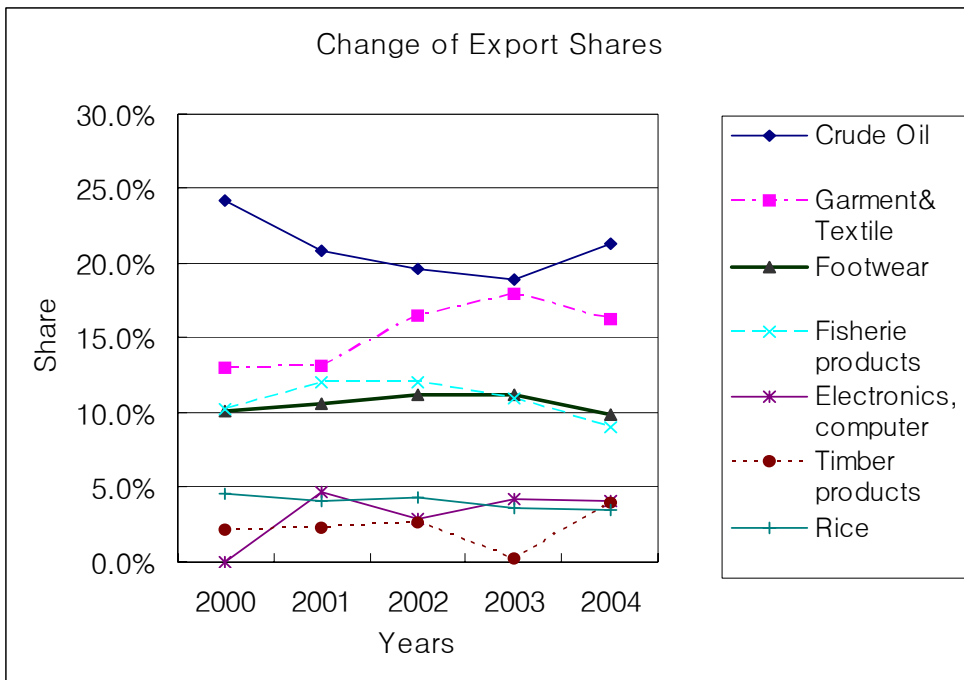
지난 4년간 베트남 경제는 연평균 7.2% 성장한 것에 비하여 수출은 12.9% 성장하였다. 2004년 수출액은 31.5% 증가하여 265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GDP의 59%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그러나 베트남은 아직 경제개발 초기 단계로서, 주요 수출 품목도 원유, 섬유·의류, 신발, 수산가공품, 가전·컴퓨터, 목재, 쌀 등, 원자재와 농·수산물 및 그의 가공물, 그리고 경공업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04년의 경우 이들 비중은 전체 수출의 68.2%에 이른다.

아직까지 베트남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은 원유이나, 최근 섬유·의류 및 신발, 가전·컴퓨터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사실이다.

〈표 2-7-1〉 베트남 주요 수출품 수출 추이

품 목	2000	2001	2002	2003	2004	수출비중 (2004)
원유	3,503	3,126	3,274	3,821	5,666	21.4%
섬유·의복	1,892	1,975	2,752	3,609	4,319	16.3%
신발	1,472	1,587	1,867	2,261	2,604	9.8%
수산가공품	1,479	1,816	2,023	2,200	2,397	9.0%
가전·컴퓨터		710	492	855	1,077	4.1%
목재	311	344	436	42	1,054	4.0%
쌀	668	624	726	720	941	3.6%
커피	501	391	322	505	594	2.2%
고무	166	166	271	378	579	2.2%
커슈넛		152	209	277	425	1.6%
전선·케이블		181	186	292	385	1.5%
기타	4,492	3,957	4,149	5,192	6,463	24.4%
합계	14,483	15,029	16,706	20,149	26,504	100.0%

〈그림 2-7-1〉 주요 수출품 수출 비중 추이



나. 베트남의 주요 수출국

베트남의 주요수출국은 이라크를 제외하고는 모두 선진국과 중국이며, 이중 10대 수출국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달한다.

다. 베트남 경제에서 수출의 역할

2000년 이래 베트남의 수출액/GDP비중은 55%를 상회하였으며 2004년 수출의 경제성장기여율⁴⁶⁾은 106%에 달하였다.

〈표 2-7-2〉 ASEAN 회원국의 대 GDP 수출비중

	2000	2001	2002	2003	1인당 GDP(2004)
베트남	55.0	54.6	56.8	59.6	550
캄보디아	36.9	37.0	44.1	44.6	320
인도네시아	41.4	39.9	33.0	29.3	1,140
말레이시아	109.0	100.0	99.1	101.8	4,650
미얀마	18.8	31.0	33.4	25.8	150
필리핀	50.2	44.6	45.2	45.1	1,170
태국	56.3	56.2	53.6	56.1	2,540

자료: GSO

3. 수출진흥 금융정책

가. 베트남 수출금융 현황

베트남 정부는 수출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조세환급의 목적으로 수출품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 및 반제품 수입관세를 환급해 주고 있다. 그리고 개별기업의 수출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고 다음 조건 중

46) 경제성장 기여율 = Δ 수출액/ Δ 경제성장액

하나를 만족하면 수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준다. 네가지 조건은 해당 기업 수출의 첫해이거나 신기술 환경친화적 제품의 수출, 신시장 개척, 수출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할 경우 등이다. 이외에도 연매출의 50% 이상을 수출하고, 최소 3년간 일정규모의 수출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의 20%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산악오지와 산악델타지역에 위치하는 기업에게는 법인세를 추가로 25%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의 수출지원 형태는 주로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대한 관세 환급이나, 수출자유지역의 운영, 수출소득에 대한 우대 법인세 적용 등 재정적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수출금융은 여전히 아주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1) 무역금융

베트남에서는 국영상업은행(SOCB)과 외국계 은행들이 일부 무역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베트남 국영은행들은 신용으로 대출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토지와 정부채권을 담보로 요구한다. 국영기업(SOE)과 이들과의 외국합작기업은 그들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국영상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나 일반 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담보를 제공하기 전에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실정이다.

2) DAF(Development Assistance Fund)의 단기수출금융

DAF는 국내의 특정분야에 대한 투자촉진과 정부의 사회·경제개발정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 설립된 정부기관이다. 동 기관의 단기수출금융 제도는 수출계약서를 소지한 수출자에게 운전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 지원조건은 중장기 대출금리의 80%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 베트남은 WTO 가입을 최우선정책으로 삼고 있기에 WTO 가입시 본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 동안 DAF의 단기수출금융 승인 내역을 보면, 지원대상이 주로 농·수산물 및 그의 가공품이며, 섬유·의복과 같은 경공업이 일부 지원되었다.

〈표 2-7-3〉 DAF의 단기수출금융 지원현황 (2001~2004년)

(단위: 1,000 베트남 동)

	2001		2002		2003		2004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승인	87	162,453	1,204	3,231,339	2,121	5,550,838	2,946	9,789,502	18,734,132
쌀	7	37,299	156	1,095,424	370	1,742,463	299	2,593,967	5,469,153
수산물	46	71,073	590	1,182,347	1,013	2,295,041	1,489	3,784,156	7,332,617
커피	0		52	138,624	160	338,446	288	583,139	1,060,209
의류·섬유	2	3,980	164	397,132			28	58,122	459,234
커피	13	14,881	34	80,783	86	179,286	157	698,150	973,100
기타	19	35,220	208	337,029	492	995,602	685	2,071,968	3,439,819
집행		141,910		3,009,423		6,298,835		10,142,390	19,592,558
집행잔액		109,545		1,015,518		1,145,520		1,899,236	4,169,819

3) 수출보험

현재 베트남에는 수출신용 보험상품이 전무하다. 다만 국영보험회사인 Bao Viet이 수출도중 발생할 수 있는 재화의 파손이나 손실에 대한 수출관련 보험을 제공하는 수준으로, 수출보험 시장 발달이 거의 되지 않은 상태이다.

4) 수출촉진 정부보조금

베트남 정부는 수출촉진 목적으로 정부보조금을 제공하는데, 수출기업은 전년도 매출의 0.2%범위 내에서 시장조사, 엑스포참여 또는 컨설턴트 고용을 위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5) 전대자금

베트남은 베트남중소 수출기업의 대 EU수출을 지원하고자 2004년 3월 EU와 15백만달러의 크레딧라인 설정에 합의하였다.

나. 한국의 수출지원금융제도

1) 수출지원제도

한국은 2004년까지 지난 40년간 연평균 7%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1996년에는 세계 11대 경제국이자 12대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것은 동기간 연평균 21%의 성장률을 기록한 수출이다. 2004년 한국은 2,538억달러를 수출하여 세계시장의 2.8%를 차지하였다. 현재 수출은 부가가치 기준 GDP의 20%이상, 고용의 18%를 차지한다. 특히 제조업 고용의 경우 82%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성장동력으로서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정책 추진 초기에 다양한 수출지원정책을 실시하였다. 수출우대금융, 수출소득에 대한 직접세 감면, 수출우대환율, 수출-수입연계제도, 주요 수출산업의 고정자산에 대한 가속감가상각제도 등을 통하여 수출을 지원하였으나 1967년 GATT 체제 도입과 1994년의 WTO체제에 따라 이러한 직접적인 수출지원책은 모두 폐지되었다. 그 대신 현재 한국은 WTO체제하에서 인정하는 수출보험 및 연불신용을 비롯하여 원활한 수출관련 무역금융의 제공 등, 간접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 무역금융제도

가) 선적전 금융

무역금융이란 수출업체 및 국내수출물품 생산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여 수출물품 선적 전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무역관련 금융 및 지급보증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제도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무역금융을 살펴보면 용자대상은 보통 세 경우로 나뉜다. 우선, 수출신용장, D/P, D/A 조건 및 수출관련 계약서에 의하여 물품, 건설 및 용역을 수출하거나 국내에 공급하고자 하는 자이거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완제품 및 원자재를 국내에서 제조, 가공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자가 용자대상이 된다. 또한 앞에서 열거한 방식에 의한 수출실적 또는 공급실적이 있는 자로서 동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도 용자대상이다.

동 대출의 종류를 자금의 용도에 따라 분류하면 생산자금, 원자재 자금, 완제품 구매자금, 포괄금융으로 구분된다. 생산자금지원은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제조, 가공하거나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자기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 원자재 자금지원은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내국신용장에 의해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지원을, 완제품 구매자금지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완제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지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포괄금융은 일정요건을 갖춘 자가 생산품 직수출업체에 대하여 수출품의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함에 있어 자금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이다.

한편 이를 대출방법으로 구분하면, 신용장기준 금융(L/C-based Finance)과 실적기준 금융(Performance-based Financ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용장기준 금융은 신용장을 보유한 기업에게 그 신용장 범위 내에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며, 실적기준 금융은 통상 기업의 과거 1년간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비율을 대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나) 선적후 금융

선적후 금융에는 무역어음 할인과 팩토링/포페이팅이 있다.

무역어음할인은 수출자가 선적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수출환어음을 발행한 후 상업은행 할인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면, 환어음을 매입한 상업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표지어음을 발행하고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재할인 받게 된다.

팩토링과 포페이팅은 D/A, D/P거래나 유산스 L/C거래에 따라 선적후 수출채권을 팩토와 포페이터에 양도함으로써 수출대금을 미리 받는 제도이다. 본 제도를 통하여 수출자는 수출대금 지급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한 전에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어 자금흐름에 여유를 갖게 된다.

4) 수출신용

수출신용은 WTO체제하에서 인정되는 공적지원으로서, 많은 선진국들과 개도국이 수출신용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수출자는 수출신용을 통해 국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수출신용에는 보험, 보증, 대출이 있다. 금융조건이 프로젝트의 가격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대규모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수출신용의 공여가능성 여부가 입찰에서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 보증 그리고 이차보전제도를 제공하며,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수출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다. 베트남 수출금융 제도를 위한 제안

1) WTO체제와 보조금

베트남은 현재 DAF의 단기수출금융제도 이외에는 수출지원금융제도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제도는 WTO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출보조금이기에 WTO가입과 함께 폐지되어야 한다. 베트남이 새로운 수출지원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도 WTO의 원칙, 특히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SCM)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WTO 협정 ASCM 1조는 정부나 공공기관(by a government or any public body)에 의하여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가 공여되어 이에 의해 혜택(a benefit)이 주어지면 보조금으로 간주된다고 보조금을 정의내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특정조치가 상기 보조금의 정의를 만족시킬지라도 모든 경우에 보조금협정에 따른 제재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조치가 특정기업이나 산업, 또는 특정 기업군이나 산업군에 한정되어 이루어지지 않는 한(즉, 특정성이 없는 한) 보조금협정에 따른 제재를 강제할 수 없다. WTO는 보조금의 종류를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 세 가지로 세분하여 회원국 정부의 특정조치를 다루게 된다.

각 보조금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우선 금지보조금에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하나 또는 여러 조건 중 하나로 수출성파에 따라 공여되는 수출보조금”과 “유일한 또는 여러 조건 중 하나로서 수입물품 대신 국산품 상요에 대해 공여되는 국산품 보조금” 두 가지가 있다. WTO는 보조금 협정 첨부(Annex I)의 “수출보조금 예시목록”에서 금지보조금의 12가지 형태를 예시하고 있다.

상계가능 보조금은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을 공여한 결과 타 회원국의 이익

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 경우 다자간 또는 쌍무적 경로와 수단을 통해 대응조치가 가능한 보조금을 의미한다. 허용보조금은 “특정성”이 없기 때문에 WTO회원국들이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서 연구개발보조금, 지역개발보조금, 또는 환경보조금이 있다.

베트남은 향후 수출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이러한 보조금에 대한 규제를 고려하여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무역금융

베트남에는 적절한 상업은행을 통한 무역금융제도가 없다. 무역에 있어 신용장 방식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제작전금융 등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국영기업 및 그 합작회사들은 국영상업은행과의 특수관계에 따라 자금조달이 그 다지 어렵지 않은 반면 일반 개인 기업이 있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수출기업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역금융제도를 도입하고, 늘어나고 있는 무신용장방식의 거래에 있어 지급불능 등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수출보험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수출신용

베트남의 현 경제개발단계에서 중장기 수출신용의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신용위험과 비상위험을 커버하는 수출보험제도의 도입은 필요할 것이다. 비록 베트남의 주요 수출대상국이 선진국이지만 수입자의 지급불능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수출보험을 제공하고, 필요한 수출금융을 제공하는 공적수출신용기관(ECA, 수출입은행)의 설립이 필요하다.

4. 베트남 수출입은행의 설립

가. 서론

1) 수출신용

수출신용이란 재화 및 용역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정부를 대신한 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공적지원”을 뜻한다. 수출신용의 종류로- 수출신용보증, 보험과 공적금융지원이 있다. 공적금융지원은 대출 및 리파이낸싱, 이자율지지(이차보전)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수출신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 ECA)이다.

2) ECA의 필요성

많은 선진국들이 ECA를 설립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시장의 실패 해소를 들 수 있다. 통상 상업금융기관들은 대규모 고위험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이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사업들이 외부효과에 의하여 국가경제에 이득이 되어 국가 차원에서는 지원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다. 수출신용은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보험이나 직접 금융의 방법으로 사업 추진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이유로 통상 수출신용기관은 민간부문을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할 뿐 경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는 않는다.

ECA를 통하여 국내산업을 육성할 수도 있다. ECA는 자국기업이 해외에서 외국기업들과 적어도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ECA는 정부기관으로서 정부의 다양한 무역·금융·산업정책을 수행하여 결과적으로 경제개발에 기여한다. 이밖에도 ECA는 수출신용관련 정보센터의 기능과 함께 해외유관기관과의 정보교환포인트가 되며, 국제무역과 무역관련 금융의 전문가 허브로 기능하기도 한다. 즉, ECA는 무역과 무역금융관련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고 금융기관의 선도기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3) 커버되는 위험의 종류

ECA가 커버하는 위험은 비상위험(국별위험)과 신용위험으로 나뉜다. 비상위험(국별위험)은 수입자 국가의 조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출계약 또는 사업에 대한 지불불이행 위험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지급을 방해하는 규제나 면허의 취소, 전쟁이나 내란이 있으며, 최근 가장 흔히 발생하는 비상위험으로는 외화로의 태환불능 또는 외화송금불능이 있다. 신용위험은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파산하는 경우, 또는 화물의 수취를 거

부하는 경우에 따른 대금지급불이행 위험을 뜻한다. 통상 상품의 질이나 전달기한, 성능 등에 대한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분쟁은 신용위험에서 제외된다.

4) ECA관련 국제협약

ECA 관련해서는 OECD수출신용협약과 WTO 보조금 및 상계 조치 협정 2개의 주요 국제협약이 존재한다.

OECD수출신용협약은 수출신용에 대한 기본적인 여신조건과 타이드윈조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동 협약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것은 아니나, 본 협약서명국들은 정기적으로 회합하고 국제무역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의 유지를 위하여 협의할 의무를 지닌다. 본 협약에서 규정하는 수출신용은 보조금적인 요소를 다분히 포함하고 있으나, WTO체제하에서는 허용보조금으로 인정되고 있다. 일부 수출신용협약 비회원국들이 협약 관련 논의가 비공개인 이유로 비회원국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불평도 있어 농업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관련 주요 국가를 논의에 초대하고 있다.

WTO 보조금 및 상계 조치 협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조금 사용에 대한 협정이다. 본 협정은 특히 OECD수출신용협약과 같이 국제적 포럼에서 합의된 보조금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수출입은행의 역할과 기능

1) ECA 모델

ECA모델은 다양하며 전형적인 ECA 모델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는 정부부서이거나 공공기관이며, 정부와 연관을 맺고 있는 상업기관인 경우도 있다. 또한 단기서비스만 제공하거나 중장기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 혹은 양 서비스모두를 제공하는 경우와, 보험업무와 보증만 취급하거나 대출만 제공, 또는 둘 다 제공하는 등 취급 서비스의 형태도 다양하다. 이렇듯 ECA모델이 다양한 이유는 국가마다 처한 경제상황이 달라 필요한 수출신용 서비스도 다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 국가 내에서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필요한 서비

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ECA의 지속적인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양한 ECA모델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ECA모델은 크게 통합형과 분리형으로 구분된다. 통합형은 금융과 보험을 모두 한 기관에서 취급하며, 분리형은 통상 대출 및 보증은 한 기관이, 보험 업무는 다른 기관이 맡고 있는 형태를 뜻한다.

〈표 2-7-4〉 ECA 모델

통합형		분리형	
미국	US EXIM (대출, 보험, 보증)	한국	수출입은행 (대출, 보증) 보험공사 (보험)
캐나다	EDC (대출, 보험, 보증)	일본	JBIC (대출, 보증) NEXI (보험)
영국	ECGD (이차보전, 보험, 보증)	프랑스	Natexis (대출, 보증) Coface (보험)
호주	EFIC (대출, 보험, 보증)	독일	KfW (대출, 보증) Hermes (보험, 보증)
대만	EIBT (대출, 보험, 보증)	중국	EIBC (대출, 보증) SINOSURE (보험)

ECA모델은 주로 그 국가의 경제상황과 상업금융기관의 발달 현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나 모델자체도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통합형은 정보수집과 종합서비스제공 차원에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과 인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이 높으며 소비자에게도 one-stop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편리하고 행정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출, 보증, 보험이 각각 다른 성격과 기능을 갖고 있기에 이들이 한 기관에 속함으로써 이해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통합기관은 통상 대출만 취급하는 기관에 비하여 위험이 높으므로 신용평가를 낮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조달비용에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수출진흥 목적을 위해서는 재원을 보험료에 의존하는 보험보다는 직접 대출 재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출프로그램이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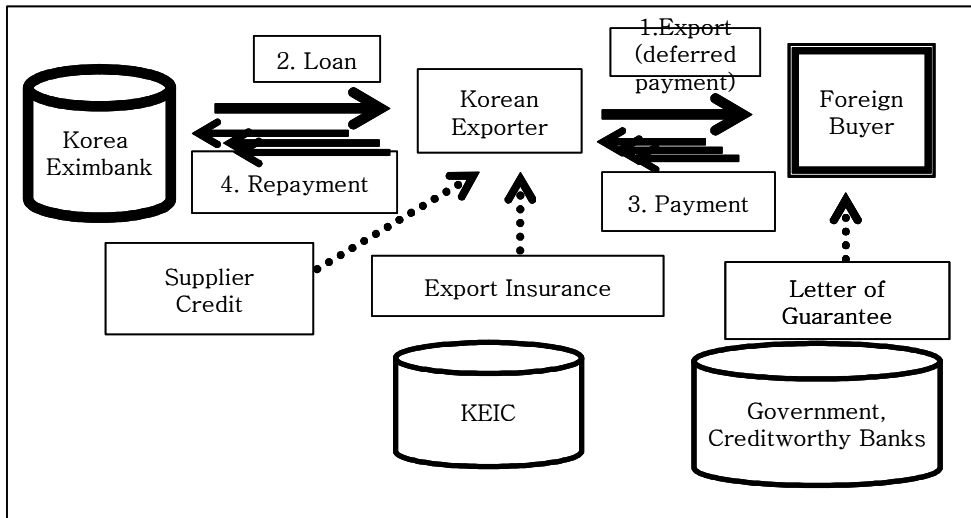
2) 기본 ECA 기능

일반적인 무역은 재화 수취 후 바로 대금을 지불하거나, 수취 후 180일 이내

에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중장기 금융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국제거래에는 많은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하여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위험은 프로젝트가 대형이거나 대금지급이 연불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더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수출신용기관의 기본적인 역할은 이러한 불확실성과 위험을 최소화 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위험을 수출자와 수출자 거래은행으로부터 인수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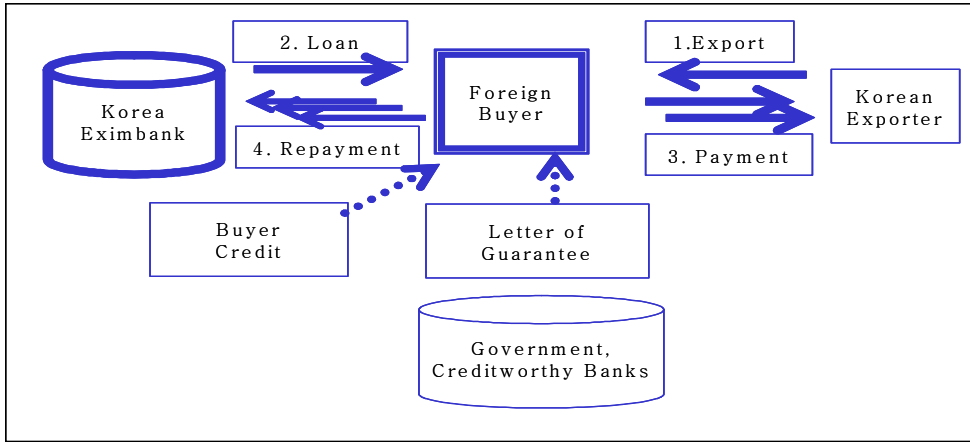
위험 최소화를 위한 기본적인 방법으로 공급자 신용과 수출자 신용 2가지방법이 있다. 공급자 신용은 수출자와 수입자가 별도의 신용계약을 체결하면, 수출자에게 수입자의 지불불이행 위험에 대한 보험·보증, 또는 대출이 제공 하는 경우이다. 공급자 신용이 보험일 경우, 수출자는 이러한 보험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림 2-7-2> 수출입은행의 공급자 신용 흐름



수입자 신용은 전대금융(Line of Credit)과 직접대출(Direct Loan)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전대금융은 수출계약과 별도로 수출국의 은행과 수입국의 은행사이에 해당 프로젝트를 위한 별도의 전대계약이 체결되면 ECA가 수출국은행에 수출신용을 제공하거나 직접 수출국의 은행으로 참여한다. 직접대출은 수입자에게 직접 수입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이다

〈그림 2-7-3〉 한국수출입은행의 직접대출 흐름



다. 한국 수출입은행의 금융서비스

1) 설립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거 1976년 특수정부법인으로 설립되어, 이듬해 수출보험업무를 개시하였다. 1992년에는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분리 독립하여 보험업무는 수출보험공사가 전담하게 되었다.

2) 역할

한국수출입은행은 국책금융기관으로서, 중·장기신용을 제공하여 경제개발을 촉진하고 대외경제협력확대에 기여한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시에는 무역어음할인을 통한 중소기업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수출입은행은 설립 근거법에 의거, 기본적으로 상업은행과 경쟁을 지양하는 한편 수출자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부담한다.

3) 금융서비스

가) 국내수출자 대출

한국수출입은행은 중장기수출자금, 기술제공자금, 단기수출자금, 해외투자자

금, 주요자원개발자금, 중소기업수출자금, 수입자금 대출과 무역어음할인, 포페이팅, 수출팩토링 등의 형태로 국내수출자에게 대출을 제공한다.

중장기수출자금대출은 인도 후 수출대금 결제 시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대규모 자본재 수출거래에 대한 금융이다. 당행은 수출품의 제작에 필요한 제작금융과 수출품을 인도한 후에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장기 분할결제하는 동안 필요한 연불금융을 수출자에게 대출해준다.

단기수출자금대출은 제작기간과 인도 후 대금결제기간을 합하여 수출대금이 인도 후 2년 이내에 결제되는 수출거래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술제공자금대출은 해외수출입시장의 확보, 개척, 경제교류 촉진 또는 외화 획득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대외기술제공(해외건설공사 포함)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제도이다.

해외투자자금대출은 국내기업이 해외에 투자를 하거나 외국에 국산설비를 대여하는데 있어 필요한 장기자금 대출하는 금융제도이다.

주요자원개발자금대출은 정부의 국내 원자재가격 안정과 대외경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개발계획에 의하여 외국에서 주요자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장기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중소규모수출자금대출은 과거 수출관련 실적을 바탕으로 수출재를 생산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대출(포괄수출금융)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수입자금대출은 국가경제적으로 장기 안정적인 확보 또는 적기수입을 필요로 하는 철, 원유, LNG 등 주요자원과, 시설재 및 첨단제품 등의 수입을 위한 수입대금의 결제 또는 수입대금의 선급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 수입업체에게 제공하는 제도이다.

무역어음할인은 수출자금대출과 관련하여 발행된 국내 수출자의 수출환어음을 매입한 국내 상업은행이 발행한 무역어음을 재할인하는 서비스이다. 동 금융 서비스는 상업은행에게 무역금융에 필요한 유동성을 제공한다.

포페이팅은 결제기간 2년 미만의 기한부 신용장 방식 또는 국외은행이 보증하는 무신용장방식의 수출거래를 바탕으로 발행된 수출환어음을 비소구조건으로 매입함으로써 수출자에게 금융을 지원하는 것이며, 수출팩토링은 사후송금방식 수출거래에서 수출자가 보유한 외상수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함으로써 수출자에게 금융을 제공하고 수출자를 대신해 채권을 회수하는 수출금융의 형태이다.

나) 국외수입자 대출

한국수출입은행은 직접대출, 프로젝트파이낸스, 스트럭처드 파이낸스의 형태로 국외수입자에게 대출을 제공한다.

직접대출은 한국으로부터 제품의 수입 또는 기술의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출하여주는 제도로서 상환기간은 2년 이상이다.

프로젝트파이낸스와 스트럭처드 파이낸스는 플랜트, 발전소 등 대규모 프로젝트 건설지원을 위한 구매자 금융으로, 금융기관 지급보증 없이 프로젝트 자체의 자산과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여 금융을 제공하는 최신 금융지원 방식을 뜻한다.

다) 보증

한국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보증의 형태로는 채무보증과 이행성보증이 있다. 채무보증은 국내외 금융기관이 수출입은행 지원대상거래에 대해 차주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고 나서 동 대출금을 상환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수출입은행이 이를 대신 상환해 줄 것을 보증하는 간접적인 금융지원이다. 이행성보증은 한국 수출자가 계약조건대로 이행할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특성에 따라 입찰보증, 선수금환급보증, 계약이행보증, 유보금환급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으로 구분된다.

라) 이자율지지(Interest Rate Support, 이차보전)

수출입은행이 중장기 연불수출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상업금융기관과 협조융자를 추진할 때 협조융자 참여한 국내외 상업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채무보증을 제공한 상업금융기관에 대하여 동 기관이 수입자로부터 받는 고정금리와 수출입은행이 사전에 약정한 변동금리(Libor+가

산율) 간의 차이를 보전하거나 환수하는 제도이다.

라. 태국 수출입은행의 금융서비스

1) 검토 배경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의 중화학공업의 육성 및 무역수지 개선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이들 중화학공업은 오늘날 한국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한편, 최근 베트남 경제는 경제 구조와 상업금융의 발달 수준이 한국과는 판이하게 다르므로 한국수출입은행 모델로 베트남 수출입은행을 설립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에 비해 비교적 베트남과는 경제격차가 적은 태국의 경우, 공적수출신용기관인 태국수출입은행이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대한 수출지원을 위하여 어떠한 무역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 검토하는 것은 유의미하다 할 것이다.

2) 태국 수출입은행 금융서비스

1993년 설립된 태국 수출입은행은 통합형 수출신용기관으로 대출, 보증, 보험을 모두 취급한다. 중·장기수출금융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나, 다양한 운전자금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소규모대출을 제공하는 등 자국의 무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가) 운전자금대출

태국수출입은행의 운전자금대출은 선적전금융, 중소기업 선적전금융, Express Export Credit, 국내공급자금융, Packing Credit Plus, Financing Facilities For Re-export, 수출환어음매입 등의 지원제도로 구분된다.

선적전금융은 모든 수출자에게 선적전에 필요한 수출재의 생산 및 원·부자재 구매자금을 위한 바트(baht), 미 달러화, 또는 엔화표시 회전한도 대출을 의미한다.

중소기업 선적전금융은 중소기업에게 제공되는 선적전 및 선적후 소요 자금 회전한도대출로 선적전금융보다 유리한 대출조건으로 제공한다.

Express Export Credit는 2백만 바트 이하의 소액 회전한도대출로, 신규로 소규모 선적진금융을 사용하는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제도이다.

국내공급자금융은 수출재를 생산하는 기업의 선적전 및 선적후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회전한도대출이다.

Packing Credit Plus는 태국 수출업체,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회전한도대출과 수출보험이 결합된 프로그램이다.

Financing Facilities for Re-export는 태국이 중개무역국임을 반영하여 제3국으로의 수출을 위한 수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프로그램으로, 태국수출입은행은 중개무역 수입자를 위하여 신용장을 개설해 준다.

수출환어음매입은 수출대금결제일 이전에 수출자에게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선적후금융이다. 이 제도는 신흥시장 수출에 대한 지급불능위험을 부보하는 효과가 있다.

나) 중장기 금융

태국수출입은행의 중장기 금융에는 Term Loans for Business Expansion, 장기자본재수출대출, 선박금융과 무역전시 지원제도가 있다.

Term Loans for Business Expansion은 신규 또는 기존 수출기업 또는 수입 대체기업의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을 공급해 주는 지원제도이다.

장기자본재수출대출은 신제품 또는 중고 자본재 수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기신용이다.

선박금융은 신규 또는 중고선박구매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로 상업용 선박의 태국등록을 지원하고 국내선박의 활용도를 높여 해외로 유출되는 해운임을 절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태국수출입은행은 50-100만 바트를 한도로 하여 연리 1%로 중소수출업체의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금융을 제공한다.

다) 해외사업지원

태국수출입은행이 해외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고 있는 금융제도는 해외건설금융, 해외투자금융, 태국식당 해외진출사업금융 등이 있다.

해외건설금융은 빌딩개선사업, 기계정비수리 및 기술컨설팅과 같은 해외사업 계약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이며, 해외투자금융은 태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금융이다. 또한 태국수출입은행은 해외에 태국식당을 열기를 희망하는 태국 투자자를 지원하고자 태국식당 해외진출사업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라) 단기수출보험

태국수출입은행의 단기수출보험은 단기수출보험과 중소수출환보험으로 구분된다.

단기수출보험은 대금결제일이 상품 인도 후 180일 미만의 수출거래에 적용되며, D/P, D/A, O/A 방식의 수출거래를 보험대상으로 한다. 신용장방식인 경우에는 수출자가 거래은행을 지정할 수 있다.

중소수출환보험은 금액기준 수입자당 120만 바트, 전체 250만 바트 이하의 환어음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D/P 일람불 거래 혹은 90일 미만의 D/P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회수불능 위험을 커버한다.

마) 중·장기수출보험

태국수출입은행의 중·장기 수출보험은 2003년에 도입되었다. 동 기관은 중·장기 수출보험을 인도전보험과 인도후보험으로 구분하고, 대금결제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재화 및 용역의 수출과 관련된 거래 및 수입자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 신용위험과 비상위험을 부보해 준다.

마. 베트남 수출입은행 설립 시 고려 사항

베트남에서도 무역관련 보험이나 금융이 제공되고는 있으나, ECA가 제공하는 종류의 수출보험이나 중장기대출은 전무하다. 베트남의 현 경제현황 및 금융의 발달 단계를 고려할 때, 한국과 같은 중·장기연불금융을 위주로 하는 수출입은행은 아직은 이르다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베트남은 무역을 바탕

으로 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ECA설립에 따른 무역관련 전문가의 집합체 또는 정보센터 역할 등의 많은 이점을 고려하여 수출입은행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1) 수출입은행의 형태

ECA의 통합형과 분리형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베트남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나, 현재 베트남에서는 은행과 보험업무가 같은 재무부산하에 있어 분리형으로 수출신용기관을 운용하여도 업무의 조정 등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이 수출입은행을 설립할 것인가 또는 기존의 DAF와 같은 기관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이라는 독립된 기관을 갖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초기에는 기존의 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수출보험업무도 마찬가지이다.

2) 제공되는 금융서비스 종류

가) 수출보험 및 보증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서 수출지원을 위한 수출보험과 같은 공적수출신용업무를 제공한다. 또한 신용보증 뿐 아니라, 프로젝트관련 보증을 제공, 베트남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나) 중장기 대출

단기적으로 베트남에서 플랜트 기계류 수출에 따른 중장기 대출수요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프로그램을 유지, 향후에 대처토록 한다.

다) 단기무역금융

무역관련 전담기관으로서 단기무역금융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무역금융과 무역어음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 무역어음 재할인

현재 베트남에서 어음의 활용도는 매우 낮다. 무역어음 제도의 도입과 이의 재할인은 새로운 무역금융을 위한 유동성을 제공하고 어음제도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마)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정책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한 대출프로그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바) 기타

수출지원을 위하여 베트남기업의 해외전시 참여 및 시장조사를 지원한다. 또한 무역관련 연구를 강화, 수출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3) 수출입은행의 조직

새로운 조직으로서 운영위원회, 이사회, 그리고 집행부서가 필요하며, 집행부서로는 총무부(인사·서무포함), 수출신용부서(수출보험, 중장기 신용, 단기무역금융 제공), 국별조사부, 리스크관리부, 자금부, 법규부, 감사실이 필요하다.

4) 재원조달

초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정부출연을 주요재원으로 한다. 그러나 향후에는 정부로부터의 차입과 국내외 금융시장으로부터의 차입도 확대한다.

5) 리스크관리

현재 베트남 금융기관의 위험관리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전문가에 의한 사업평가능력 제고는 물론 다양한 위험을 평가하고 분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층을 위시하여 전체 조직이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합한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보유하여야 한다.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위해서는 리스크관리기능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리스크관리 감내수준, 관련조직의 책임과 권한관계 등이 명확하여야 하며, 리스크관리 하부구조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합리적인 한도관리시스템은 리스크관리의 가장 초보이자 핵심이다.

6) 교육 · 훈련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으로서는 아직 많은 분야에 있어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우선 무역관련 전담기관의 성격상 무역과 국별 연구전문가가 필요하다. 또한 수많은 국제계약을 체결하므로 국제사법의 이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 수출입은행도 금융전문가 뿐 아니라 국제사법 전문가를 보유하여야 한다. 금융 업무를 다루는 기관이므로 금융 전문가도 당연 필요시 된다. 따라서 향후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선진국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교육 등 국내외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베트남수출입은행 설립 시, 동 기관은 최종위험부담자(lender/insurer of the last resort)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출, 보증, 수출보험과 같은 기본적인 공적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자금조달이 용이하다면 지원 성격상 간단하고 타 제도에 비해 더 효과적인 대출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 베트남 수출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무역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 베트남의 무역금융은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중소 수출자에게는 무역금융 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수출기업에 대한 운전자금대출이나 상업은행의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및 단기무역금융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는 중·장기연불금융 수요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수출금융 전문화를 통하여 베트남 수출입은행은 대외무역 및 무역금융관련 전문가 인력센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수출입은행이 전문가 인력센터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 및 수출금융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고, 해외동향 등 정보수집에 노력하여야 하며, 해외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에도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에는 수출신용 본연의 기능 뿐 아니라 무역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수출입은행의 설립이 필요하다. 새로이 설립되는 수출입은행이 반드시 독립기관일 필요는 없다. 한국수출입은행도 운용 초 수출입은행법이 제정

된 이후에도 7년간 그 당시 외환은행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수출입은행 설립법이 제정되면 초기 업무량 및 오버헤드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DAF와 같은 기관에 업무를 임시로 맡겨 경험을 쌓도록 할 수도 있다. 수출보험을 통합형으로서 수출입은행에 모두 맡길 것인지, 독립된 수출보험회사를 설립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일단 초기에는 새로운 사업인 만큼 Bao Viet과 같은 기존 국영상업보험 회사에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겠다. 새로이 설립되는 베트남 수출입은행은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